최종보고서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2021. 09.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ROCUREMENT

제 출 문

조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청에서 발주한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2021년 09월

한국조달연구원장 백 명 기

연 구 진

▣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용역

연구수행기관 : 한국조달연구원

연 구 총 괄 : 박희택 조달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실 무 책 임 : 김주원 조달정책연구팀 연구원

연 구 원 : 김정욱 조달정책연구팀 연구원

김혜민 조달정책연구팀 연구원

【목 차】

I. 서 론 ····· 2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2. 연구절차 및 방법 ····· 5

II. 이론적 고찰 ····· 17
1. 수수료에 대한 기본 개념 ····· 18
1.1. 수수료 정의 및 개념 ····· 18
1.2. 수수료 유형 ····· 20
1.2.1. 위탁·독점 기관의 수수료 ····· 20
1.2.2.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 ····· 20
2. 수수료의 특성 ····· 21

III. 조달수수료 운영 현황 검토 ····· 28
1. 조달수수료 관련 조달정책 환경분석 ····· 29
1.1. 조달분야 별 수익변화 분석 ····· 33
1.2. 실무진 의견수렴 ····· 46
1.3. 조달분야 별 수수료 조정 방향 설정 ····· 49
2.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현행 수수료 적정성 검토 ····· 50
2.1. 원가산정 절차 및 방법 ····· 51
2.2. 조달수수료 수익-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수수료 조정 방향 설정 ····· 52
2.3. 조달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 58
2.4. 조달청 비용배부 결과(1·2 차) ····· 59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 79
3.1. (방안 1) 내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액제 전환 ····· 83

3.1.1. 조달수수료율 현행 유지 ····· 83
3.1.2. 현행 정액제+정률제 방식을 정액제로 일괄 전환 ····· 84
3.2. (방안 2)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률제로 전환 ····· 85
3.3. (방안 3)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시설공사 수수료율 상향 조정 ····· 86
3.4. 조달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수수료 수익 변화 검토 종합 ····· 89
3.4.1. 시설공사 유형별 통합화 및 수수료 요율 부과 ····· 90
3.4.2. 내자구매 요율 변화에 따른 시설공사 분야의 균형 요율 분석 ····· 97
3.5. 조달사업 수수료율 감면제도(적립금) 개선방안 ····· 101
3.5.1. 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조달수수료율 균형 검토(시설공사 중심) ····· 101
3.6. 수수료 상한액 도입(내자구매 수수료 상한액 기준) ····· 104

IV. 국내·외 타 기관 수수료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 108
1. 국내 타 기관별 수수료 운영 사례 ····· 109
1.1. 한국거래소 ····· 110
1.2. 한국전력거래소 ····· 112
1.3. 인천국제공항공사 ····· 115
1.4. 한국석유관리원 ····· 118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119
1.6. 한국전기안전공사 ····· 122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24
1.8. 식약청 ····· 128
1.9. 특허청(특별회계기관) ····· 130
1.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131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133
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36
1.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38

1.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40
1.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141
1.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142
1.17.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소, CCS) ····· 144
2.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 ····· 145
2.1.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 145
2.2. 행정안전부 ····· 145
2.3. 에너지 공단 ····· 146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46
2.5. 특허청 ····· 147
2.6. 조달청 ····· 149
3. 조달청 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 체계 정립 ····· 150
3.1. 공공기관 수수료 운영사례 분석종합 ····· 150
3.2. R&D 사업 관련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 ····· 156
3.3. 수수료 감면제도 관련 시사점 ····· 162
3.4. 조달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 체계 정립 ····· 163

V. 결 론 ····· 166
1.1. 결 론 ····· 167
1.2. 제언사항 ····· 180
1.3. 연구한계점 ····· 183

참고문헌 ····· 187

별 첨 ····· 191

【표 목 차】

[표 1-1] 본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 15
[표 2-1] 서비스(제공 업무)의 특징 ····· 18
[표 2-2] 행정서비스(제공업무) 관련 부과금의 종류 ····· 19
[표 2-3] 원가적산주의 vs 공정보수방식 ····· 22
[표 2-4] 가격결정원리 장단점 비교 ····· 23
[표 2-5] 허가심사 수수료 원가항목 ····· 26
[표 3-1] 조달사업 분야별 사업실적 증감률 ····· 30
[표 3-2] 조달서비스 시설분야 업무별 사업실적 증감률 ····· 31
[표 3-3] 2020 년도 주요 조달사업 별 사업비 예산 세부 내역 ····· 37
[표 3-4] 조달수수료 조정 방향설정을 위한 조달청 실무진 인터뷰 의견 개요 ····· 47
[표 3-5] 조달수수료 외 타 업무 수행 여부 ····· 47
[표 3-6] 조달수수료 업무 관련 1 인당 평균 업무 처리 건수 ····· 48
[표 3-7] 조달수수료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 48
[표 3-8]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개선 ····· 49
[표 3-9] 1 차 원가배부 결과 ····· 62
[표 3-10] 내자구매 별 사업 제공원가 및 업무투입량 ····· 66
[표 3-11] 시설사업 별 제공원가 ····· 67
[표 3-12] 시설사업 별 업무투입량(2019 년도) (단위 : %) ····· 68
[표 3-13] 시설사업 별 업무투입량(2019 년도) (단위 : 원) ····· 70
[표 3-14] 조달사업별 수익 및 원가 구성(내자구매 및 외자구매) ····· 72
[표 3-15] 조달사업별 수익 및 원가 구성(시설공사) ····· 73
[표 3-16] 시설공사 부문 수수료 조정 결과 ····· 78
[표 3-17] 시설공사 분야 유형별 통합 수수료 요율 부과(4 가지 시뮬레이션) ····· 90
[표 3-18] Case 1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1

[표 3-19] Case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2
[표 3-20] Case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2
[표 3-21] Case 3 요율 통합 예시 ····· 95
[표 3-22] Case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5
[표 3-23] Case 4 요율 통합 예시 ····· 95
[표 3-24] Case 5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8
[표 3-25] Case 6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99
[표 3-26] Case 7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100
[표 3-27] Case 8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100
[표 3-28] Case 9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101
[표 3-29] 마일리지 설정비율에 따른 원가비중 변화 ····· 102
[표 3-30]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공사 수수료 원가비중 균형점 검토 결과 ····· 102
[표 4-1] 한국거래소 업무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 110
[표 4-2] 한국거래소 상장액에 따른 수수료율 기준 ····· 111
[표 4-3] 한국전력거래소 수행사업에 따른 주요업무 ····· 113
[표 4-4] 한국전력거래소 수수료 산정기준 vs. 공공요금 산정기준 ····· 114
[표 4-5] 인천국제공항공사 근거법률 및 주요 수행사업 ····· 115
[표 4-6]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수료 운영체계 ····· 116
[표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대상 수수료 운영체계 ····· 118
[표 4-8]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대상 수수료 운영체계 ····· 119
[표 4-9]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류 검사 수수료 운영체계 ····· 119
[표 4-10] 한국가스안전공사 근거법률 및 주요 수행 사업 ····· 120
[표 4-11]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건당 수수료 운영 체계 ····· 121
[표 4-12]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서비스 주요 내용 ····· 122
[표 4-13]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산정 근거 ····· 123
[표 4-14]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산정 기준 ····· 124
[표 4-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 산정 기준(근거) ····· 125

[표 4-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신청' 수수료 산정 기준(근거) ·127
[표 4-17] 식약처 의약품 허가 관련 수수료 운영 체계 ·····129
[표 4-18] 특허청 수수료 운영 체계 ·····131
[표 4-1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법령 및 내용 ·····132
[표 4-2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관련 수수료율 운영체계 ·····132
[표 4-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및 신제품 수수료 운영 체계 ·····133
[표 4-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관련 수수료 관련 법령 ·····133
[표 4-2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총 예산 대비 R&D 순 사업비 수수료율 ·····134
[표 4-24]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35
[표 4-2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37
[표 4-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수행 근거법률 ·····138
[표 4-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39
[표 4-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40
[표 4-2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총사업 대비 R&D 사업 수수료율 ·····142
[표 4-3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별 수수료 수익 증감율 ·····143
[표 4-31]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대상물품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44
[표 4-32]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영세기업 대상물품 별 수수료 운영 체계 ·····144
[표 4-33] 과기정통부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147
[표 4-34] 과기정통부 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대상 주요 분야 ·····147
[표 4-35] 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148
[표 4-36] 공공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 ·····151
[표 4-37] R&D 수행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1) ·····157
[표 4-38] R&D 수행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2) ·····158
[표 4-39] 국내·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수수료 운영현황 종합 ·····161
[표 4-40] 조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 로드맵 ·····166

【그 림 목 차】

[그림 1] 과업 수행 배경 ····· 2
[그림 2] 과업 수행 필요성 및 목적 ····· 5
[그림 3]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6
[그림 4] 조달사업 연간 사업규모에 따른 각 부문별 구성 비율 분석-(예시) ····· 7
[그림 5] 조달사업별 수수료 수입 산정 및 분석-(예시) ····· 8
[그림 6] 국외(영국, 미국) 조달수수료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예시) ····· 9
[그림 7] 원가 및 비용 분석절차 및 방법 ····· 12
[그림 8] 손익체계 분석 방법론 ····· 12
[그림 9] 조달사업 및 환경 분석절차 및 방법 ····· 32
[그림 10] 최근 5 년간 조달사업 분야 별 사업실적 증감률(2016-2020) ····· 33
[그림 11] 최근 5 년간 조달사업 분야 별 수수료 수입 증감률(2016-2019) ····· 34
[그림 12] 최근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실적 증감율(2018-2020) ····· 35
[그림 13] 최근 5 년간 조달청 조달사업 및 지원사업 실적 규모(2016-2020) ····· 36
[그림 14] 최근 5 년간 연도별 조달계약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 개년 수요 예측 ····· 38
[그림 15] 최근 5 년간 연도별 조달지원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 개년 수요 예측 ····· 39
[그림 16] 최근 5 년간 연도별 조달사업 전체 수익실적 및 향후 3 개년 수요 예측 ····· 39
[그림 17] 최근 5 년간 연도별 비축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 개년 수요 예측 ····· 40
[그림 18] 최근 5 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수익현황 및 향후 3 년간 사업 수익추이 ····· 40
[그림 19] 최근 5 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익현황 및 향후 3 년간 사업 수익추이 ····· 41
[그림 20] 최근 5 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 년간 사업 수익추이(1) ····· 42
[그림 21] 최근 5 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 년간 사업 수익추이(2) ····· 43
[그림 22] 최근 5 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 년간 사업 수익추이(3) ····· 44
[그림 23] 최근 5 년간 조달수수료 평균 변동률 검토 ····· 45
[그림 24] 최근 5 년간 조달청의 운영사업에 따른 원가변화 및 수수료 조정 방향성 검토 ····· 46

[그림 25] 조달수수료 조정방향 설정 ·····50
[그림 26]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절차 및 방법 ·····50
[그림 27]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절차 및 방법(예시) ·····51
[그림 28]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모듈별) ·····52
[그림 29]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수익변화 분석 결과 ·····52
[그림 30]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수익변화 증감률 분석결과 ·····53
[그림 31]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 변화 분석 결과 ·····54
[그림 32]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인건비 및 경비) 증감율 분석 결과 ·····55
[그림 33]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인건비 및 경비) 증감율 분석 결과 ·····55
[그림 34]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 변화율 검토 ·····56
[그림 35]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인건비 비중 변화율 검토 ·····57
[그림 36] 지난 5 개년 조달서비스 별 인건비 비중 변화율 검토 ·····57
[그림 37]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58
[그림 38]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59
[그림 39]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원가배부 기준 수립 ·····60
[그림 40] 1 차 원가배부 실시(인원기준) ·····61
[그림 41] 2 차 원가배부 절차 및 기준 ·····63
[그림 42] 2 차 원가배부 실시(각 사업국 기준) ·····64
[그림 43] 2 차 원가배부 결과 ·····65
[그림 44] 2 차 원가배부 결과(계속) ·····65
[그림 45] 적정수수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주요 아젠다 ·····76
[그림 46] 조달수수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범위 설정 ·····77
[그림 47] 조달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단계적 로드맵 수행 절차 및 방법 ·····79
[그림 48] 수수료 총액 및 내자구매 정액제 또는 정률제 전환 시 건당 수수료 차이 검토 ·····80
[그림 49] 최근 5 년간 내자구매(총액/단가) 건수 및 수수료 총액 분석결과 ·····80
[그림 50] 내자구매 수수료 계약구간 별 수요 추정(계약건수) ·····81
[그림 51] 향후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계약건수 수요 추정 결과 ·····81

[그림 52] 내자구매 수수료 계약구간 별 수요 추정(계약건수) ·····82
[그림 53] 향후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수수료 총액 수요 추정 결과 ·····82
[그림 54] 지자체분권화 등 지출비용 발생 시, 원가비중 변동율 검토 결과 ·····83
[그림 55]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 ·····84
[그림 56]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1 안–평균 수수료에 보정값 적용) ·····84
[그림 57]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2 안–평균수수료에 단위절삭) ·····85
[그림 58]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률제로 적용 시(1 안–0.51 적용시) ·····86
[그림 59]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2 안–0.47 적용 시) ·····86
[그림 60] 시설공사의 적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 ·····87
[그림 61]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기술용역_13.5% 상향) ·····87
[그림 62]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공사계약_13.5% 상향) ·····88
[그림 63]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맞춤형서비스_13.5% 상향) ·····88
[그림 64]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기타시설업무_13.5% 상향) ·····89
[그림 65] Case 1 요율 통합 예시 ·····91
[그림 66] Case 2 요율 통합 예시 ·····92
[그림 67] 평균값, 중위값 수수료 시뮬레이션 결과(내자구매 상한액) ·····105
[그림 68] 내자구매 상한액 조정시 수수료 수입 변화 ·····105
[그림 69]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서비스 수익(손실) 추세 (단위 : 백만원) ·····121
[그림 70] 식약처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출 프로그램 ·····130
[그림 7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 년간 수수료율 변동 현황 ·····135
[그림 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규정체계 및 내용 ·····136
[그림 7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예산에 따른 관리수수료율 변동 ·····143
[그림 74]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 ·····150
[그림 75] 조달수수료 개정 연혁 ·····151
[그림 76]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성 ·····152
[그림 77] 수수료 산정체계 및 기준 부재에 따른 key issues ·····153
[그림 78] 업무 및 서비스 구분기준의 불명확화로 인한 issues ·····154

[그림 79] 기존 공공기관 별 수수료 적용상 문제 ·····155
[그림 80]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To-be 모델 ·····156
[그림 81] 수행사업에 따른 발생원가 및 수수료 수익 변화 ·····160

Ⅰ

서 론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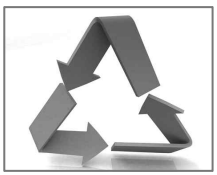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약 175조 원에 달하며, 조달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조달체계의 유연성 및 확정성에 대한 증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특히, 국내 조달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청은 최근 '혁신지향' 및 '국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디지털 우선 공공조달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며, 혁신조달 가속화, 디지털 전환 및 정부 수출지원정책,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의 개방,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및 협력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등 조달환경과 제도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조달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비롯해 조달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조달서비스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달수수료 요율의 적절성 및 장기적인 비용·원가 검토 요구됨

○ 조달규모 확대로 조달수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조달사업 환경변화 및 신사업수요 확대 등 사업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사업 유지를 위한 수수료 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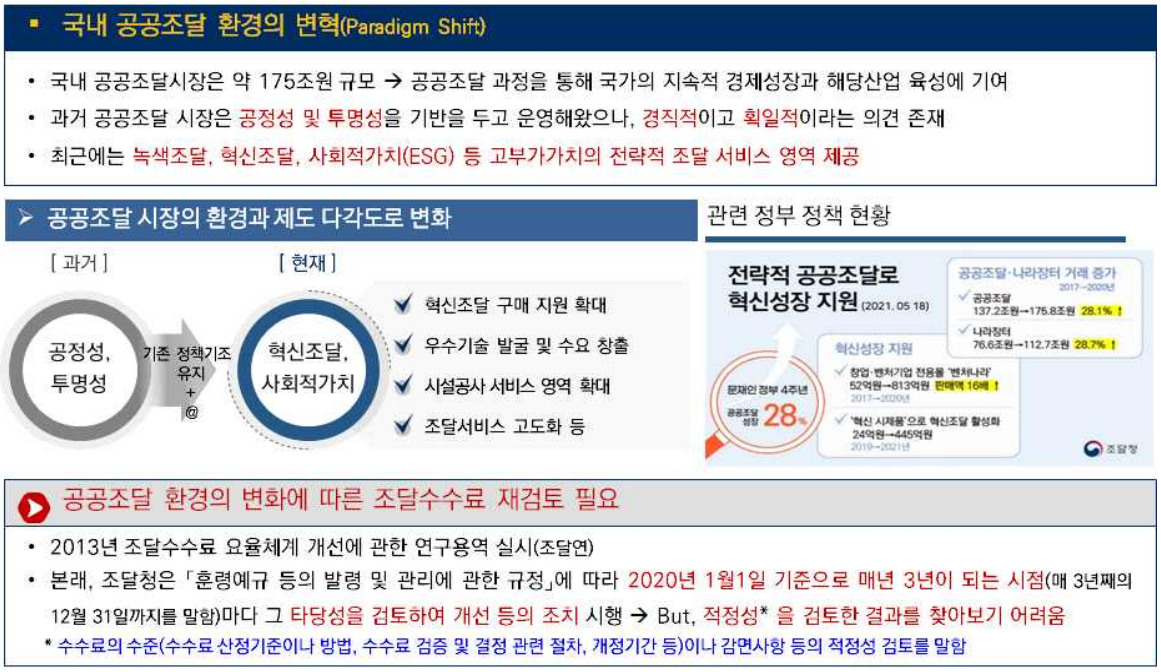

[그림 1] 과업 수행 배경

□ 아울러, 국정감사나 지자체 등에서 지적하고 있는 조달수수료 체계의 복잡성·차등 및 조달구매가격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지자체에서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이 상당 부분이라고 제시한 바 있어, 수수료의 수입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재검토 필요

□ 매년 조달청은 수수료율 개정을 하였으나 단편적인 개편 수준에 그쳐, 중장기 사업의 전망과 향후 조직개편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조달수수료의 전면적인 검토 필요

○ 이를 위하여 광범위하고 복잡한 조달수수료의 체계 개선 및 조달수수료의 체계화된 원가분석을 위하여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공공조달 환경에 따른 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수료 제도의 운영정당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첫째, 현행 조달수수료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산정기준인 요율과 산정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충분함

- 따라서, 조달수수료 요율의 산정과정 및 방법, 산정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조달사업(서비스) 별 수수료 산정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일관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예컨대, 내자구매사업의 단가계약이나 총액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액제로 운영하는 반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정률제를 반영하고 있고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체감분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조달 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조달사업 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률제 혹은 정액제로 일원화(통합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재 조달사업 별 운영 중인 요율체계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내자사업은 현재 수수료 수익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SOC 예산에 따라 발주물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수료 수

익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조달수수료 요율체계의 적정성 검토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수료 수익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상기 언급한 조달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개정기간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조건임

- 현행 조달수수료의 개정기간은 매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수수료는 분야별 서비스 제공량 및 발생원가수준(비용환경)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수수료 개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수익과 원가(비용) 간의 정합성이 낮아질 우려 존재 조달수수료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됨

- 본 연구에서 사례조사 및 분석결과의 일부를 보면,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 외부적으로 수수료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달청이 수수료 개정절차나 방법, 수수료 산정근거 등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의 수수료 운영체계를 벤치마킹(Best Practice)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섯째, 조달수수료 감경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 있음

- 특허청의 경우, 조달청과 같이 특별회계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특허 관련 이용 대상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감면(감경)하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수수료 관련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조달수수료도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이용하는 대상을 수요기관에서 참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감면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령,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면 조달청을 이용하는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공공조달 시장의 정책 및 제도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해 조달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정당성 확보, 복잡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간소화, 조달수수료 운영방식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한 합리적인 조달 수수료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변화 환경분석

- 조달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달수수료 운영 현황 및 체계 검토
- '16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간 조달정책 및 제도, 서비스 규모와 범위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수수료 조정 여부 검토

▪ 조달수수료 운영현황 검토를 통한 개선 필요성 정립

- ① 조달수수료 요율 산정결과만 제시(시스템에는 산정방법 포함) ➔ 조달수수료 요율 산정 근거 마련(ex. 산식에 대한 근거)
- ② 조달서비스 영역별 정률제와 정액제 혼용 ➔ 조달수수료 운영(적용)방식 일원화(통합화) 필요
- ③ 현재 조달서비스 영역별 운영 중인,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검토(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 등)**
- ④ 조달수수료 개정기간은 매 3년마다 진행 ➔ 조달수수료 산정기준이나 개정기간의 적정성 검토(예. 매년 혹은 2년마다 개정)
  * 수수료는 분야별 서비스 제공량 및 발생원가수준(비용환경)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수수료 개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수익과 원가(비용) 간의 정합성이 낮아질 우려 존재 ➔ 조달수수료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됨
- ⑤ 조달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비중 검토를 통한 적정 수수료율 운영 방안 마련

▪ 본 연구 목적

- 공공조달 시장의 정책 및 제도,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운영체계 마련
- 조달사업 전체 운영 관점에서 내자, 외자, 시설사업 간의 적정 수수료율 검토 ➔ 적정 균형점 도출 ➔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이용자 대상 징수하는 조달수수료의 운영 정당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율 제시
- 조달수수료 개정 및 적정 수수료율 검증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그림 2] 과업 수행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절차 및 방법

□ 본 과업은 ❶조달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 ❷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 ❸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등 세 가지로 구성

○ 첫 번째, 조달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에서는 최근 5년간 조달사업 규모와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적정수수료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별 조달수수료 현황을 파악함

○ 두 번째,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에서는 사업수행 원가와 비용을 고려한 적정수수료 부과방안 검토하여, 물품·용역·시설공사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정수수료 규모 유지를 위한 균형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 세 번째, 조달사업 수수료의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의 실효성 검토 방안을 제안하고, 개선방향에 따른 단계적 실행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공하여 효율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임(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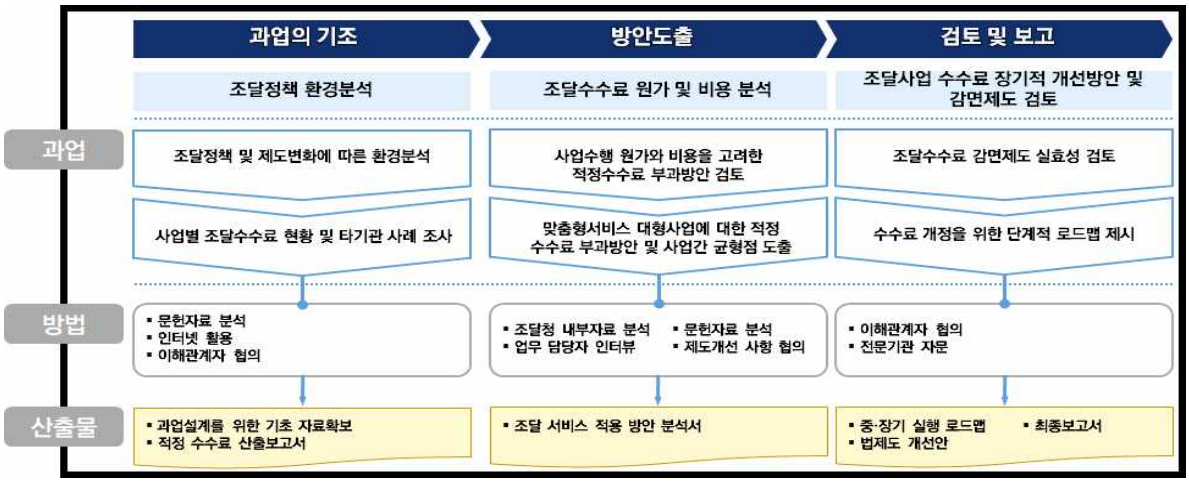

[그림 3]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 [과업 1] 조달정책 환경분석

○ 조달 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 영역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조달사업 규모와 범위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적정수수료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출함

- 현재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조달정책 및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관련 이슈 검토 등을 통한 환경분석 실시

- 조달환경 정책 및 제도적 변화검토를 통해 발굴된 시사점과 조달 수요의 변화 추세분석을 통해 조달사업 규모와 비례하는 조달수수료의 구조적 특성 검토 및 반영

○ [과업 1]은 '조달 서비스 분야별 적정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적정수수료 운영 개선 필요성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함

[과업 1] 조달정책 환경 분석

[과업1-1] 조달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	▶ [과업1-2] 조달사업별 조달수수료 운영현황 검토	▶ [과업 1-3] 타 기관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사례 조사
◦최근 5년간 조달사업 규모 및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및 적정수수료 검토 ◦조달정책 및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 도출	◦현행 조달사업 별 업무 및 서비스 대상 조사 ◦조달수수료 산정방식 검토 및 분석 ◦조달수수료 부과 관련 이슈 도출	◦국내 타 기관 혹은 유관기관의 수수료 운영 현황 및 체계 조사 ◦현행 조달사업의 업무 및 서비스 변화에 다른 조달 수수료 개선 방안 도출

□ (과업 1-1) 조달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

○ 정부는 2010년 이후 녹색조달, 혁신조달, 사회적가치조달 등 전략적 조달의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물품, 용역 등을 중심으로 조달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재 구매 조달수수료의 수입규모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내자, 외자, 시설, 비축사업, 조달지원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사업 부문별 규모의 증감추세를 분석함(그림 4 참조)

- 조달 수수료 규모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추세 파악하고, 주요 사업비 예산 세부 내역 조사 등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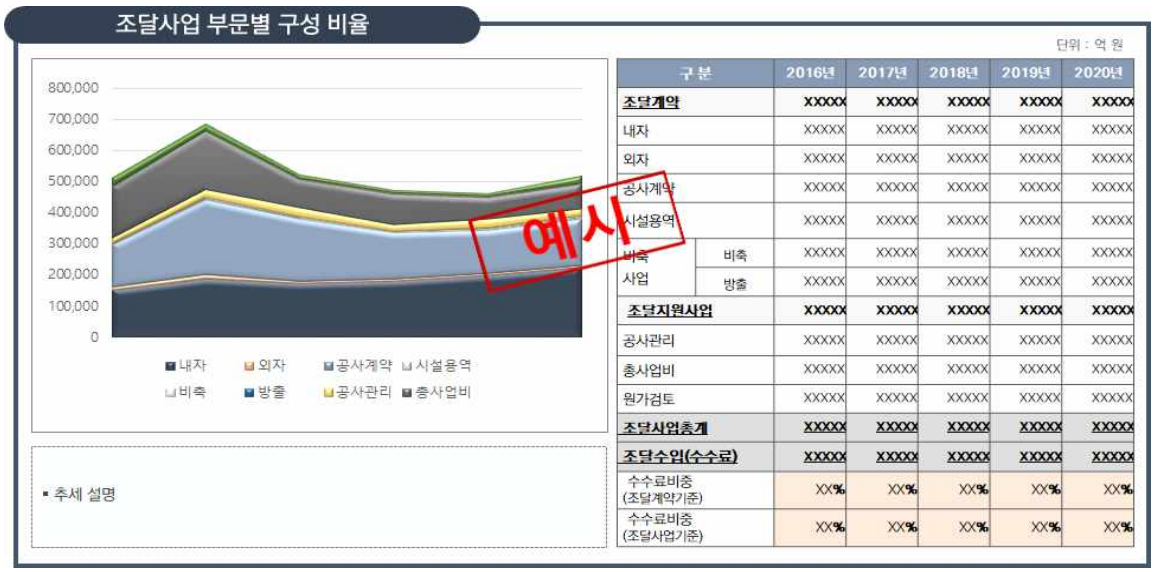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달계약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내자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외자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공사계약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시설용역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비축사업	비축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방출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조달지원사업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공사관리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총사업비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원가검토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조달사업총계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조달수입(수수료)		XXXXX	XXXXX	XXXXX	XXXXX	XXXXX
수수료비중 (조달계약기준)		XX%	XX%	XX%	XX%	XX%
수수료비중 (조달사업기준)		XX%	XX%	XX%	XX%	XX%

[그림 4] 조달사업 연간 사업규모에 따른 각 부문별 구성 비율 분석-(예시)

○ 또한,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조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변화와 관련 이슈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조달지원 사업의 동향 파악하고, 조달 제도의 정책적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더하여 향후 조달 행정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함

□ (과업 1-2) 조달사업별 조달수수료 현황

○ 현재 조달서비스 관련 수수료의 규모와 적용범위, 운영기준, 수수료율, 관계법령 등 조달수수료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검토함(그림 5 참조)

○ 조달청에서 향후 조달서비스를 신설 및 도입해야 할 새로운 서비스 대상 적정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현행 조달서비스 별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및 개선방향 제시

○ 본 과업의 결과물은 향후 '조달 서비스 분야별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달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그림 5 참조)

[그림 5] 조달사업별 수수료 수입 산정 및 분석-(예시)

□ (과업 1-3) 국내·외 유사사례 및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 사례조사

○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운영체계, 운영기준 및 방법(서비스별 부과요율,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공공조달 서비스(Crown Commercial Service)[1]를 통해 조달사업규모와 서비스 인력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평균 조달 수수료율(Commission rate)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지 검토

- 영국 CCS에 공개된 자료를 우선 검토하되, 문헌검색, 유관기관, 선행연구 고찰 등 병행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예정

1) Crown Commercial Service의 'Annual Report and Account' 보고서 내에 조달수수료는 0.33%로 나타났으나, 최근 검토한 결과, 조달수수료 관련 내용이 2015년부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국내 조달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미국(GSA)와 캐나다(PWGSC) 등 해외 선진국의 조달수수료 부과 운영체계, 운영기준 및 방법, 관계법령 및 제도 등을 파악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 검토 예정(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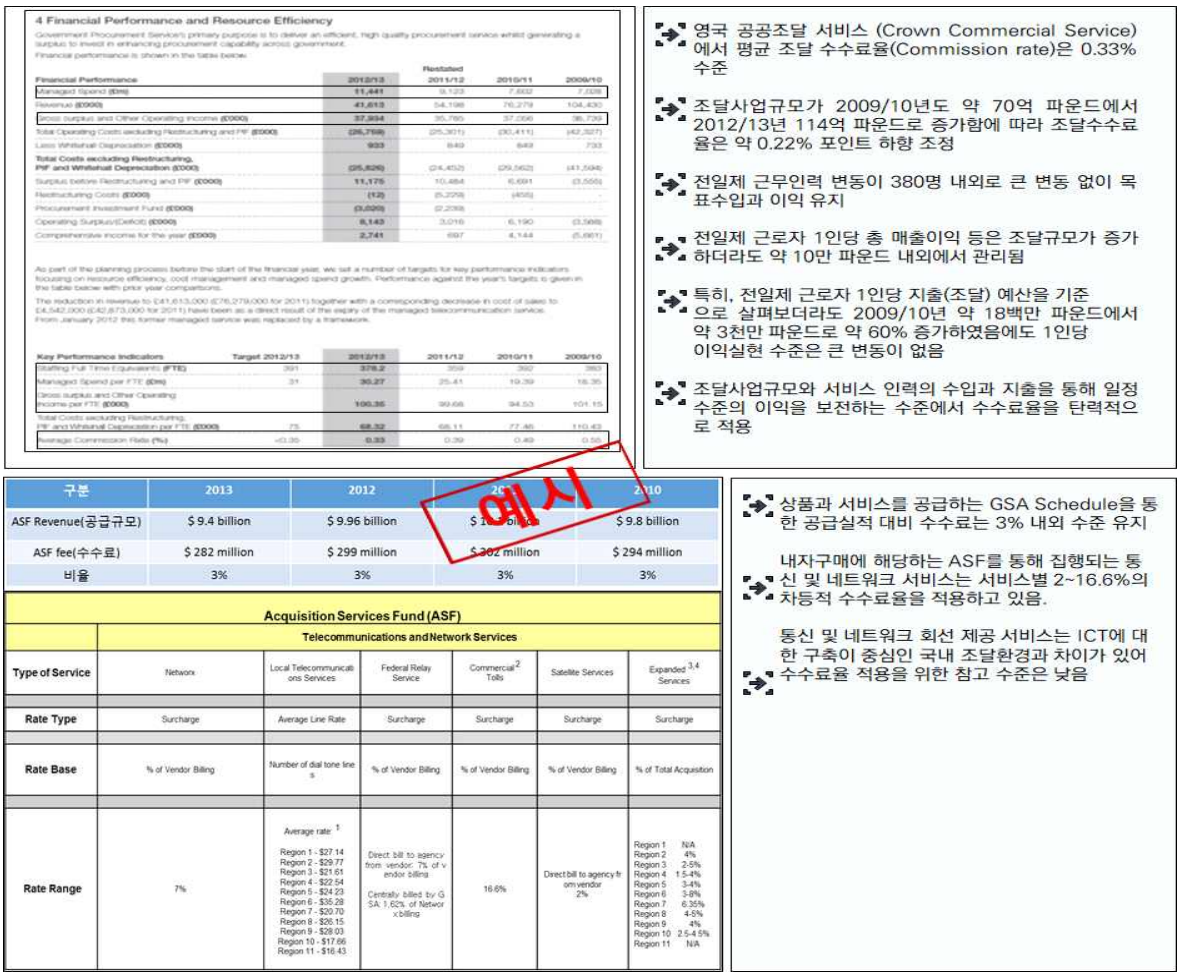

[그림 6] 국외(영국, 미국) 조달수수료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예시)

○ 국내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를 기초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서비스 원가주의'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의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행정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조사·분석함

- 국내·외 타 기관 혹은 정부부처 등에서의 조달수수료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달청의 수수료 운영체계, 운영기준 및 방법에 벤치마킹 가능한 요인이나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과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달청에서 현재 운영중인 수수료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요율의 보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해외사례 조사 부분은 기수행된 연구내용을 발전시키는 수준으로 진행 예정

□ [과업 2] 조달수수료 원가 · 비용 분석

□ 현행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달사업 분야 별 원가 · 비용의 명확한 산정 및 검토는 필수적임.

○ 조달서비스 별 업무특성이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조달사업(서비스)인 내자구매, 시공분야, 일반용역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업무환경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의 변화도 병행 검토함

○ 조달서비스 분야별 업무특성 파악과 수수료 부과체계의 히스토리를 파악하는데, 필요할 경우 실무담당자와 심층 인터뷰 혹은 자료를 요청함

○ 특히, 조달사업(서비스) 별로 현재 업무량을 산정하여 검토한 후, 수수료의 수익-비용 분석을 비롯해 최근 조달 수수료를 통한 수익규모의 추세를 검토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추정하는 과정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조달서비스 별 업무량에 따른 원가 배부가 이루어진 후, 최근 5년 간의 조달수수료의 변화추이 수수료 수익-비용 분석을 실시함

- 다만, 본 연구에서 주어진 과업규모와 기간을 고려해볼 때, 단일 업무에 대한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과 현재 운영 중인 조달사업(서비스) 별 적정업무량까지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무담당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함

○ 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업무량 산정이 필요할 경우 2014년 본 연구기관에서 기수행하여 도출한 결과값을 활용하거나 발주기관 실무담당 부서에서 결과값을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행함

○ 또한, 수수료 부과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나 조달청의 운영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반영한 수수료를 제시함

[과업 2] 조달수수료 원가 및 비용 분석

[과업2-1] 조달사업 수행 원가 및 비용 대상 적정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	[과업2-2] 시설분야 수수료 중점 검토사항	▶	[과업 2-3] 적정수수료 규모 유지를 위한 내자 및 시설부문 균형점 도출
◦ 조달사업 분야별, 공급방법별, 계약금액별 조달수수료 부과체계 적절성 검토 ◦ 현행 조달사업 분야별 조달서비스 대상 및 세부내용 조사 및 검토 ◦ 신규서비스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 ◦ 조달사업별 계약금액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검토를 통한 수수료 과다·과소 방지여부 검토		◦ (협의 이전) 맞춤형 서비스 대형사업에 대한 적정수수료 부과방안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 (협의 이후) 현 과업에서는 단일사업에 대한 적정수수료 부과 타당성 검토가 아닌 시설공사 전체 관점에서 적정수수료 산정을 다루는 것으로 함		◦ 내자 및 시설분야 영업이익의 불균형 해소방안 검토

□ (과업 2-1) 사업수행 원가와 비용을 고려한 적정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 현행 조달서비스 업무영역별 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활용하여 최근 5년 간 조달수수료[원가구성 중 인건비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련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함

-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 비축사업, 조달지원사업 등 조달 서비스 분야별 업무특성을 비교 분석함

○ 조달 서비스 제공 관련 조직, 인력, 업무상 발생하는 주요 이슈 등을 도출함에 있어서, 실무담당자 인터뷰(1~2회)를 통해서 조달서비스 수준 및 업무처리 기간, 업무 비중 등의 분석 요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 및 검토함(그림 7 참조)

- 또한, 조달 서비스별 제공원가를 산출한 후, 손익분석을 위해 수수료 수익인건비 중심을 분석하고, 이를 매칭시켜 적정수준의 조달수수료 요율을 제시하고자 함(그림 8 참조)

○ 공공조달의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 방식이 다변화 되며, 물품(내자)구매 중심에서 서비스(용역)또는 서비스와 물품이 결합된 패키지 중심의 조달이 보편적인 조달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그동안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통부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서비스에 특

화된 혁신적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통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음

- 카탈로그 계약 신설, 수의계약 도입 등 관련규정 정비 및 관련부처 '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선정하여 조달청 계약 및 쇼핑몰 상품으로 등록하는 등 이러한 신규 조달서비스의 별도 요율을 제시할 필요 있음.

  * 다만, 신규 조달서비스의 요율은 투입인력 대비 투입비용, 업무난이도이나 업무시간을 종합한 업무량 산정, 적정 수수료율 예측, 실무담당자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혹은 설문조사 등 일련의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신규 수수료율(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자문도 이루어진 후,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과업범위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광범위하여, 실무진과 논의 후 진행함

○ 조달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및 원가구성 비중의 변화를 토대로, 매년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를 참조하여 분석하고, 유관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율의 변화추이도 병행 검토함

○ 각 기관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토대로 업무별 특성, 투입인력, 투입비용 등 검토 및 시사점 도출함

[그림 7] 원가 및 비용 분석절차 및 방법

[그림 8] 손익체계 분석 방법론

□ (과업 2-2) 시설분야 수수료 중점 검토사항

○ 합리적인 공사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업무특성 및 계약금액별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업무량이 점차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수수료의 상하한선이 없어 원가를 너무 벗어나는 수수료가 벗어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현재 정률제와 정액제 방식으로 혼용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균형성 관점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물품, 용역 외에 시설공사 분야의 소관부서 별 업무중복성이나 차별적 요소[업무환경 및 조직 변화]를 검토하여 현행 업무체계에 적합한 수수료 부과 체계 및 기준도 함께 검토하여 제시함

□ (과업 2-3) 적정수수료 규모 유지를 위한 내자·외자 사업간 균형점 도출

○ 조달서비스의 수익 및 원가변화, 원가비중 분석 결과 투입인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가의 상승률보다 수익의 증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업무단위 당 투입 비중이 높거나 사업의 절대적 규모 및 낮은 수수료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가 비중[인건비 중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다시 말하면, 원가 비중이 낮은 경우 수익대비 원가반영 비율을 높여 적정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수료 부과체계 및 기준 확보가 필요

- 예컨대, 수익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높임과 동시에 원가의 상승비율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의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내자구매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업무에 투입되는 비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원가 비중을 조정할 필요 있다고 판단

□ [과업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 조달 수수료의 적정성과 기타 조달 서비스에 대한 예측 및 적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수료 산정 및 도출을 위한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함

[과업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과업3-1] 조달수수료 면제·감경제도의 실효성 검토 ▶ **[과업3-2] 조달수수료 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지적 사항 등 검토
◦ 현행 할인제도 및 면제제도 검토
◦ `14년 이후, 신규 또는 삭제된 면제·감경·기타 제도 실효성 검토

◦ 상기 2개 대과제 수행 결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마련
◦ 앞서 분석한 조달수수료 면제·감면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포함

□ (과업 3-1) 조달수수료 면제·감경제도의 실효성 검토

○ 현재 운영 중인 조달수수료의 면제·감경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위한 할인제도 적용 전·후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신규/개정/삭제된 면제·감경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새로운 할인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 조달수수료 면제는 전통공예품, 전통주, 전통식품과 학생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로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로 구성

○ 또한, 조달수수료 감경은 선급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선납비율=할인율 : 30~50% 미만 8%, 50~70% 미만 14%, 70% 이상 20% 적용 중)

○ 기타로 리스계약은 총액계약 수수료의 40% 적용(리스대상물건) 중이며, 2006년 50%에서 하향 조정됨.

- 또한, 내자 및 외자 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총액 조달요청 한 경우)

- 각 분야별 조달수수료 면제·감경제도의 도입배경, 도입시기, 근거법령, 개정시기

및 사유 등 일반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검토

○ 조달수수료 면제·감경제도의 실효성 검토는 관련 제도를 도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조달청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연간 거래실적 파악, 분야별 실적 유·무 여부 등하고, 주요 이슈, 향후 변동사항 등을 고려한 면제·감경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

- 또한,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제도 관련하여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분할지급제 등 할인제도나 면제제도 운영 사례조사 · 분석을 통해, 조달 수수료 운영체계에 벤치마킹 가능한 요소 발굴

□ (과업 3-2) 조달수수료 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 조달 사업의 안정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 운영을 위한 기존 조달 수수료 제도의 적용 타당성과 새로이 예상되는 조달 수수료의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여 중 ·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사점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 및 관련 법 · 제도의 정비 방안도 함께 모색함(표 1-1 참조)

[표 1-1] 본 과업의 수행범위 및 내용

과업범위	과업주요내용
1. 조달정책 환경 분석	☑조달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 분석 ☑사업별 조달수수료 현황 ☑국·내외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 사례 조사
2.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	☑사업수행 원가와 비용을 고려한 적정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시설분야 원가 및 비용을 고려한 물품, 용역 간의 적정 수수료율 검토 ☑적정수수료 규모 유지 위한 내자.시설 사업간 균형점 도출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조달수수료 감면제도 실효성 검토 ☑수수료 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Ⅱ

이론적 고찰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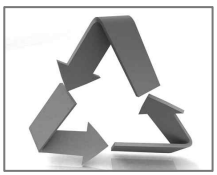

1. 수수료에 대한 기본 개념

1.1. 수수료 정의 및 개념

□ 수수료란 크게 제공하는 업무에 따른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이용 대상자들에게 편익(benefit)을 제공하는 무형의 재화로써 실제 유형의 재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음

○ 서비스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컨대 서비스는 재화의 형태와 성질이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유형재와 달리 무형의 특징을 지닌 '무형적', 이용자가 느끼는 욕구에 따라 주문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등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표 2-1 참조)

[표 2-1] 서비스(제공 업무)의 특징

서비스 특성	주요 내용
무형적	☑ 재화의 형태와 성질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유형재와 다른 무형의 특성
동시적	☑ 제조공정의 결과로 생산되는 유형재와 달리 생산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자체로 재화의 기능을 수행
일시적	☑ 소비자가 느끼는 욕구에 따라 주문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공 ☑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화
상대적 비효율성	☑ 재고저장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공급과 재고조절이 곤란하며 예측 생산이 불가능하여 효율성 제고가 어려움
노동집약적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비와 노동력이 상시 대기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노동력과 인건비의 비중이 큼
시공간적 제약	☑ 서비스의 수요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 역시 시공간적 제약조건이 따름
소비자 직접참여	☑ 서비스의 편익과 효용은 주문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써 유형재와는 달리 대리구매가 어려움
측정단위의 다양성	☑ 특정 효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행한 한 단위로서 그 활동에 따라 다양한 측정단위가 존재
민감성	☑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는 소득이나 경기동향에 따라 수요의 증감이 크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큼

* 박재민(2017.12) 식의약 행정 수수료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건국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참조

○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는 제공하는 업무(서비스) 특성들 중에서 노동

집약적, 시공간적 제약 등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대부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에 대응하는 업무를 비롯해 계약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이 상시 존재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노동력과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포함되는 모든 업무(사무)를 비롯해 정해진 법·규정에 의해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가 존재함

○ 이러한 서비스의 유형은 허가, 인가, 계약, 면허, 신청, 등록, 승인, 증명, 신고, 등본, 열람, 검사, 교부, 시험, 확인,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것을 수수료라고 할 수 있음

- 즉,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 업무나 서비스, 시설이용,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에 의해 충당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을 통해 충당하기도 함(표 2-2 참조)

[표 2-2] 행정서비스(제공업무) 관련 부과금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재정수입의 획득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
수수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부과금
부담금	☑ 공익사업 자체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으로 그 사업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

□ 조달청의 경우, 상기 행정서비스의 종류 중, 국가나 지자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수요기관)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하는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수수료의 유형은 크게 공공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사업과 독점사업으로 징수하는 '위탁·독점 수수료'와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로 구분됨

*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이외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해당 사업을 독점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

1.2. 수수료 유형

1.2.1. 위탁·독점 기관의 수수료

□ 수수료(fee)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를 정의할 때의 핵심요소는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는 개념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공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한 바 있음(안옥진, 2014; 김기표, 1994).

○ 또한, 공공기관 의 위탁·독점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주로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를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로 정의한 바 있음(안옥진, 2014)

□ 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수수료는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로 정의하기도 함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와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가령 위탁심사서비스는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을 말함

1.2.2.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

□ 공공기관 서비스 수수료는 독점 및 정부위탁사업, 융자사업, R&D예산관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독점 및 정부위탁사업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함

○ 융자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융자금리와 자금조달금리의 차이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R&D 예산관리는 R&D연구예산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예산을 각 사업수행자에 집행하는 사업을 말함

- 가령, 심사평가원의 위탁심사서비스 수수료는 독점 및 정부위탁사업 수수료와 그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수수료의 특성

□ (특정성의 원칙)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요기관에게 징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수요기관은 해당 업무의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수요기관에게 부과함

□ (응익성의 원칙)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기관의 이익과 연관이 있는데,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이 의무적인 사항 또는 행정상 필요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 또는 부과하지 않음

□ (비용변상의 원칙) 수요기관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는 조달청에서 이행하는 물리적 비용(근로,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해당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요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국내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수수료 요율인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 전액에 대한 사용자 부담보다는 일부 비용의 부담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요율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또한, 기 수행된 연구에서 적정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의 60% 수준을 적정하다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원가산정결과 등을 반영한 수수료가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차이와 공공성을 감안한 할인율 등을 그대로 적용해왔기 때문으로 지적한 바 있음[2)]

2) 주운현(2005), 수수료 요율의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경쟁가격주의, 사회적 원리주의 4가지로 구분됨

❶ 서비스 원가주의

□ 서비스 원가주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생산·공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방법임. 해당 방법은 공공기관의 요금결정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음

○ 서비스 원가에 기반한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음

□ 서비스 원가주의는 가격결정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원가만큼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됨

○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 원가는 공공기관의 가격결정의 하한선으로 작용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 이는 원가적산주의와 공정보수방식으로 구분되며, 원가적산주의는 서비스 생산 및 공급에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계하여 총 요금 수입과 일치시키는 방법임(표 2-3 참조)

○ 공정보수방식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총 영업비에 공정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가하는 개념과 유사함

❷ 서비스 가치주의

□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원가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받는 특정인(소비자)의 수용에 의존해 일반적으로 요금결정의 상한선을 결정함

○ 서비스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의 가치는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를 계량화하여 공통적인 가치측정 기준을 마련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음

[표 2-3] 원가적산주의 vs 공정보수방식

원가적산주의	공정보수방식
☑ 사업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발생액을 합계하여 소요수입액으로	☑ 공익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총영업비에 공정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총요금수입으로

책정하는 방법 ☑ 사업운용과 관련된 투자자본에 대한 금융비용만큼 보상하는 방법	책정 ☑ 주로 미국에서 채택되어 온 자금결정방식 ☑ 공익기업의 사업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적정이윤을 허용함으로써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고려
☑ 총 요금수입(R) = E+I+P • E: 영업비 +감가상각비+법인세 등 • I: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사채이자, 차입금 이자) • P: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주식배당 예정액, 사내보유금)	☑ 총 요금수입(R) = E+ (V-D) × r • E: 영업비 +감가상각비 + 법인세 등 • V: 사업자산의 공정가치 • D: 감가상각누계액 • r: 공정보수율 • (V-D)×r: 투자보수

* 출처 : 이상훈(2020), 의약품 건강보험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❸ 경쟁가격주의

○ 경쟁가격주의는 공익사업의 서비스 시장이 독점이 아닌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시장에 의한 결정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 이는 공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서비스의 수요곡선과 소비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임

❹ 사회적 원리주의

○ 사회적 원리주의는 사회적 비용과 복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이며, 부담능력주의와 복지확산주의로 구분됨. 부담능력주의는 서비스의 요금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원리임

○ 복지 확산주의는 국민 전체에게 복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자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표 2-4 참조)

[표 2-4] 가격결정원리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서비스 원가주의	• 원가의 객관적인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함 공공기업 적용사례가 다양함 • 예) 한국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대부분의 국내외 공기업	• 원가계산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음 • 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가치주의	• 서비스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므로 이론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서비스의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상이하고, 공통적인 측정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의 가치를 수량적 표현으로 나타내기 어려움(작성자에 따라 결과 차이 발생) • 실제 적용사례를 찾기 어려움
경쟁 가격주의	•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결정방법	• 가상경쟁 상태에서 결정될 균형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움
사회적 원리주의	• 사회적 비용 및 복지 기준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중가격제 등)	• 공익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경제재임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움

* 출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2), 사회서비스 차세대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비 산정 연구, 국립환경과학원(20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비용 산출기준 및 방법 마련 연구

□ 수수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은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은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생산형태에 적합함(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토목건축업, 가구제조업, 서비스업 등)

○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은 원가조사 기간 동안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동일 기간 동안 제조된 제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 및 서비스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임

○ 예정원가계산(사전원가계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기 이전에 앞으로 소비가 될 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임

○ 실제원가계산(사후원가계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한 후에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임

○ 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ing)은 사전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균적인 수량과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원가와 비교·분석하여 각 원가요인별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사례연구) 의약품 허가신청신고 업무관련 적정수수료 산출(감우회계법인, 2016)

ㅇ (개요) 식약처 의약품분야의 허가·심사제도에 부과하는 민원 업무 수수료는 1992년 신설 이후 2002년 식약처 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개정(인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2011년 3월 '의약품 허가업무의 적정수수료 원가분석'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적용해오고 있음

-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물가상승률, 조직, 인력, 프로세스 등의 변화요인을 재점검하여 이전의 원가분석 결과를 재조정해오고 있음
- 수수료의 현실화는 불필요한 민원신청을 개선하게 되었고 동시에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보았으며, 인상된 수수료의 일부는 해당 업무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함

ㅇ 식약처는 실무부서와 사업관리부서로 조직이 구분되는데, 실무부서는 허가·심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고 사업관리부서는 처 내의 각 실무조직을 지원·관리하는 부서임

- 허가·심사업무 사업비용은 실무부서와 사업관리부서의 허가·심사 업무에서 발생되는 인적 비용과 경비 등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적정한 허가심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비용의 특성에 부합되는 비목별 원가산정기준 수립이 중요함
- 사업비용을 원가항목으로 분류하면 실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적경비', 사업관리조직의 '사업관리비'로 분류함
- 허가심사업무는 정형화 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인 민원발생 유형별 처리에 따른 비용집계가 어려우며, 동일한 민원이라도 심사자의 전문성, 민원인의 기술수준, 민원처리 시점의 업무량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연간 허가·심사 비용을 유료화 업무와 무료화 업무로 구분하고, 유료화 업무에 대해 연간 실적처리건수에 적용등가를 감안한 연간 업무적수 비율로 사업비를 배부한 후, 연간 처리건수로 건당 수수료를 산출하는 원가분석 업무를 진행함

ㅇ 실무부서의 인건비는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분류되는데, 직접인력은 민원접수부터 완료까지 담당하는 실무자를 의미하고 간접인건비는 해당부서 내의 실무자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뜻함

- 인력이 투입되는 서비스는 인건비 외에도 경비가 지출되며, 조직의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 허가심사업무의 특성 상 인적경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사업관리비는 사업조직을 지원·관리하는 조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그 발생 규모 또한 사업조직과 사업관리조직의 예산규모에 따라 결정됨

[표 2-5] 허가심사 수수료 원가항목

비목		연간허가심사업무 사업비용	(2) 민원종목별 사업비용	(3) 민원종목별 처리건수	민원종목별 수수료
인건비	실무처리	허가심사 실무투입 인력수 × 인건비단가	-	-	-
	실무총괄	실무총괄인력수 × 실무처리인력비율 × 인건비단가	-		-
경비		인건비 × 인적경비 발생비율	-	-	-
사업관리비		(인건비+경비) × 사업관리비 발생비율	-	-	-
계		(1)	(1)×민원종목별 건당 업무처리생산성 기준시 배부율	민원종류별 연간 건수	(2) ÷ (3)

o (시사점) 공공요금의 결정기준을 기반으로 적정수수료율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공공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는데 일관성·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짐

Ⅲ

조달수수료 운영현황 검토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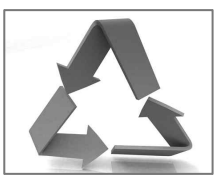

1. 조달수수료 관련 조달정책 환경분석

□ 국내 공공조달은 공공활동의 수행을 위한 유·무형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조달청은 이러한 국가의 필요 자원을 높은 품질과 적정가격으로 구매·공급함과 동시에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중앙 집중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정부조달 비용의 합리적인 집행을 통한 예산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그 내에서 공공조달 규모에 기반한 주요 정부시책의 집행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기관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을 위해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이 물품·용역 계약 및 공급, 공사계약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음

○ 이렇게 징수한 조달수수료의 수입으로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에 충당하고, 지출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회전자금* 확충, 일반회계 전출 등에 사용하고 있음

* 회전자금 :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달물품 대금을 납품업체에 대신 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자금(내자대지급 자금)과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축사업 자금을 말함.

□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6년 12월 27일 내자물품구매사업에 대한 최초 책정 이후 조달환경의 변화, 서비스 개발, 국가경제 정책의 효율적 운용 지원, 수요기관 부담 경감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일부 조정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조달청은 '녹색조달', '혁신조달', '사회적 가치조달' 등 전략적 조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로 물품, 용역 등을 중심으로 조달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을 통해 수수료가 일괄 부과되면서, 내자구매 분야 조달수수료 수입규모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9년 末 조달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 규모는 약 210,192백만 원으로 내자구매가 전체의 78.25%, 시설공사가 17.15%, 외자구매가 2.29%, 비축물자가

2.02%로 내자구매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조달수수료 수입 비중은 대부분 시설분야나 외자분야 보다는 내자사업 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전체 사업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수수료 수입이 감소 추세이며, SOC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됨에 따른 발주물량 정체(감소)와 내자구매와 달리 총액계약 중심의 조달서비스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수입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2016년 대비 2020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달계약사업' 36.9%(355,220억원→486,239억원), '내자구매' 42.8%(242,638억원→346,440억원), '외자구매' 27.8%(4,457억원→691,461억원), '시설공사' 24.0%(108,125억원→134,105억원), '비축' 103.1%(1,132억원→2,665억원)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절대금액을 고려해볼 때, 내자구매 사업의 조달수수료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1 참조)

[표 3-1] 조달사업 분야별 사업실적 증감률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억 원)	2020년(억 원)	증감률(%)
조달계약사업		355,220	486,239	36.9
	내자	242,638	346,440	42.8
	외자	4,457	5,694	27.8
	시설	108,125	134,105	24.0
	비축	1,312	2,665	103.1

* 출처: 조달사업통계(21.01)

□ 반면, 시설공사 부문인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업무는 전문적 조달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원가검토,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2020년도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참조)

□ 맞춤형서비스 업무의 수수료는 심의대행 서비스로 대형공사(일괄, 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대행이 있으며, 기획설계관리는 일반공사와 대형공사로,

시공관리는 공사관리 및 사후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와 감독권한대행으로 구분하여 책정됨

○ 총 사업예산액 300억원일 때, 100억원까지는 0.462% 적용, 300억원 중 1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은 0.420% 적용하여 합산하여 수수료 산정

○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는 과다 설계된 부분은 낮추고, 품질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동토론회, 가격조사 및 내역서보완(설계자와 함께), 면적검토, 설계서보완, 증액사유 검토, 유사사례 조사 등 6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침(기능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 VE 경제성검토 실시)

[표 3-2] 조달서비스 시설분야 업무별 사업실적 증감률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20년	증감률
시설분야 업무		161,342	202,557	25.5
	맞춤형서비스	25,345	26,867	6.0
	총사업비검토	79,030	74,600	△5.6
	원가검토	12,319	29,724	141.3
	설계적정성검토	44,648	71,366	59.8

* 출처: 조달사업통계(21.01)

□ 다만,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16년도 대비 '20년도에 6%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21년도와 '22년도부터는 예년보다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이유는 조달청에서 최근 도입한 맞춤형서비스의 실적이 최근 3년 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스마트 건설기술도입 확대를 통한 공공시설 품질강화, 관급자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조달청 시설분야의 신뢰도를 개선하면서 수요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미 금년도 4월 들어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의 수임실적은 지낸 해 기준 총 68건, 2조 6887억 1300만원 규모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난 '19년 68건, 2조 2032억 2500만원 대비 22.03%, 4854억 8800만원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3)]

* 맞춤형 서비스란 조달청이 시설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과

3) e-대한경제(`21년 4월 15일 보도자료 참고)

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건설기술용역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

* 시설공사 부문에 대해서는 조달분야 별 수익변화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음

□ 이처럼 적정 조달수수료 산정 및 부과하는 관점 기준에서 살펴보면, 산정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각 조달사업분야 별로 적정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외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자체 조달기관에서 공공조달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며,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다양화(차세대나라장터, 디지털 전환, 혁신조달 관련 사업 가속화 등)를 통해 공공조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및 촉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의 예산소요 증감에 변동이 예상되는 바, 원가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율의 현실화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지자체의 조달 분권화를 비롯해 국회나 관련 부처 및 수요기관 등에서 제기한 의견들을 고려해볼 때,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함(그림 9 참조)

[그림 9] 조달사업 및 환경 분석절차 및 방법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조달서비스별 제공하는 업무범위 조정, 수수료율 조정 전·후를 파악하여 실제 수수료를 통한 수입이나 지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함

○ 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환경분석 영역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조달사업 규모와 범위확대에 따른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적정수수료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출함

○ 현재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조달정책 및 제도의 운영 현황 및 관련 이슈 검토 등을 통한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조달환경 정책 및 제도적 변화검토를 통해 발굴된 시사점과 조달 수요의 변화 추세분석을 통해 조달사업 규모와 비례하는 조달수수료의 구조적 특성 검토함.

1.1. 조달분야 별 수익변화 분석

□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계약사업 실적 중 내자구매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공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내자구매는 `16년도에 67.71%에서 `20년에는 70.57%로 2.86% 증가하였으며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 동일 연도를 비교해볼 때, 30.17%에서 27.32%로 오히려 2.85% 감소 추세임(그림 10 참조)

○ 외자구매는 비축사업과 거의 유사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데, 비축사업의 경우는 '16년 1.24%에서 '20년에는 1.16%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사업의 경우, 동년도 기준으로 0.87%에서 0.96%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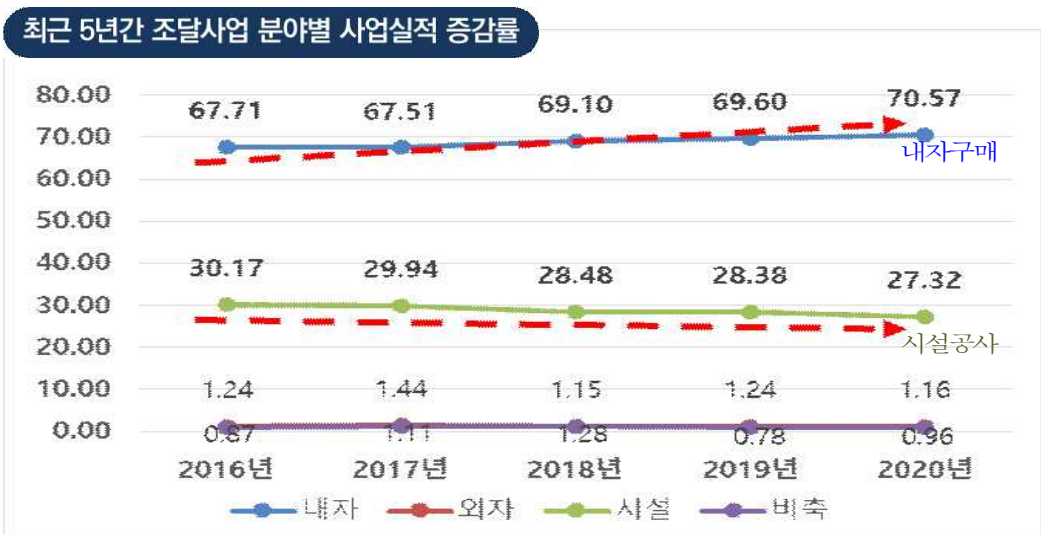

[그림 10] 최근 5년간 조달사업 분야 별 사업실적 증감률(2016-2020)

□ 한편, `19년도를 기준으로 조달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 규모는 총 2,186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사업실적의 기울기와 비교해 볼 때, 수수료 수익은 사업실적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음(그림 11 참조)

○ 내자구매는 '15년에 1,346억원(76.13%)으로 집계되었으며 '19년에는 1,730억원(79.14%)으로 약 400억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시설공사의 경우, '15년 332억원(1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년 362억원(16.56%)로 수수료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 최근 5년간 조달사업 분야 별 수수료 수입 증감률(2016-2019)

□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이 실제 사업실적이나 규모랑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특히, 2010년 이후 물품이나 용역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시설공사는 국가 SOC 예산규모 중에서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규모에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등락의 폭이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3개년정도 맞춤형서비스의 규모나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도부터 수수료 수익부분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 별 사업실적과 수수료 수익 규모가 차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10년도 이후부터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으며, 시설공사의 경우는 정부 SOC 예산에 따른 발

주물량의 변동 규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물품과 용역의 경우, 혁신조달, 사회적가치, 녹색조달, 탄소중립 등 전략적 조달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 단가계약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고 있음

○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 수수료의 수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총액계약 중심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인해 수입규모 자체가 축소되거나 시설분야의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특히, 맞춤형서비스 등 고부가가치의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성장이 다소 정체된 분위기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최근 들어 맞춤형서비스의 건수(금액)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수료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맞춤형서비스의 운영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16년도 대비 '20년도에 6% 정도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 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2 참조)

* 금년도 4월 들어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의 수임실적은 지난 해 기준 총 68건, 2조 6887억 1300만원 규모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난 `19년 68건, 2조 2032억 2500만원 대비 22.03%, 4854억 8800만원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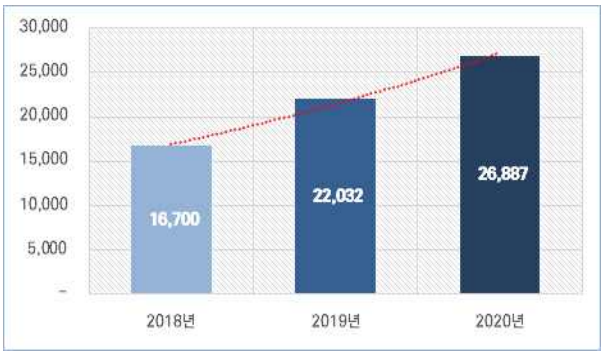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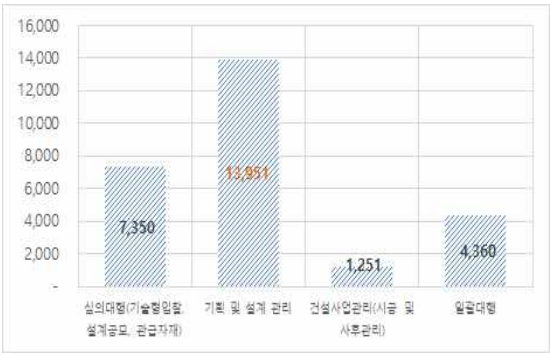

[그림 12] 최근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실적 증감율(2018-2020)

(단위 : 억원)

□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술형입찰·설계공모·관급자재 등 심의대항이 17건으로 7350억 1000만원, 기획 및 설계 전반에 대한 관리가 35건, 1조 3905억6300

4) e-대한경제(`21년 4월 15일 보도자료 참고)

만원,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시공관리와 사후관리가 5건, 1251억 3400만원,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단계를 대행하는 일괄대행이 11건, 4360억 6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스마트 건설기술도입 확대를 통한 공공시설 품질강화, 관급자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조달청 시설분야의 신뢰도를 개선하면서 수요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조달사업의 실적규모는, 조달계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달지원사업 실적규모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3 참조)

○ 조달청의 조달계약이나 조달지원사업의 규모는 내자구매, 공사계약의 운영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라 할 수 있음

* 조달계약의 경우, 내자사업>공사계약>시설용역>외자사업>비축사업 순으로 증가

* 조달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검토>설계적정성검토>원가검토>맞춤형서비스 순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조달사업 실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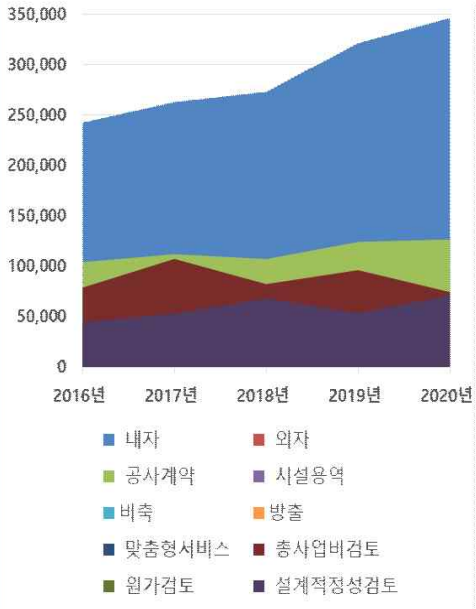

*출처: 조달사업통계(2021.01)

단위 : 억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달계약		355,220	385,291	390,438	458,205	486,239
내자		242,638	263,026	273,283	321,434	346,440
외자		4,457	5,615	4,530	5,712	5,694
공사계약		104,278	112,180	107,356	124,380	126,859
시설용역		3,847	4,470	5,269	6,679	7,246
비축사업	비축	1,312	2,377	2,578	1,661	2,665
	방출	1,817	1,952	2,498	1,932	2,034
조달지원사업		161,342	200,999	193,711	192,715	202,557
맞춤형서비스		25,345	24,360	21,675	22,032	26,867
총사업비검토		79,030	107,479	82,485	96,332	74,600
원가검토		12,319	16,045	21,163	20,815	29,724
설계적정성검토		44,648	53,115	68,388	53,536	71,366
조달사업총계		517,874	588,667	586,727	652,581	691,46

[그림 13] 최근 5년간 조달청 조달사업 및 지원사업 실적 규모(2016-2020)

출처 : 조달사업통계(2021.01)

□ 최근 5년간 조달사업의 세부영역 별 현황 분석을 비롯해 향후 각 조달사업분야별 조달수요에 따른 추세분석을 실시함(표 3-9 참조)

○ 최근 5년간 조달사업과 조달지원사업 별 조달수요 변화를 파악하여 추세분석을 통해 조달수수료 수입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함

○ 조달특별회계 부문에서 `19년도 대비 확정된 `20년도 예산은 조달사업 운영 부문은 5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부문 36%를 비롯해 나머지 부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회계간 거래 항목만 21.0%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3] 2020년도 주요 조달사업 별 사업비 예산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추경포함 (A)	'20예산 확정 (B)	증감 (B-A)	증감률 (%)
조달특별회계	**396,610**	**406,294**	**9,684**	**2.4**
1.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1100)	**26,445**	**35,960**	**9,515**	**36.0**
▪ 조달정보화 (1131-501)	21,256	30,565	9,309	43.8
▪ 전자조달 운영 지원 (1131-504)	3,535	3,621	86	2.4
▪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132-331)	1,654	1,774	120	7.3
2. 조달사업 운영	**13,540**	**21,524**	**7,984**	**59.0**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1,826	2,575	749	41.0
▪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233-332)	184	184	0	0.0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4,503	4,229	△274	△6.1
▪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1235-335)	909	916	7	0.8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3,508	3,606	98	2.8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2,610	10,014	7,404	283.7
3. 조달행정 지원 (7100)	**96,380**	**104,098**	**7,718**	**8.0**
4. 회계간 거래 (8000)	**146,867**	**116,079**	**△30,788**	**△21.0**
5. 계정간 거래 (8200)	**104,890**	**119,262**	**14,372**	**13.7**
6. 회계기금간 거래 (8400)	**8,488**	**9,371**	**883**	**10.4**

출처 : 2020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 상기 조달사업 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수익추세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5)]

□ 지난 5년간 조달계약사업 수익총계를 살펴보면, `16년도를 기점으로 `16~17년도 8.47%, `17~18년도에 1.34%, `18~19년도 17.3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5) 각 자료는 2021년 01월에 공표된 조달사업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함

`19~20년도에는 6.1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수요예측을 위한 방법론은 과거 5개년 동안 수입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여 시각화하고, 이를 회귀모형 방정식으로 만들어 대입하면 일정기간에 대하여 예측함. 다만, 대외적인 변수(영향)에 따라, 수익률에서는 당연히 편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 분석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는 차원을 해석해 볼 수 있음

○ `21~`23년까지 조달계약사업 대상 수입총계의 추이는 `20년도 대비 약 3.3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수익에도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음(그림 14 참조)

□ 이러한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분야의 경우는 혁신조달, 탄소중립 등과 같은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시설부문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의 확대나 국가 SOC 예산증가로 인해 중앙조달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달계약 사업	355,220	385,291	390,438	458,205	486,239	480,454	492,534	502,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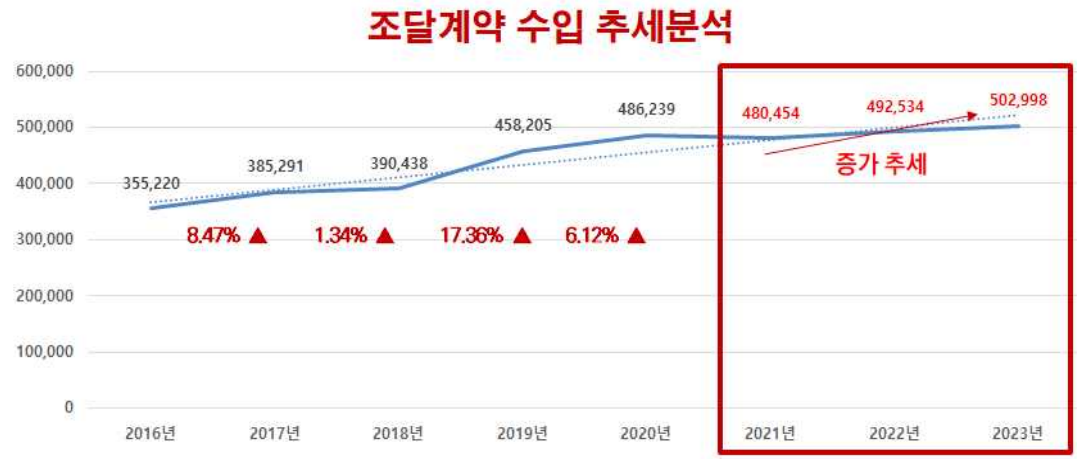

[그림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조달계약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개년 수요 예측

□ 또한, 지난 5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익을 보면 `17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나 증가하였고, 이듬해부터 약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다음해인 `20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5%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직전년도인 `19년도와 `20년도의 감소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0년 말에 예성된 SOC 예산규모가 당초 26조원에서 `21년에는 5,000억원 증액되면서, 시설공사 분야의 맞춤형서비스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그림 15 참조)

□ 조달지원사업의 향후 3개년에 대한 수요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23년까지 마찬가지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달지원 사업	161,342	200,999	193,711	192,715	202,557	208,033	211,316	214,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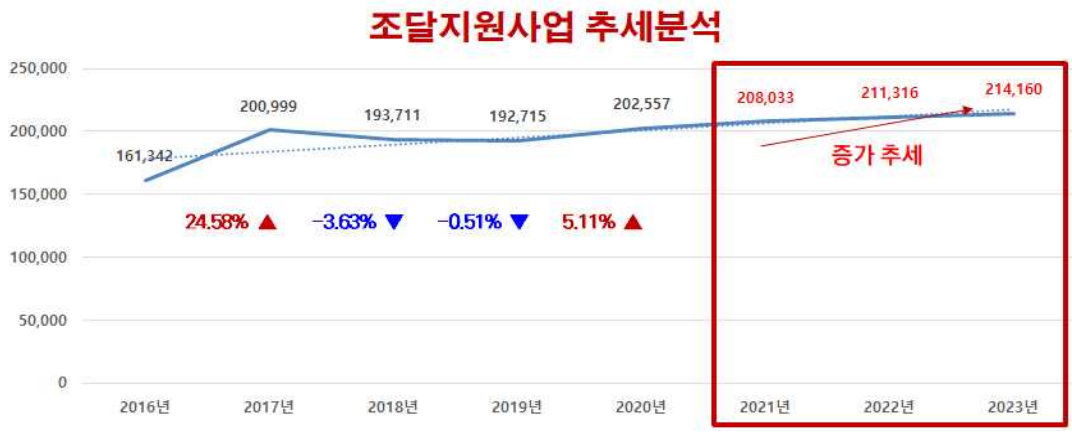

[그림 15] 최근 5년간 연도별 조달지원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개년 수요 예측

○ 지난 5년간 조달사업전체의 수익총계는 `16년 대비 `17년 13.6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듬해에는 -0.33% 소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3년 간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한 결과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됨(그림 16 참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조달사업총계	517,874	588,667	586,727	652,581	691,461	691,086	706,537	719,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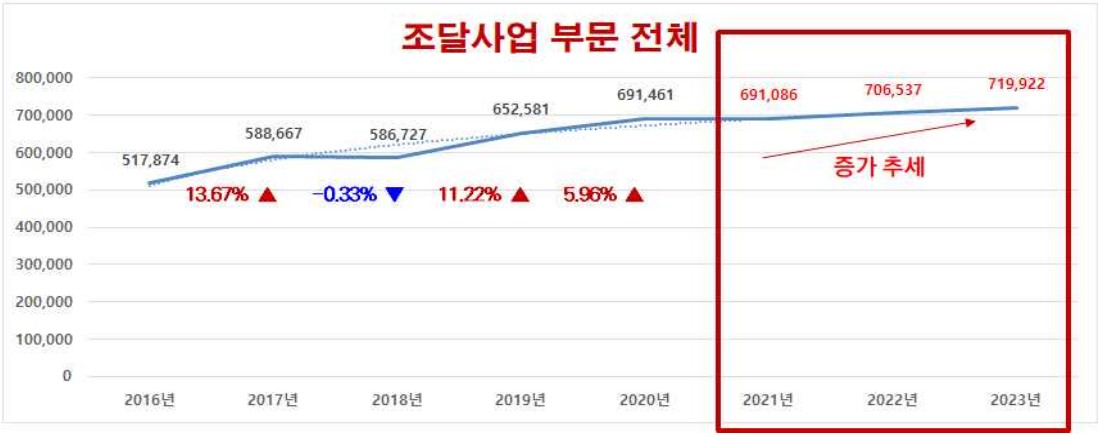

[그림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조달사업 전체 수익실적 및 향후 3개년 수요 예측

□ 동일 기간 대상으로, 비축사업의 수익총계는 `18~19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3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7 참조)

단위 : 억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축 사업	3,129	4,329	5,076	3,593	4,699	4,775	4,887	4,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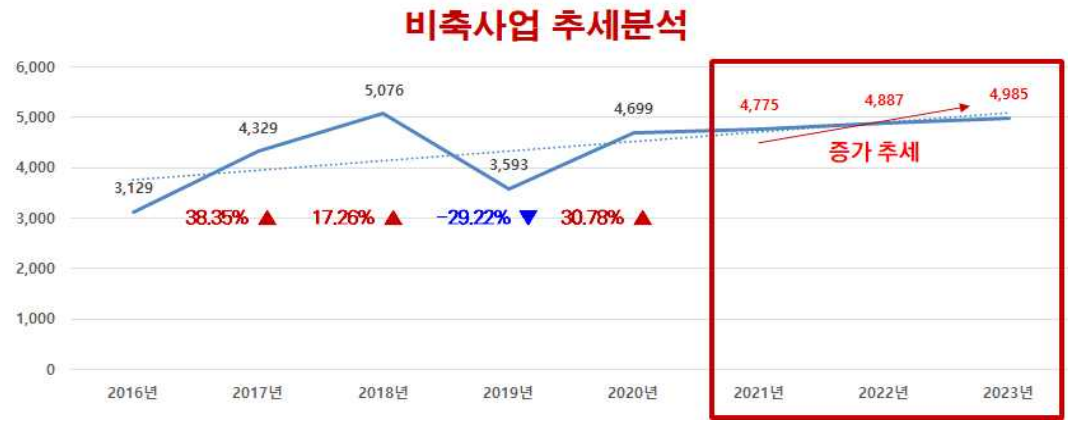

[그림 17]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사업 수익실적 및 향후 3개년 수요 예측

□ 한편,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을 내자구매, 외자구매, 공사계약, 비축사업으로, 조달지원사업은 맞춤형서비스, 원가검토,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조달계약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변화추세와 향후 3년간 사업수익 구조의 변화, 수수료 수입 구조의 변동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함(그림 18 참조)

□ 먼저, 조달계약사업은 대부분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도 이후부터 향후 3년간 증감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내자구매는 3.52%, 외자구매는 3.98%, 공사계약은 2.47%, 비축사업은 5.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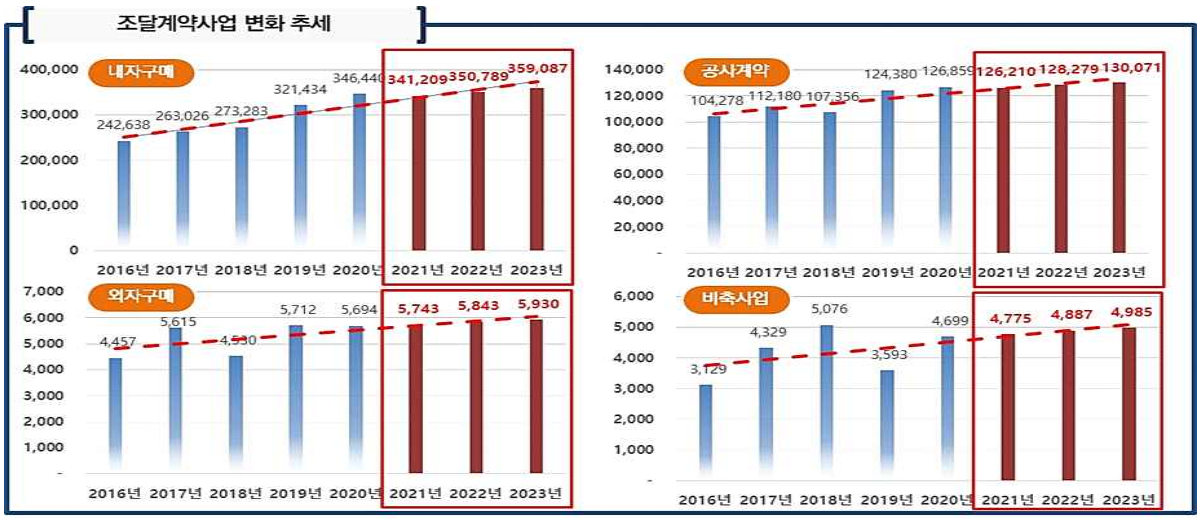

[그림 18]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수익현황 및 향후 3년간 사업 수익추이

□ 조달지원사업은 맞춤형서비스와 총사업비검토 분야는 다소 등락폭이 존재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원가검토와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19 참조)

○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맞춤형서비스는 `16년부터 정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 실적규모를 예측한 결과 약 14% 정도 감소세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총사업비검토, 원가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13.5%, 2.9%, 5.4%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맞춤형서비스는 `16~`20년까지 사업규모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3개년을 예측한 것으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맞춤형서비스의 발주규모(건수 및 금액)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업실적과 수수료 수익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9] 최근 5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익현황 및 향후 3년간 사업 수익추이

□ 조달사업의 수익규모 및 향후 추이에 대한 분석방법을 수수료 수익규모와 향후 증감률을 예측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함

○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조달청의 세입·세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향후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함

□ 조달계약사업은 내자구매, 외자구매, 공사계약, 비축사업 등 약간의 등락폭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그림 20 참조)

○ 그 중에서도, 내자구매가 다른 사업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년 대비 `19년도에 약 14% 이상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0년도 이후 `21년부터 향후 3년 간 내자구매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은 평균적으로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외자구매도 내자구매와 마찬가지로 `16년 대비 `19년도에 약 15% 이상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년부터 향후 3년 간 평균적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사계약의 경우, `16년 대비 `19년도에 다른 사업에 비하여 약 10% 정도 감소한 추세를 보여 왔으나, `21년 기준으로 향후 3년 간 수수료 수익은 약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타 분야에 비해, 수수료 수익 예측률이 낮은 이유는 건설공사의 사업규모 및 실적이 수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비축사업의 경우, `16년도부터 등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약 64%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1년도 이후부터 향후 3년 간 다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최대 3.4%까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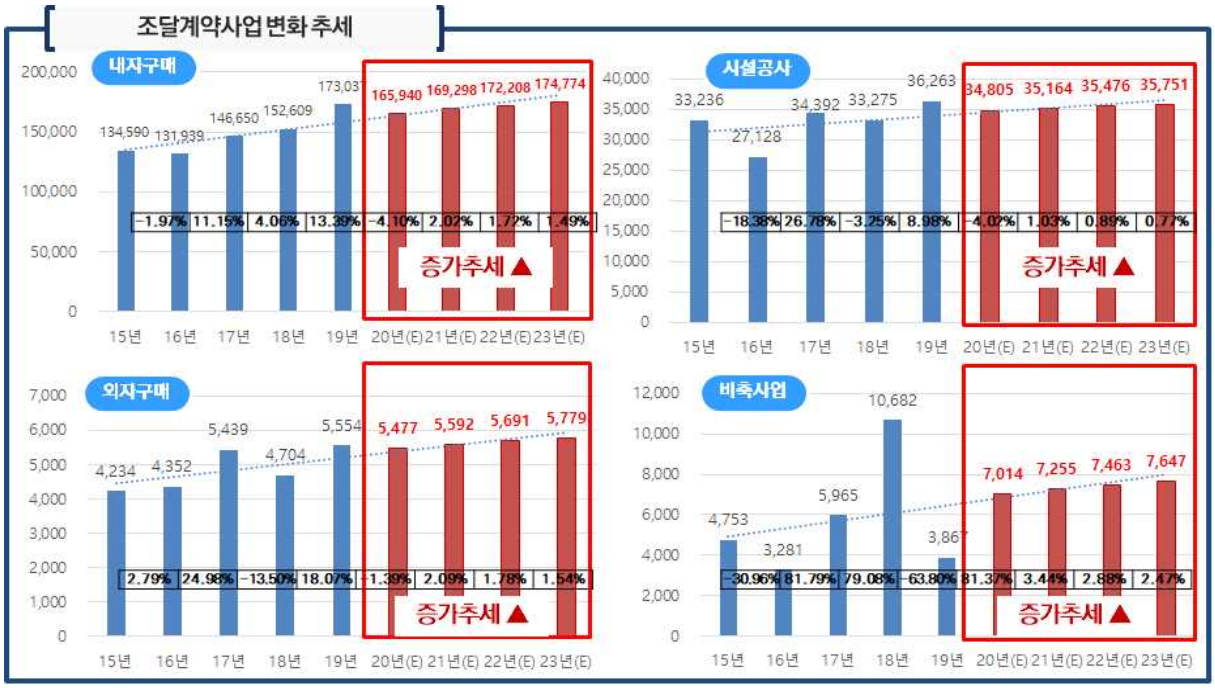

[그림 20]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년간 사업 수익추이(1)

□ 조달지원사업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가검토와 설계적정성 검토는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맞춤형서비스와 총사업비검토 부문은 다소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1 참조)

○ 이는 금년도 SOC 예산규모나 맞춤형서비스의 실적(건수나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20년도 기준으로 주요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추후 SOC 예산규모와 맞춤형서비스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타 사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총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발주규모가 증가하면서 공사계약과 동일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시공감리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사원가는 `19년도부터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계적정성검토의 수수료 수익이 `18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감리 부분의 전반적인 업무가 설계적정성검토업무로 이관되면서 수수료의 차익이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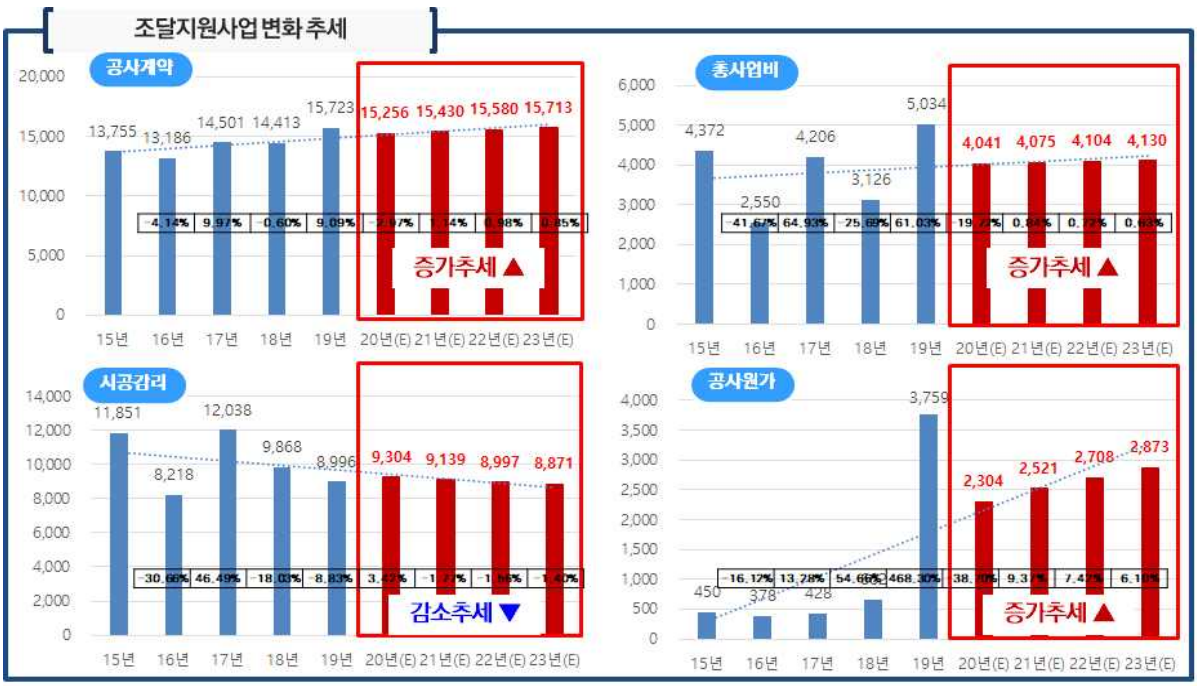

[그림 21] 최근 5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년간 사업 수익추이(2)

□ 조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규모에 대한 수익추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 수익에 대한 현재까지 추세와 수요예측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수수료 수익 추세도 실적규모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그림 22 참조)

○ 다만, 수익이 증가하는 기울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수수료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22-23년	15-19년 평균	20-23 평균
내자구매 수수료	-1.97%	11.15%	4.06%	13.39%	-4.10%	2.02%	1.72%	1.49%	4.51%	1.74%
외자구매수수료	2.79%	24.98%	-13.50%	18.07%	-1.39%	2.09%	1.78%	1.54%	6.19%	1.80%
공사계약수수료	-4.14%	9.97%	-0.60%	9.09%	-2.97%	1.14%	0.98%	0.85%	2.27%	0.99%
시공감리수수료	-30.66%	46.49%	-18.03%	-8.83%	3.42%	-1.77%	-1.56%	-1.40%	-1.52%	-1.57%
총사업비검토수수료	-41.67%	64.93%	-25.69%	61.03%	-19.72%	0.84%	0.72%	0.63%	7.78%	0.73%
공사원가사전검토수수료	-16.12%	13.28%	54.66%	468.30%	-38.70%	9.37%	7.42%	6.10%	96.28%	7.63%
설계감리용역계약수수료	-0.41%	15.16%	21.02%	-81.84%	218.14%	-3.56%	-3.20%	-2.92%	34.41%	-3.23%
설계적정성검토수수료				55.82%	20.96%	12.29%	8.49%	6.39%	38.39%	9.06%
시설공사 총 수수료	**-18.38%**	**26.78%**	**-3.25%**	**8.98%**	**-4.02%**	**1.03%**	**0.89%**	**0.77%**	**2.02%**	**0.90%**
비축물자수수료	-30.96%	81.79%	79.08%	-63.80%	81.37%	3.44%	2.88%	2.47%	29.49%	2.93%

[그림 22] 최근 5년간 조달지원사업의 수수료 수익현황 및 향후 3년간 사업 수익추이(3)

□ 조달수수료의 운영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20년도 기준으로 제시된 조달 수수료율의 평균을 검토함

○ `20년도 기준 조달수수료율의 평균은 약 0.32% 수준이며, 총사업비검토(기타 시설업무), 맞춤형서비스,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공사계약 수수료율은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그림 23 참조)

○ [그림 15]에서 붉은색 선은 `20년 기준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율 평균을, 파란색 점선은 조달계약사업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수수료율 평균을, 보라색 점선은 조달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간의 평균치를 산정함

□ 조달분야별로 살펴보면, 내자구매, 외자구매, 기술용역은 과거 5개년 평균이나 현재의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시설분야의 공사계약,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는 과거 5개년 조달계약사업이나 조달지원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런 결과를 재정의 건전성이나 균형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수준이나 운영체계보다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찾아서 균형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의미함

○ 특히,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규모의 관점에서 정부 SOC 예산편성 규모나 발주물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볼 때, 현재의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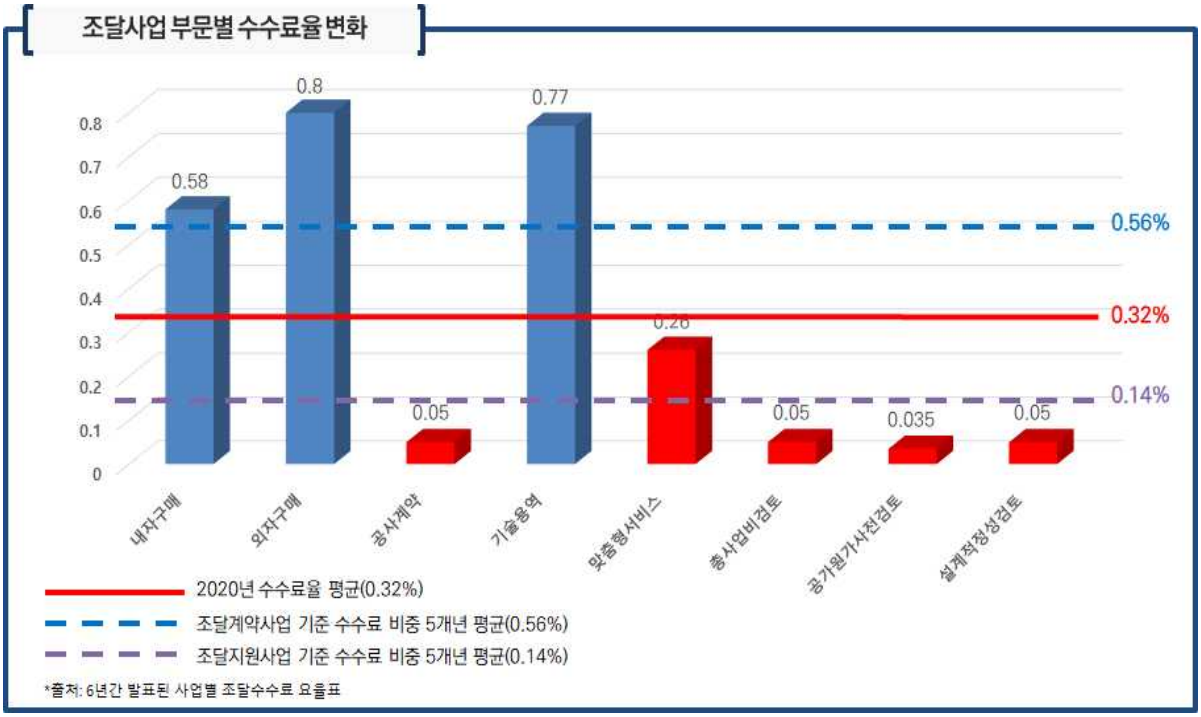

[그림 23] 최근 5년간 조달수수료 평균 변동률 검토

□ 한편, 지난 5년간 세출내역을 기준을 최근 수수료 수입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원가 대비 세출부분의 계정총합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 수준으로 분석됨(그림 24 참조)

○ 세출총계 손익계정 대비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수준으로, 세출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인건비를 보면, 수수료 수입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38% 정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세출 손익계정에서 수수료 수익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수수료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계정총합이나 손익계정 등 세출 대비 수수료 수입비중에 대해서는 최초 수행된 수수료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평균치보다 각각 10% 정도씩 더 높아졌으며, 그에 맞춰서 인건비도 약 4%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수수료 수익은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대안들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5년간 세출 및 수수료 수입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08-'12 평균
세출총계(계정총합)	337,339	249,599	292,600	338,285	373,292	318,223	293,821
전년대비 증가율(%)	-	-26.01	17.23	15.61	10.35	4.30	7.95
수수료 수입 비중	52.41	66.79	65.77	59.50	58.58	60.61	51.22
세출총계(손익계정)	209,535	193,071	221,332	221,516	238,853	216,861	191,710
전년대비 증가율(%)	-	-7.86	14.64	0.08	7.83	3.67	7.30
수수료 수입 비중	84.38	86.34	86.95	90.86	91.56	88.02	77.73
인건비	63,641	66,986	71,956	74,581	80,183	71,469	51,017
전년대비 증가율(%)	-	5.26	7.42	3.65	7.51	5.96	3.95
수수료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35.99	40.18	37.39	37.05	36.67	37.46	34.85
수수료 수입	176,812	166,700	192,446	201,272	218,683	187,834	148,660
전년대비 증가율(%)	-	-5.72	15.44	4.59	8.65	5.74	9.94

[그림 24]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운영사업에 따른 원가변화 및 수수료 조정 방향성 검토

1.2. 실무진 의견수렴

□ 본 과업 착수 이후, 조달수수료율 운영 관련 이슈사항 도출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하여 조달수수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대상 서면 인터뷰 실시(5.24 의견취합)

○ 수수료를 조정함에 있어,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업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수수료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함

[표 3-4] 조달수수료 조정 방향설정을 위한 조달청 실무진 인터뷰 의견 개요

번호	부서	직급	성명	담당	연락처 042-724
1	시설총괄과	6급	진정우 주무관	시설수수료 총괄, 공사계약	7646
2	시설사업기획과	사무관(승진예정자)	김 곤 사무관	맞춤형서비스	7417
3	설계예산검토과	사무관(승진예정자	유정숙 사무관	설계적정성 검토	7668
4	예산사업관리과	6급	윤경수 주무관	총사업비 물가변동 등	7671
5	해외물자과	6급	이승렬 주무관	규정개정, 제도개선	7330
6	기술서비스총괄과	6급	유승은 주무관	용역 적격심사	6117
7	서비스계약과	5급	장익환 사무관	일반용역계약	7494
8	건설용역과	6급	김명섭 주무관	건설용역계약	7579
9	구매총괄	6급	박지연 주무관	MAS 구매제도	7293
10		6급	최병권 주무관	총액 구매제도	7259

❍ 수수료 외 다른 업무 수행 여부

□ 조달청의 각 국이나 과별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수수료 업무를 별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로 수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5] 조달수수료 외 타 업무 수행 여부

구분	주요내용
구매사업국	☑ 의견없음
신기술서비스국	☑ (기술서비스총괄과) 의견없음 ☑ (서비스계약과) 계약업무 등 기타 업무 수행(99%) ☑ (건설용역과) 의견없음
공공물자국	☑ 수수료 외 업무 수행 중(95%)
시설사업국	☑ (시설총괄과) 의견없음 ☑ (시설사업기획과) 없음(0%) ☑ (설계예산검토과) 공사기간 검토,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20% 미만) ☑ (예산사업관리과) 의견없음

❍ 수수료 업무 관련 1인당 평균 업무처리 건수

□ 수수료 업무관련하여 1인당 평균업무처리 건수는 서비스계약과가 연간 120건으로 1인당 연 20건(6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물자국은 연간 1,303건으로 1인당 평균 108건을 처리하고 수수료 수입은 약 57.8억원 정도로 파악됨

○ 시설사업국의 설계예산검토과는 연간 1인당 19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조달수수료 업무 관련 1인당 평균 업무 처리 건수

구분	주요의견
구매사업국	☑ 의견없음
신기술서비스국	☑ (기술서비스총괄과) ☑ (서비스계약과) 수수료 관련 업무 : 연간 120건(1인당 年 20건/6인) / 서비스계약과 총액계약 건수 : 연간 1,221건(月 약 101건) ☑ (건설용역과) 의견없음
공공물자국	☑ 연간 1,303건(1인당 평균 108건) 처리 → 수수료 수입 57.9억원
시설사업국	☑ (시설총괄과) 의견없음 ☑ (시설사업기획과) 의견없음 ☑ (설계예산검토과) 연간 1인당 19건 ☑ (예산사업관리과) 의견없음

❍ 조달수수료 관련 이슈에 대한 실무진 의견

□ 조달수수료 관련하여 이슈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신기술서비스를 제외한 타 부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신기술서비스국의 서비스계약과에서는 전용 오픈몰을 구축하고 있으며, 운영 시 수수료 부과대상을 당초 수요기관에서 조달업체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3-7] 조달수수료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의견

구분	주요내용
신기술 서비스국	☑ **서비스계약과** - 서비스 전용 오픈몰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수요기관, 조달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음 -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 제도적으로 규정이 필요한 사항 검토 중

❍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진 의견

□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각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특성이나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 또는 현행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먼저, 수수료 운영체계에 대한 의견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기존 수요기관에서 조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는 향후 신기술서비스국에서 개통할 전용 오픈몰 운영 시, 수수료를 조달업체에게 부과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어,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요기관의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반해, 조달업체는 기업 자본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향후 조달청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산정체계나 기준, 요율적정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시설분야 경우는, 현재 수수료율 체계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다만 공사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이 상당히 증액(과다수수료 방지)된다는 점과 신설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는 국가 SOC 예산이 조달청 발주물량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설부문이 다른 분야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가 대비해서 수수료 수익이 낮아, 종전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보다는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산정체계나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개선

구분	주요내용
신기술 서비스국	☑ (서비스계약과) 현행 요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달업체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공물자국	☑ 내자구매 보다 다소 높으나 외자구매 특성*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 국내에 생산 또는 유통되지 않은 정밀기기, 고가 측정기, 헬기, 슈퍼 컴퓨터 등 구매
시설사업국	☑ (시설사업기획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설계예산검토과) 수수료 부과가 2018년 처음 시행되었으며,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13년 업무 도입, '18년 수수료 부과, '20년 부서 신설)

1.3. 조달분야 별 수수료 조정 방향 설정

□ 상기 분석한 지난 5년간 비용 대비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61% 수준이며, 손익계정 기준으로 비용 대비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로 나타남(그림 25 참조)

○ 세출 비용 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수료 수입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간 평균 약 37.46%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필요

□ 합리적인 조달수수료율 산정을 위하여 수수료율 ❶상향조정, ❷하향조정, ❸현행유지 세 가지 방안을 설정한 후 진행함

○ (상향조정) 현재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율 상향 조정 : 신규 수입창출 방안

○ (하향조정) 현재 비중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율 하향 조정 : 요율 간 체계 조정

○ (현행유지)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 : 현행 체계 유지

[그림 25] 조달수수료 조정방향 설정

2.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현행 수수료 적정성 검토

□ 본 과업에서는 원가와 비용분석을 통해 적정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조달서비스 별 업무특성이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검토 필요(그림 26 참조)

[그림 26]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절차 및 방법

○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의 변화 병행 검토하고 조달 서비스 별 업무량에 따른 원가 배부가 이루어진 후, 최근 5년 간 조달수수료의 변화추이 검토함

○ 이를 위해, ❶현재 각 분야별로 운영 중인 조달사업별 적정업무량을 고려한 원가 구성 비중 검토하고 ❷각 과에서 요청한 내용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하여, ❸내자 및 시설부문 적정수수료율 마련을 위한 균형점을 도출함

2.1. 원가산정 절차 및 방법

□ 조달수수료 부과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익-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수수료 조정 방향성을 설정함(그림 27 참조)

○ 이에, 조달수수료의 원가와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크게 조달서비스나 영역별로 수익변화, 원가변화, 원가비중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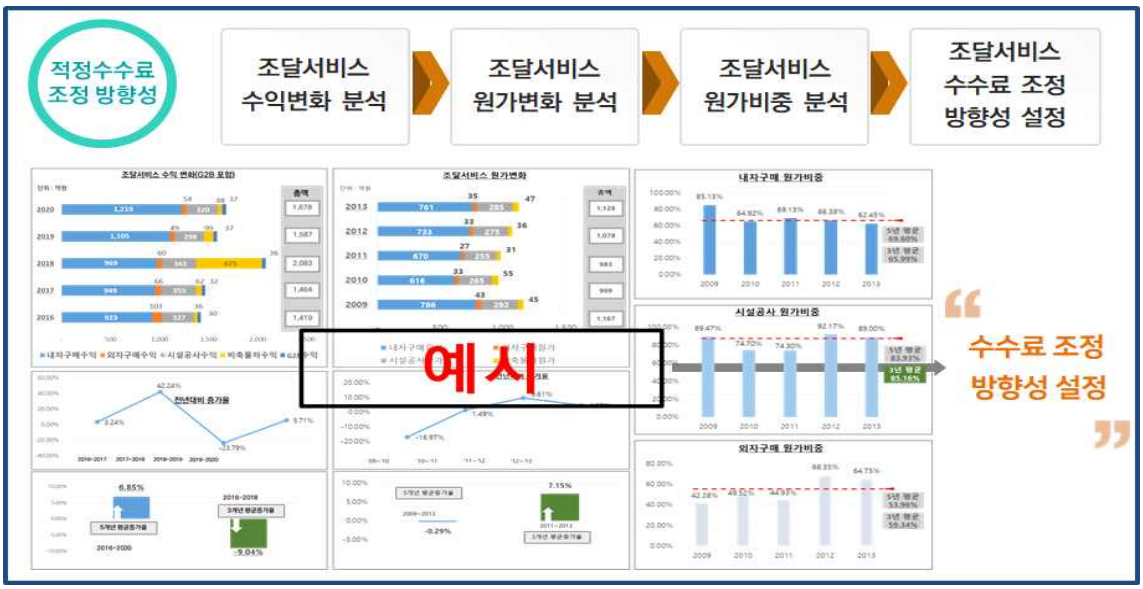

[그림 27]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절차 및 방법(예시)

□ 원가-비용분석은 수익변화분석, 원가변화분석, 원가비용분석 등 3단계를 다시 4개의 모듈로 구성하여 각 프로세스별 분석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함

○ 이를 위해, 조달청 각 과별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조직체계, 업무프로세스, 단위별 업무식별, 업무량 산정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령하여 최근 고시된 조달수수료 개정고시(안)을 토대로 조달수수료 차등부과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특히, 시설분야의 조달수수료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그림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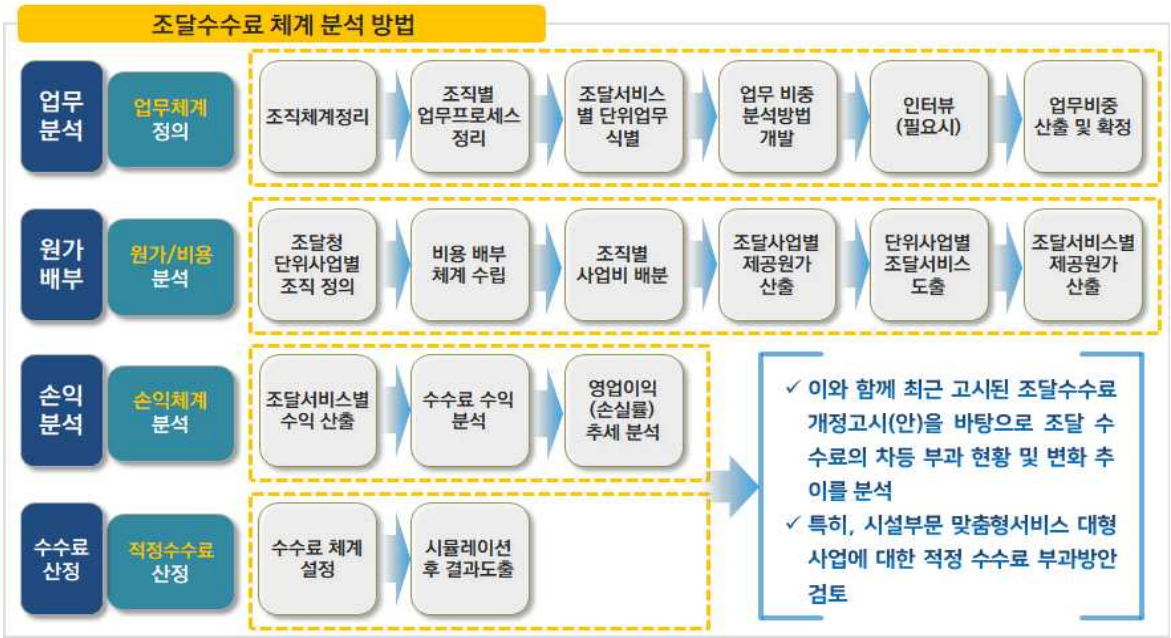

[그림 28]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모듈별)

2.2. 조달수수료 수익-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수수료 조정 방향 설정

□ 조달서비스의 총 수익은 `15년도 이후부터 내자구매사업의 증가로 인해 매년 연평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9 참조)

○ 특히, 내자구매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설공사의 경우 증감이 반복적으로 크게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G2B(나라장터) 수익은 2015년 이후 일정 규모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5~16년도 증가율이 (-)로 나타나는 것은 2016년 외자구매를 제외, 나머지 분야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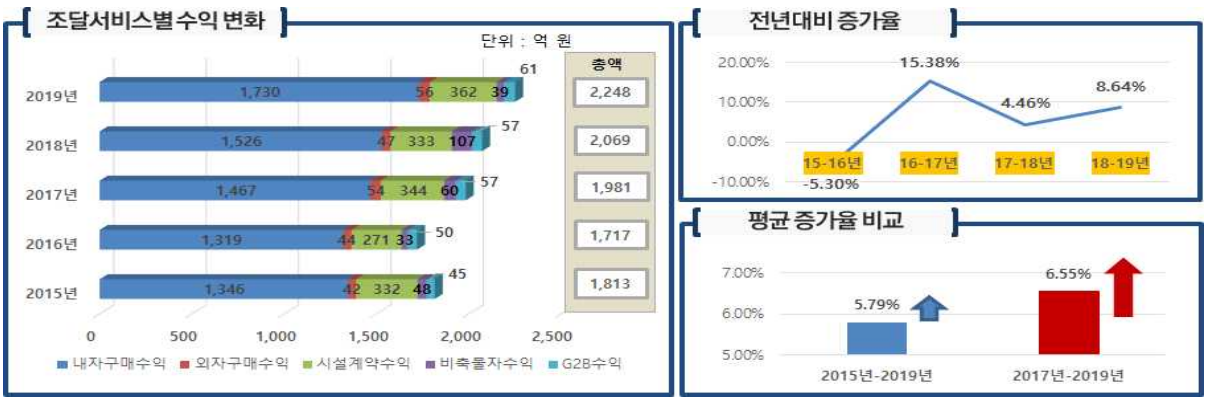

[그림 29]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수익변화 분석 결과

□ 이를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역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내자구매에 대한 수익 증감율이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그림 30 참조)

○ 그 뒤로는 비축물자가 7.6%이며, 나머지 시설공사와 외자구매 분야가 각각 2.8%와 2.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내자구매는 과거 5개년 평균보다 3개년 수익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는 평균 5개년 수치보다 3개년 수익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내자구매는 과거 5개년보다 3개년 시점에 수익이 좀 더 올랐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이 다소 낮아져서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종합해보면, 지난 3년간 조달 서비스별 수익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그 중, 내자구매가 평균 8.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조달서비스별수익변화비교

조달서비스별수익증감율

구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평균(5년)	평균(3년)
▪ 내자구매 수익	-1.97%	11.15%	4.06%	13.39%	6.66%	8.72%
▪ 외자구매 수익	2.79%	24.98%	-13.50%	18.07%	8.08%	2.28%
▪ 시설공사 수익	-18.38%	26.78%	-3.25%	8.89%	3.51%	2.82%
▪ 비축물자 수익	-30.96%	81.79%	79.08%	-63.80%	16.53%	7.64%
▪ G2B 수익	10.94%	13.19%	0.14%	8.25%	8.13%	4.20%

[그림 30]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수익변화 증감률 분석결과

□ 적정수수료 조정 방향성 검토에서 두 번째인 원가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15년도 이후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부문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 반면, 외자구매와 비축물자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또한, 평균 증가율을 과거 5개년과 3개년으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5개년 보다는 3개년이 6.5%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두 가지 조건에서의 비중차이가 5.1%와 5.4%로 약 0.3%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상기 언급한 조달사업 별 수익변화 검토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0.7%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조달서비스 별 원가변화는 5개년과 3개년 모두 분석한 결과, `17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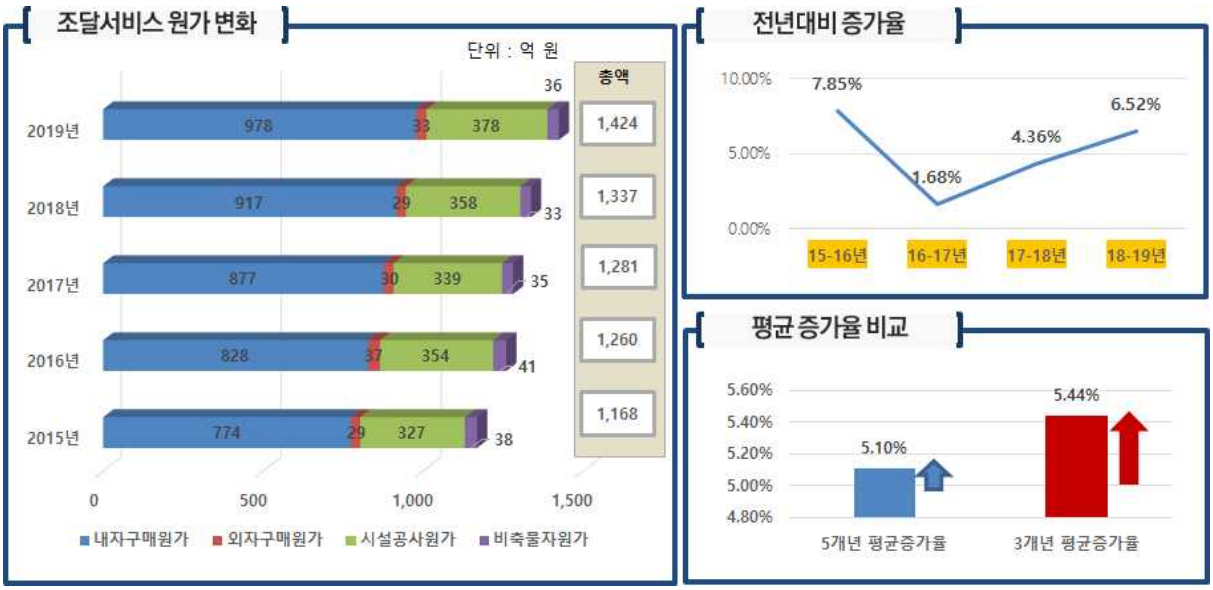

[그림 31]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 변화 분석 결과

□ 조달서비스별 원가 변화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내자구매와 시설공사가 지난 3년간 5.58%, 5.55%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그림 32 참조)

○ 조달서비스별 원가 변화율을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인건비나 경비에 대한 변화는 내자구매와 시설공사에 해당되고, 나머지 외자나 비축물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3년 간 실적에서는 내자구매나 시설공사의 원가증감율이 각각 5.6%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최근 5년 간 실적에서는 시설공사가 3.8%에서 5.6%로 증가한데 반하여, 내자구매의 경우는 6.0%에서 5.6%로 오히려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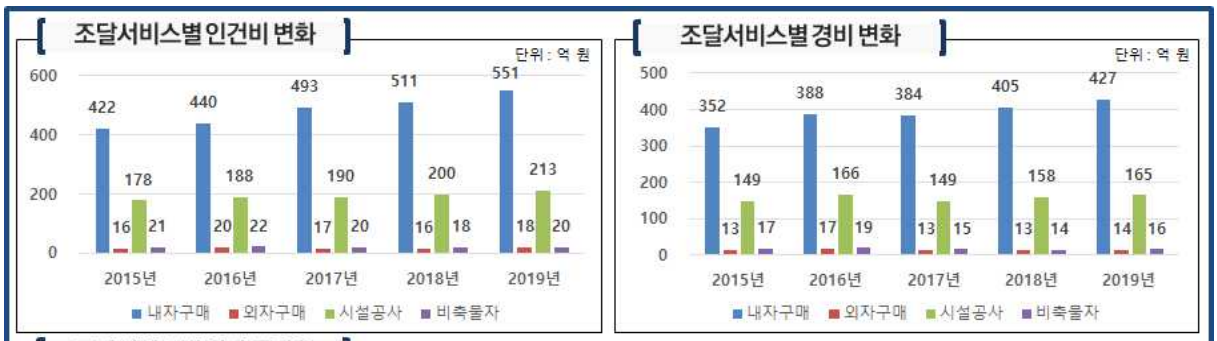

조달서비스별 원가 증가율

구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평균(5년)	평균(3년)
내자구매	6.91%	5.96%	4.52%	6.65%	6.01%	5.58%
노무비	4.34%	11.94%	3.81%	7.65%	6.93%	5.73%
경비	9.98%	-0.83%	5.43%	5.39%	5.00%	5.41%
외자구매	26.88%	-18.44%	-2.80%	11.26%	4.22%	4.23%
노무비	23.83%	-13.84%	-3.46%	12.30%	4.71%	4.42%
경비	30.52%	-23.66%	-1.95%	9.95%	3.72%	4.00%
시설공사	8.26%	-4.21%	5.62%	5.48%	3.79%	5.55%
노무비	5.65%	1.19%	4.90%	6.47%	4.55%	5.68%
경비	11.37%	-10.35%	6.54%	4.24%	2.95%	5.39%
비축물자	8.90%	-15.61%	-5.76%	9.91%	-0.64%	2.08%
노무비	6.29%	-10.85%	-6.40%	10.94%	-0.01%	2.27%
경비	12.03%	-21.02%	-4.93%	8.62%	-1.32%	1.84%

[그림 32]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인건비 및 경비) 증감율 분석 결과

□ 적정수수료 조정 방향성 검토에서의 마지막 항목인 원가비중 분석을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비축물자를 제외한 조달서비스의 총 수익대비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3년 간 평균 66.6%, 5년 간 평균 68%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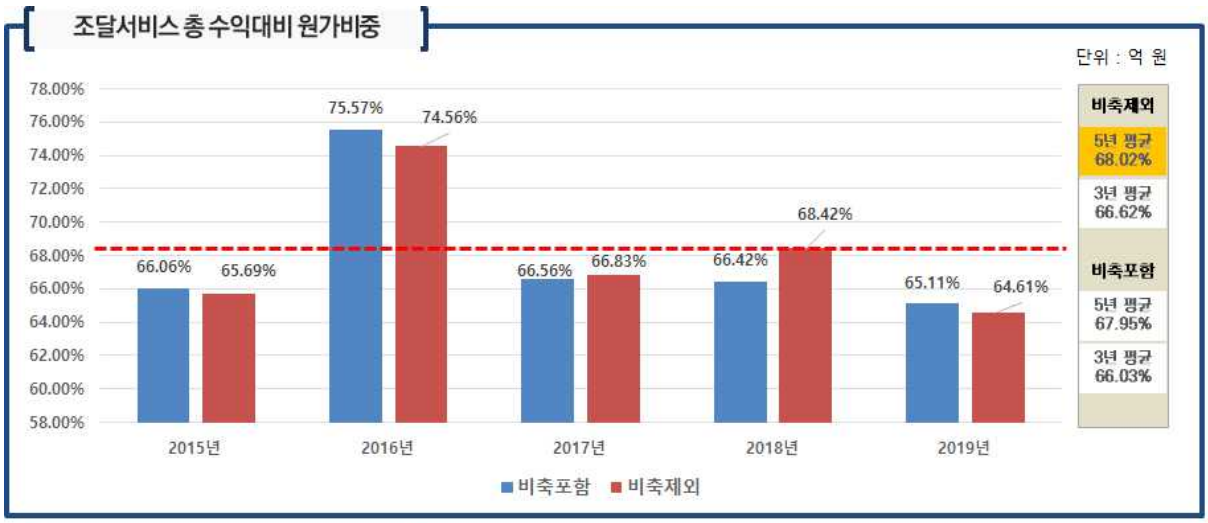

수익대비 원가비중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5년)	평균(3년)
비축포함	66.06%	75.57%	66.56%	66.42%	65.11%	67.95%	66.03%
비축제외	65.69%	74.56%	66.83%	68.42%	64.61%	68.02%	66.62%

[그림 33]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인건비 및 경비) 증감율 분석 결과

□ 또한, 비축을 포함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수익대비 원가의 비중을 약 70% 전·후 수준으로 가정하고 조달사업과 서비스 별 적정 수수료율을 검토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비축물자를 제외한 조달서비스의 총 수익 대비 원가의 비중은 5년 평균 약 68% 수준으로 나타남

□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은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자구매와 외자구매는 시설공사와는 달리 감소 추세가 좀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됨(그림 34 참조)

○ 내자구매의 원가비중은 5개년 평균 59.33%, 3개년 평균 58.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비중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3년간 103.43%로 나타남

○ 외자구매의 경우 5개년 평균 65.99%, 3개년 평균 58.7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자 및 외자 구매의 경우 원가의 비중이 평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시설공사의 경우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즉, 시설공사는 타 분야와 달리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약 2배나 되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4]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 변화율 검토

□ 원가비중 분석 중 인건비의 비중변화를 검토한 결과, 내자구매와 외자구매는 32~36%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09~13년 집계된 42%에서 최근 59% 수준으로 약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35 참조)

○ 내자구매의 인건비 비중의 경우 32~33%대로 09~13년에 집계된 34%보다 감소

하였으며, 외자구매는 5개년 평균 36.30%로 09~13년에 집계된 28%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시설공사는 내자, 외자와 달리 09~13년에 집계된 42%에 비해 현재 59%로 약 17%가 증가했는데, 시설공사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인건비 소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음

[그림 35]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인건비 비중 변화율 검토

□ 원가비중 분석 중 경비 비중변화를 검토한 결과, 내자구매와 외자구매는 26~29.7%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09~13년 집계된 41%에서 최근 48% 수준으로 약 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36 참조)

○ 내자구매의 경비 비중의 경우 26%대로 09~13년에 집계된 35%보다 감소하였고, 외자구매는 5개년 평균 29.70%로 09~13년에 집계된 2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시설공사는 `09~13년에 집계된 41%에서 현재 48%로 소폭 증가함

[그림 36] 지난 5개년 조달서비스 별 인건비 비중 변화율 검토

□ 원가비중을 서비스별, 인건비, 경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내자

구매 및 외자구매와는 다르게, 시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조달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 적정수수료 산정 시, 수익대비 원가비중을 약 74%(73.6%) 수준으로 기본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각 부문별 수수료율 조정 방향성을 검토함(그림 37 참조)

○ 상기 분석한 3개년 평균의 원가비중을 기준으로 볼 때, 내자구매, 외자구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 조정범위(비중)는 74% 수준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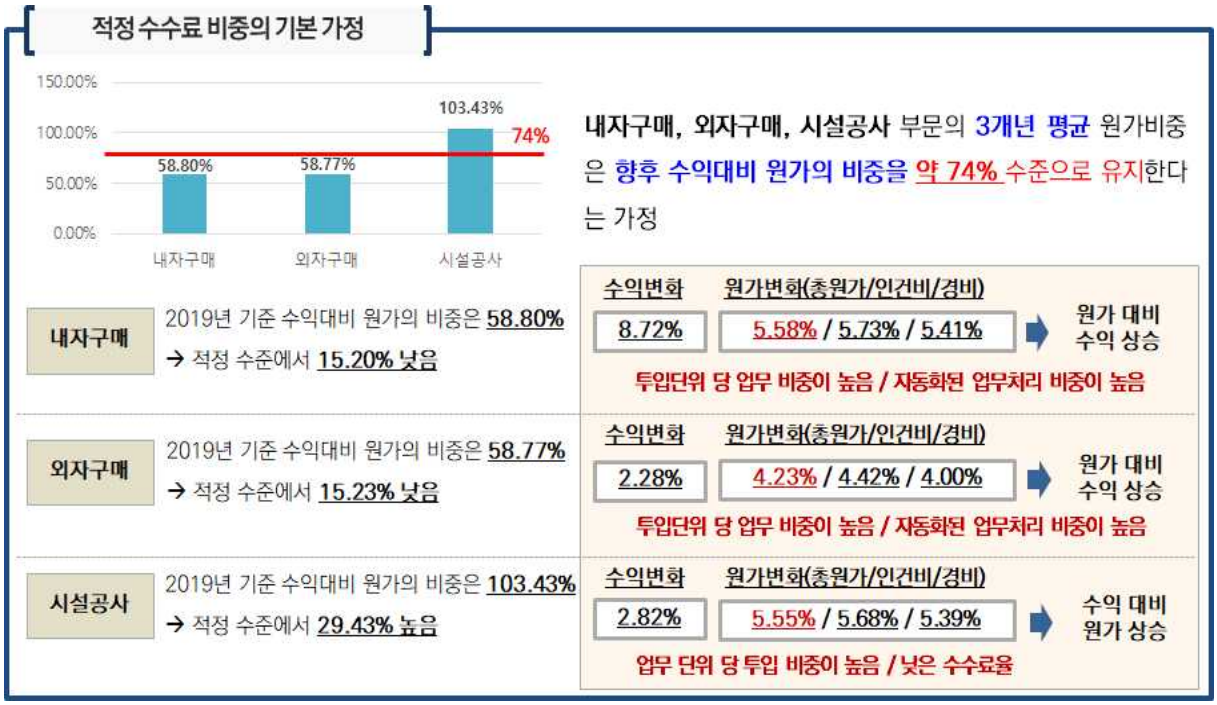

[그림 37]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 내자구매는 `19년을 기준으로 수익대비 원가비중은 약 15%정도 낮은 수준으로, 투입되는 원가대비 수익이 상승하는 현상, 외자구매의 경우도 내자구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공사는 수익대비 원가 비중이 103.43%로, 적정수준 대비 29.43%나 높아,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됨

□ 다시 말하면, 시설공사의 업무투입 단위당 비중이 높은데 비해서, 현해의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과거 5개년 평균수수료율 보다도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다만, 시설공사 부문에서 공사금액 별 수수료가 과다책정 된다는 점은 추후 실제 담당자들의 세부업무에 투입되는 단위당 업무량(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수수료 산정기준에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정립된 이후에, 적정수수료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내자구매와 외자구매의 경우 원가의 비중이 적정수준(74%) 보다 낮으므로, 현재 시점의 수익으로 고정하여 원가의 목표비중을 산출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수수료율의 상승관점에서 목표금액을 산정함(그림 38 참조)

수익 대비 적정수수료 74% 기준

내자구매 부문

내자 수익	1730.37	1730.37	1730.37	1730.37	1730.37	**1730.37**	1730.37	1730.37
내자 원가	977.78	1038.35	1098.91	1159.47	1220.04	**1280.47**	1280.60	1341.16
비중	56.51%	60.01%	63.51%	67.01%	70.51%	**74.00%**	74.01%	77.51%

※ 내자구매의 경우 지속적인 수익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업무투입 비중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원가비중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외자구매 부문

내자 수익	55.54	55.54	55.54	55.54	55.54	55.54	**55.54**	55.54
내자 원가	32.58	34.25	35.92	37.58	39.25	40.91	**41.10**	42.58
비중	58.66%	61.66%	64.66%	67.66%	70.66%	73.66%	**74.00%**	76.66%

※ 외자구매의 경우 내자구매와 마찬가지의 방향성을 가지나 사업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

시설공사 부문

내자 수익	362.35	384.49	409.52	438.02	470.80	**508.87**	**510.18**	553.65
내자 원가	377.53	377.53	377.53	377.53	377.53	**377.53**	**377.53**	377.53
비중	104.19%	98.19%	92.19%	86.19%	80.19%	**74.19%**	**74.00%**	68.19%

[그림 38]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향 설정

□ 시설공사는 원가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약 148억 원의 수수료 수익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수성 및 현행 업무부담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승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에 맞는 수수료율 조정이 요구됨

* 수수료율 조정으로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원가상승분의 반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 시뮬레이션 결과는 수익 또는 원가를 고정한 후 목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되, 향후 수익증가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적정 원가비중에 따른 목표 수수료 및 원가 증가율을 도출하고자 함

2.4. 조달청 비용배부 결과(1·2차)

□ 조달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달청 결산보고서에 제시된 단위 프로그

램 비용과 공통비용을 비용배부 기준을 토대로 2차례 배부하여 조달서비스 별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함

○ 원가산정을 위한 배부 기준은,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은 담당하는 해당국에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해당국과 공통으로 원가를 구분하고, 조달행정지원의 나머지 단위사업과 회계기금간 거래는 공통으로 분류함(그림 39 참조)

항 번호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배부기준(국)	배부기준(과)
1100항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1131세항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 조달정보화 (85.83%)	조달관리국 -> 공통배부(시설사업국 일부 제외)	전자조달기획과 -> 인원수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 전자조달 운영지원 (14.17%)		
1132세항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공공물자국 -> 공통비용 배부	국유재산기획과 -> 인원수
1200항	조달사업 운영		
1233세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조달수출지원팀
1235세항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 계약 (81.35%)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조달관리국, 공공물자국	구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 공정조달관리과, 원자재비축과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 품질검사 (18.65%)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1236세항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7100항	조달행정지원		
7101세항	인건비	운영지원과	인원수
7111세항	기본경비	운영지원과	인원수
7131세항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운영지원과	인원수
7132세항	조달행정 역량강화	운영지원과	인원수
7134세항	조달전문교육 운영	운영지원과	인원수
7135세항	법정부담금	운영지원과	인원수
7161세항	전산장비 운영	조달관리국 -> 공통비용 배부	전자조달관리과 -> 인원수
7162세항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운영지원과	인원수
8400항	회계기금간 거래		
8411세항	공무원 연금부담금	운영지원과	인원수
감가상각비		운영지원과	인원수
무형자산상각비		운영지원과	인원수

[그림 39] 조달수수료 합리적 조정을 위한 원가배부 기준 수립

□ 1차 원가배부는 조달청 자료를 활용하여 인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방청 인력인 경우는 서울지방청의 자재구매과, 장비구매과는 구매사업국으로, 정보기술용역과는 신기술서비스국으로, 시설계약과, 공사관리팀은 시설사업국으로 인원을 설정함

○ 그 외 지방청의 자재구매과, 물자구매과, 장비구매팀은 모두 구매사업국으로 인원으로 포함하였음

□ 또한, `19~`20년 조달청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계약)과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품질검사)로 구분하여 실제 집행액 기준 81.35%와 18.65%로 분배함(그림 40 참조)

○ 여기서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계약)은 구매사업국 75명, 신기술사업국 64명, 조달관리국 64명, 공공물자국 65명의 인원수 비율로 배분함

(1) 단위사업별 각 사업국 1차 배부

1차 배부 인원기준

조달행정지원, 회계기금간 거래

구분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공통	합계
인원	60	64	294	85	138	65	56	254	1,016
배분율	5.91%	6.30%	28.94%	8.37%	13.58%	6.40%	5.51%	25.00%	100.00%

조달물자 품질 검사 및 관리

구분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조달관리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1기 배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81.35%)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8.65%)
인원	75명	64명	64명	65명	-
배분율	22.77%	19.43%	19.43%	19.73%	18.65%

[그림 40] 1차 원가배부 실시(인원기준)

□ 1차 배부는 [표 3-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관, 5국, 1원, 공통비용으로 구분하였고, 단위사업인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인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은 조달관리국으로,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는 공공물자국으로 분류함

○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인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기획조정관으로,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는 조달관리국(19.43%), 구매사업국(22.77%), 신기술서비스국(19.43%), 공공물자국(19.73%), 조달품질원(18.65%)로 분류함

○ 「조달행정 지원」의 전산장비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과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모두 인원수 기준으로 배분함

[표 3-9] 1차 원가배부 결과

단위사업	조달청	배부기준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공통	합계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25,610,553,180		0	24,001,445,870	0	0	0	1,609,107,310	0	0	25,610,553,180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24,001,445,870	해당국	0	24,001,445,870	0	0	0	0	0	0	24,001,445,870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609,107,310	해당국	0		0	0	0	1,609,107,310	0	0	1,609,107,310
조달사업 운영	10,197,391,330		2,038,780,180	956,196,617	1,120,542,910	956,196,617	3,236,578,780	971,137,189	917,959,037	0	10,197,391,330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2,038,780,180	해당국	2,038,780,180	0	0	0	0	0	0	0	2,038,780,180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4,922,032,370	해당국	0	956,196,617	1,120,542,910	956,196,617	0	971,137,189	917,959,037	0	4,922,032,370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236,578,780	해당국	0	0	0	0	3,236,578,780	0	0	0	3,236,578,780
조달행정지원	92,535,562,890		5,414,387,734	6,627,277,516	26,530,499,895	7,670,382,623	12,453,091,787	5,865,586,711	5,053,428,551	22,920,908,073	92,535,562,890
인건비	69,546,602,120	인원수기준	4,107,082,802	4,380,888,323	20,124,705,732	5,818,367,303	9,446,290,445	4,449,339,703	3,833,277,282	17,386,650,530	69,546,602,120
기본경비	12,914,401,570	인원수기준	762,661,510	813,505,611	3,737,041,399	1,080,437,139	1,754,121,473	826,216,636	711,817,409	3,228,600,393	12,914,401,570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1,059,451,630	인원수기준	62,566,041	66,737,111	306,573,602	88,635,225	143,901,895	67,779,878	58,394,972	264,862,908	1,059,451,630
조달행정 역량강화	2,387,155,680	인원수기준	140,973,761	150,372,011	690,771,427	199,712,828	324,239,649	152,721,574	131,575,510	596,788,920	2,387,155,680
조달전문교육 운영	1,523,017,190	인원수기준	89,941,960	95,938,091	440,715,604	127,417,777	206,866,508	97,437,123	83,945,829	380,754,298	1,523,017,190
법정부담금	2,262,645,540	인원수기준	133,620,800	142,528,853	654,741,918	189,296,133	307,327,839	144,755,866	124,712,746	565,661,385	2,262,645,540
전산장비 운영	851,930,600	해당국	0	851,930,600	0	0	0	0	0	0	851,930,600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1,990,358,560	인원수기준	117,540,860	125,376,917	575,950,213	166,516,218	270,343,978	127,335,931	109,704,803	497,589,640	1,990,358,560
회계기금간 거래	8,462,022,540		499,725,741	533,040,790	2,448,656,129	707,944,799	1,149,369,203	541,369,552	466,410,691	2,115,505,635	8,462,022,540
공무원 연금부담금	8,462,022,540	인원수기준	499,725,741	533,040,790	2,448,656,129	707,944,799	1,149,369,203	541,369,552	466,410,691	2,115,505,635	8,462,022,540
감가상각비	7,355,707,734	인원수기준	434,392,189	463,351,668	2,128,521,726	615,388,934	999,102,035	470,591,538	405,432,710	1,838,926,934	7,355,707,734
무형자산상각비	3,160,201,418	인원수기준	186,626,068	199,067,806	914,467,733	264,386,930	429,239,956	202,178,240	174,184,330	790,050,355	3,160,201,418
인원수			60	64	294	85	138	65	56	254	1,016
합계(배부결과)			**8,573,911,911**	**32,780,380,267**	**33,142,688,393**	**10,214,299,903**	**18,267,381,762**	**9,659,970,541**	**7,017,415,319**	**27,665,390,996**	**147,321,439,092**

□ 조달청 비용배분 체계에 따라 2019년 조달청의 비용을 배부하였으며, 해당국의 직접배분과 공통으로 배분을 실시함(그림 41 참조)

○ 1차 배부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비용을 각 사업국으로 다시 배부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공통비용은 각 사업국의 인원수로 재배부함

○ 조달관리국과 기획조정관 비용을 공통비용으로 재배부하고, 공공물자국인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조사하는 사업을 공통비용으로 재배부하고, 나머지는 외자구매와 비축사업으로 재배분함

○ 마지막으로 신기술서비스국에 대해서는 내자와 기술용역으로 재배부함

[그림 41] 2차 원가배부 절차 및 기준

□ 공통비용 27,665,390,996원을 각각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인원수로, 조달관리국의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비용과 전산장비 운영비용 공통비용으로 재배부함(그림 42 참조)

○ 기획조정관 비용 10,752,289,155원을 각각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인원수로 재배부함

○ 조달관리국 비용 36,084,248,338원을 각각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인원수로 재배부함

○ 조달관리국의 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는 시설사업국에 배부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각 나누어 재배부함

(2) 공통 비용 → 각 사업국 2차 배부

2차 배부 결과

2차 배부 : ① 공통 비용 재배부

(단위 : 원)

단위사업	배부기준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공통	합계
배분 전 금액		8,573,911,911	32,780,380,267	33,142,688,393	10,214,299,903	18,267,381,762	9,659,970,541	7,017,415,319	27,665,390,996	147,321,439,092
인원수(명)		60	64	294	85	138	65	56		762
인원배분율(%)		7.87%	8.40%	38.58%	11.15%	18.11%	8.53%	7.35%		100.00%
공통부분배부	인원수	2,178,377,244	2,323,602,393	10,674,048,494	3,086,034,429	5,010,267,661	2,359,908,681	2,033,152,094		27,665,390,996
배부후 금액		10,752,289,155	35,103,982,660	43,816,736,888	13,300,334,331	23,277,649,422	12,019,879,222	9,050,567,414		147,321,439,092

2차 배부 : ② 기획조정관 재배부

(단위 : 원)

단위사업	배부기준	조달관리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기획조정관	합계
배분 전 금액		35,103,982,660	43,816,736,888	13,300,334,331	23,277,649,422	12,019,879,222	9,050,567,414	10,752,289,155	0
인원수(명)		64	294	85	138	65	56		702
인원배분율(%)		9.12%	41.88%	12.11%	19.66%	9.26%	7.98%		92.13%
공통부분배부	인원수	980,265,678	4,503,095,458	1,301,915,354	2,113,697,868	995,582,329	857,732,468		10,752,289,155
배부후 금액		36,084,248,338	48,319,832,346	14,602,249,685	25,391,347,290	13,015,461,551	9,908,299,882		147,321,439,092

2차 배부 : ③ 조달관리국재배부

(단위 : 원)

단위사업	배부기준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조달품질원	조달관리국 1	조달관리국 2	합계
배분 전 금액		48,319,832,346	14,602,249,685	25,391,347,290	13,015,461,551	9,908,299,882	11,840,143,986	24,244,104,352	123,077,334,740
인원수(명)		294	85	138	65	56			638
시설제외인원배분(%)		58.80%	17.00%		13.00%	11.20%			
인원배분율(%)		46.08%	13.32%	21.63%	10.19%	8.78%			
시설국제외배부		6,962,004,664	2,012,824,478		1,539,218,718	1,326,096,126			
공통부분배부	인원수	11,172,048,087	3,230,013,903	5,244,022,571	2,470,010,631	2,128,009,159			24,244,104,352
배부후 금액		66,453,885,096	19,845,088,065	30,635,369,862	17,024,690,901	13,362,405,168			147,321,439,092

[그림 42] 2차 원가배부 실시(각 사업국 기준)

□ 조달관리국까지 2차 배부가 끝난 후 공공물자국 17,024,690,901원을 각 과의 인원수 기준으로 외자, 비축으로 분리하여 배부하였으며, 신기술서비스국 내 건설용역과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이를 배분하여 시설공사사업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내자구매사업으로 배부함(그림 43 참조)

(2) 공통 비용 ➔ 각 사업국 2차 배부

2차 배부 결과

2차 배부 : ④ 공공물자국 ➔ 외자, 비축 분리

(단위 : 원)

단위사업	배부기준	공공물자국	외자구매(해외물자과)	비축물자(원자재비축과)
배분 전 금액		17,024,690,901		
인원수(명)	인원수	65	17	48
인원배분율(%)		100.00%	26.15%	73.85%
배부후 금액			**4,452,611,466**	**12,572,079,434**

2차 배부 : ⑤ 신기술서비스국 ➔ 내자, 기술용역 분리

단위사업	배부기준	신기술서비스국	건설용역과 -> 시설공사사업	그 외 -> 내자구매사업
배분 전 금액		19,624,091,738		
인원수(명)	인원수	85	12	73
인원배분율(%)		100.00%	14.12%	85.88%
배부후 금액			**2,770,460,010**	**16,853,631,728**

[그림 43] 2차 원가배부 결과

□ 구매사업국은 신기술서비스국(건설용역과 제외), 조달품질원 비용은 내자구매사업으로, 공공물자국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외자구매사업과 비축물자 사업으로, 시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건설용역과) 비용은 시설공사사업으로 배부함

○ 각 사업분야별 적정조달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 이전 최종 사업부문을 내자구매 약 968억, 외자구매 약 44억, 시설공사 약 334억, 비축사업 약 125억의 수준으로 배부함(그림 44 참조)

(2) 공통 비용 ➔ 각 사업국 2차 배부

2차 배부 결과

사업국	1차 배부	2차 배부 ①	2차 배부 ②	2차 배부 ③	2차 배부 ④	2차 배부 ⑤	최종 사업 부문	합계
구매사업국	33,142,688,393	43,816,736,888	48,319,832,346	66,453,885,096	-	-	내자구매사업	96,859,718,838
신기술서비스국	10,214,299,903	13,300,334,331	14,602,249,685	19,845,088,065	-	17,043,428,574		
조달품질원	7,017,415,319	9,050,567,414	9,908,299,882	13,362,405,168	-	-		
공공물자국	9,659,970,541	12,019,879,222	13,015,461,551	17,024,690,901	4,452,611,466	-	외자구매사업	4,452,611,466
시설사업국	18,267,381,762	23,277,649,422	25,391,347,290	30,635,369,862	-	-	시설공사 사업	33,437,029,354
신기술서비스국	-	-	-	-	-	2,801,659,492		
공공물자국	9,659,970,541	12,019,879,222	13,015,461,551	17,024,690,901	12,572,079,434	-	비축물자사업	12,572,079,434
합계								147,321,439,092

[그림 44] 2차 원가배부 결과(계속)

□ 조달서비스 별 수수료 수익과 자체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수익-원가 분석을 수행함(조달청 제공자료)

[표 3-10] 내자구매 별 사업 제공원가 및 업무투입량

구분				제공원가	내자구매 업무투입량			내자구매 조정 업무투입량		
내자구매사업			인원수	96,859,718,838	단가(%)	총액(%)	합계(%)	단가(원)	총액(원)	합계(원)
본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11							
		혁신조달과	10							
		자재장비과	16							
		쇼핑몰기획과	13							
		쇼핑몰단가계약과	13							
		쇼핑몰구매과	12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11							
		정보기술계약과	13							
		우수제품구매과	15	7,853,490,717	100%	0%	100%	7,853,490,717	0	7,853,490,717
		서비스계약과	13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13							
		납품검사과	14							
		품질점검팀(과)	14.5							
		조사분석팀(과)	14.5							
지방청	서울지방청	자재구매과	18							
		정보기술용역과	21							
		장비구매과	20							
	인천지방청	자재구매과	21	10,994,887,003	58%	42%	100%	6,377,034,462	4,617,852,541	10,994,887,003
		장비구매과	17	8,900,622,812	6%	94%	100%	534,037,369	8,366,585,443	8,900,622,812
	부산지방청	자재구매과	12	6,282,792,573	32%	68%	100%	2,010,493,623	4,272,298,950	6,282,792,573
		장비구매과	8	4,188,528,382	4%	96%	100%	167,541,135	4,020,987,247	4,188,528,382
	대구지방청	자재구매과	13	6,806,358,621	47%	54%	100%	3,164,956,759	3,641,401,862	6,806,358,621
		장비구매과	12	6,282,792,573	2%	98%	100%	125,655,851	6,157,136,722	6,282,792,573
	광주지방청	자재구매과	9	4,712,094,430	61%	39%	100%	2,861,279,000	1,850,815,430	4,712,094,430
		장비구매과	7	3,664,962,334	3%	97%	100%	103,350,348	3,561,611,987	3,664,962,334
	대전지방청	자재구매과	17	8,900,622,812	32%	68%	100%	2,848,199,300	6,052,423,512	8,900,622,812
		장비구매과	11	5,759,226,525	2%	98%	100%	115,184,531	5,644,041,995	5,759,226,525
	경남지방청	자재구매과	7	3,664,962,334	44.2%	55.8%	100.0%	1,619,913,352	2,045,048,983	3,664,962,334
		장비구매과	8	4,188,528,382	11.4%	88.6%	100.0%	477,492,236	3,711,036,147	4,188,528,382
	강원지방청	물자구매과	11							
	충북지방청	물자구매과	13	6,806,358,621	20%	80%	100%	1,361,271,724	5,445,086,897	6,806,358,621
	전북지방청	물자구매과	10	5,235,660,478	17%	83%	100%	911,828,510	4,323,831,968	5,235,660,478
	제주지방청	물자구매과	5	2,617,830,239	30.1%	69.9%	100%	787,966,902	1,829,863,337	2,617,830,239
합계			423	96,859,718,838				31,319,695,818	65,540,023,019	96,859,718,838
조정합계			185							

[표 3-11] 시설사업 별 제공원가

구분				제공원가	조정 제공원가
시설사업사업			인원수	33,437,029,354	36,314,915,576
본청	신기술서비스국	건설용역과	12	2,801,659,492	3,668,876,115
	소계		**12**	**2,801,659,492**	**3,668,876,115**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21	2,474,395,258	5,405,964,497
		토목환경과	12	1,413,940,147	2,281,156,771
		건축설비과	14	1,649,596,839	2,661,349,566
		시설사업기획과	17	2,003,081,876	4,292,093,870
		설계예산검토과	13	1,531,768,493	2,471,253,169
		예산사업관리과	14	1,649,596,839	2,661,349,566
		공사관리과	17	2,003,081,876	4,292,093,870
지방청	서울지방청	시설계약과	12	1,413,940,147	0
		공사관리팀	18	2,120,910,221	0
	부산지방청	경영관리팀	11	1,296,111,802	2,091,060,374
	인천지방청	경영관리팀	19	2,238,738,567	3,611,831,554
	기타지방청	경영관리과	92	10,840,207,797	0
소계			**260**	**30,635,369,862**	**29,768,153,238**
조정 소계			82	33,437,029,354	33,437,029,354

□ 조달서비스 별 수수료 수익과 자체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수익-원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료요청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적정 수수료 증액 규모를 산출함

[표 3-12] 시설사업 별 업무투입량(2019년도)

(단위 : %)

구분					2019년 업무투입량(%)												
					본청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인천지방청	기타지방청
해당과					건설용역과	시설총괄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	시설사업 기획과	설계예산 검토과	예산사업 관리과	공사관리과	시설계약과	공사관리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인원수					12	21	12	14	30	0	14	17	12	18	11	19	92
배분전 금액																	
시설공사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25.46%											1.80%	
			PQ		15.97%											1.80%	
			비PQ		3.02%										2.70%	8.90%	
		감리・CM 용역	제안		13.27%										1.00%		
			PQ		9.66%										1.00%		
			비PQ		3.02%										1.40%	2.20%	
		설계공모	심사포함		26.71%												
			심사제외		2.89%											1.70%	
	공사계약	국가, 기타기관	A Type			22.48%	21.48%	21.48%								1.00%	
			B Type			23.29%	22.29%	22.29%									
			C Type			11.05%	10.05%	10.05%							49.00%	43.00%	
			D Type			9.42%	8.42%	8.42%									
		지방자치단체	A Type			17.72%	18.92%	18.92%									
			B Type			6.04%	5.04%	5.04%							44.90%	39.60%	
			C Type			4.58%	3.58%	3.58%									
			D Type			5.42%	4.42%	4.42%									
	맞춤형 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 제안	일괄・기본					0.6%								
				실시・대안					1.1%								

			관급자재 검토대행						0.4%								
			설계공모						1.3%								
		기획· 설계 관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93.7%								
			일괄·기술제안						2.9%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1.20%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98.80%					
	기타 시설 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 (일반)	계획						14.5008%							
				기본(중간)						19.6524%							
				실시						35.5842%							
			설계적정성 검토 (VE 병행)	계획						7.0000%							
				기본(중간)						13.0340%							
				실시						5.6286%							
		공사원가검토	국가, 기타기관				1.89%	1.89%									
			지방자치단체				3.91%	3.91%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 기타기관								5.22%						
			지방자치단체								0.37%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92.95%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23%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4.60%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1.24%						
	합계 (총량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0

[표 3-13] 시설사업 별 업무투입량(2019년도)

(단위 : 원)

구분					2019년 업무투입량(원)													합계
					본청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인천지방청	기타지방청	
해당과					건설용역과	시설총괄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	시설사업 기획과	설계예산 검토과	예산사업 관리과	공사관리과	시설계약과	공사관리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과	
인원수					12	21	12	14	30	0	14	17	12	18	11	19	92	
배분전 금액					3,668,876,115	5,405,964,497	2,281,156,771	2,661,349,566	4,292,093,870	2,471,253,169	2,661,349,566	4,292,093,870	0	0	2,091,060,374	3,611,831,554	0	33,437,029,354
시설공사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934,097,788	0	0	0	0	0	0	0	0	0	0	65,012,968		999,110,756
			PQ		586,038,904	0	0	0	0	0	0	0	0	0	0	65,012,968		651,051,872
			비PQ		110,707,886	0	0	0	0	0	0	0	0	0	56,458,630	321,453,008		488,619,524
		감리・CM 용역	제안		486,863,089	0	0	0	0	0	0	0	0	0	20,910,604	0		507,773,693
			PQ		354,349,105	0	0	0	0	0	0	0	0	0	20,910,604	0		375,259,708
			비PQ		110,707,886	0	0	0	0	0	0	0	0	0	29,274,845	79,460,294		219,443,025
		설계공모	심사포함		980,016,400	0	0	0	0	0	0	0	0	0	0	0		980,016,400
			심사제외		106,095,057	0	0	0	0	0	0	0	0	0	0	61,401,136		167,496,194
	공사계약	국가, 기타기관	A Type		0	1,215,260,819	489,992,474	571,657,887	0	0	0	0	0	0	0	36,118,316		2,313,029,496
			B Type		0	1,259,049,131	508,469,844	593,214,818	0	0	0	0	0	0	0	0		2,360,733,794
			C Type		0	597,359,077	229,256,256	267,465,631	0	0	0	0	0	0	1,024,619,583	1,553,087,568		3,671,788,115
			D Type		0	509,241,856	192,073,400	224,085,633	0	0	0	0	0	0	0	0		925,400,889
		지방자치단체	A Type		0	957,936,909	431,594,861	503,527,338	0	0	0	0	0	0	0	0		1,893,059,108
			B Type		0	326,520,256	114,970,301	134,132,018	0	0	0	0	0	0	938,886,108	1,430,285,296		2,944,793,978
			C Type		0	247,593,174	81,665,412	95,276,314	0	0	0	0	0	0	0	0		424,534,901
			D Type		0	293,003,276	100,827,129	117,631,651	0	0	0	0	0	0	0	0		511,462,056
	맞춤형 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 제안	일괄・기본	0	0	0	0	25,752,563	0	0	0	0	0	0	0		25,752,563
				실시・대안	0	0	0	0	47,213,033	0	0	0	0	0	0	0		47,213,033
			관급자재 검토대행		0	0	0	0	17,168,375	0	0	0	0	0	0	0		17,168,375

			설계공모		0	0	0	0	55,797,220	0	0	0	0	0	0	0		55,797,220
		기획· 설계 관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0	0	0	0	4,021,691,956	0	0	0	0	0	0	0		4,021,691,956
			일괄·기술제안		0	0	0	0	124,470,722	0	0	0	0	0	0	0		124,470,722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0	0	0	0	0	0	0	51,505,126	0	0	0	0		51,505,126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0	0	0	0	0	0	0	4,240,588,743	0	0	0	0		4,240,588,743
	기타 시설 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 (일반)	계획	0	0	0	0	0	358,351,480	0	0	0	0	0	0		358,351,480
				기본(중간)	0	0	0	0	0	485,660,558	0	0	0	0	0	0		485,660,558
				실시	0	0	0	0	0	879,375,670	0	0	0	0	0	0		879,375,670
			설계적정성 검토 (VE 병행)	계획	0	0	0	0	0	172,987,722	0	0	0	0	0	0		172,987,722
				기본(중간)	0	0	0	0	0	322,103,138	0	0	0	0	0	0		322,103,138
				실시	0	0	0	0	0	139,096,956	0	0	0	0	0	0		139,096,956
		공사원가 검토	국가, 기타기관		0	0	43,113,863	50,299,507	0	0	0	0	0	0	0	0		93,413,370
			지방자치단체		0	0	89,193,230	104,058,768	0	0	0	0	0	0	0	0		193,251,998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 기타기관		0	0	0	0	0	0	138,916,598	0	0	0	0	0		138,916,598
			지방자치단체		0	0	0	0	0	0	9,748,533	0	0	0	0	0		9,748,533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	0	0	0	0	0	2,473,690,302	0	0	0	0	0		2,473,690,302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	0	0	0	0	0	6,092,833	0	0	0	0	0		6,092,833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	0	0	0	0	113,677,646	0	0	0	0	0	0		113,677,646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	0	0	0	0	0	32,901,300	0	0	0	0	0		32,901,300
	합계					**5,405,964,497**	**2,281,156,771**	**2,661,349,566**	**4,292,093,870**	**2,471,253,169**	**2,661,349,566**	**4,292,093,870**	**0**	**0**	**2,091,060,374**	**3,611,831,554**	**0**	**33,437,029,354**

□ 수익 자료는 조달청 내부 조달회계팀에게 최근 5개년 서비스 별 데이터를 수령하여 2019년 데이터 활용하였고, 원가자료는 `19년 조달청 결산보고서를 통해 원가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후 조정함

○ 이를 토대로, 주요가정을 두 가지로 설정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가정 (1) : 원가의 비중은 조달사업 전체 74%(90%까지 시뮬레이션)를 기준으로 수수료 증액 시나리오 구성

○ 주요가정 (2) :원가 배부는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준하며, 결산보고서와의 차이를 비율로 보정

○ 분석시사점 : 서비스 별 수익대비 원가비중을 분석하여 수수료 조정 필요 서비스 식별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 차이보정값 : 재무제표상 총수익(내자+외자+시설) 214,816,334,150원과 실제 수익발생금액 219,029,025,540원의 차이비율(101.02%)만큼을 배부원가(순원가)의 서비스 비율 별 차이 값을 더하여 보정함

- 순원가(전체비용)는 결산보고서 상 인건비 및 비용을 모두 조달청 조직(지방청 포함) 별로 배부하여 서비스 별 원가를 도출한 금액

- 수익분석 1은 수수료 수익과 순원가와의 차이를 나타냄

- 수익분석 2는 차이보정이 반영된 순원가와 수익의 차이를 의미함

- 원가비중은 차이보정이 반영된 순원가의 수익대비 비중을 의미함

[표 3-14] 조달사업별 수익 및 원가 구성(내자구매 및 외자구매)

구분		건수	수수료수익	순원가 (전체비용)	수익분석1	차이보정값	순원가 (보정반영)	수익분석2	원가비중
				순원가	수익-순원가 차이	(비율별 차이값)	순원가	수익-순원가 차이	
내자구매	총액계약	24,066	81,920,003,030	65,540,023,019	16,379,980,011	4,134,653,262	69,674,676,282	12,245,326,748	**85.05%**
	단가계약	1,220,206	100,840,689,980	31,319,695,818	69,520,994,162	5,089,615,141	36,409,310,960	64,431,379,020	**36.11%**
	총액+단가	1,244,272	182,760,693,010	96,859,718,838	85,900,974,172	9,224,268,404	106,083,987,242	76,676,705,768	**58.05%**
외자구매		1,319	5,577,561,220	4,452,611,466	1,124,949,754	281,509,776	4,734,121,242	843,439,978	**84.88%**

[표 3-15] 조달사업별 수익 및 원가 구성(시설공사)

구분					건수	수수료수익	순원가(전체비용)	수익분석1	차이보정값	순원가(보정반영)	수익분석2	원가비중
							순원가	수익-순원가 차이	(비율별차이값)	순원가	수익-순원가 차이	
시설공사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9	246,143,390	999,110,756	(752,967,366)	12,423,310	1,011,534,066	(765,390,676)	410.95%
			PQ		454	1,422,618,920	651,051,872	771,567,048	71,802,194	722,854,066	699,764,854	50.81%
			비PQ		351	1,361,935,430	488,619,524	873,315,906	68,739,387	557,358,911	804,576,519	40.92%
		감리・CM 용역	제안		42	474,640,950	507,773,693	(33,132,743)	23,956,002	531,729,695	(57,088,745)	112.03%
			PQ		311	1,420,706,950	375,259,708	1,045,447,242	71,705,693	446,965,402	973,741,548	31.46%
			비PQ		105	96,029,180	219,443,025	(123,413,845)	4,846,769	224,289,795	(128,260,615)	233.56%
		설계공모	심사포함		124	991,006,456	980,016,400	10,990,056	50,017,919	1,030,034,319	(39,027,863)	103.94%
			심사제외		13	107,284,824	167,496,194	(60,211,370)	5,414,862	172,911,056	(65,626,232)	161.17%
	공사계약	국가, 기타기관	A Type		498	1,185,823,100	2,313,029,496	(1,127,206,396)	59,850,673	2,372,880,169	(1,187,057,069)	200.10%
			B Type		170	2,949,457,790	2,360,733,794	588,723,996	148,864,561	2,509,598,355	439,859,435	85.09%
			C Type		2,950	7,619,533,910	3,671,788,115	3,947,745,795	384,571,894	4,056,360,010	3,563,173,900	53.24%
			D Type		33	246,293,970	925,400,889	(679,106,919)	12,430,910	937,831,799	(691,537,829)	380.78%
		지방자치단체	A Type		46	689,323,510	1,893,059,108	(1,203,735,598)	34,791,426	1,927,850,534	(1,238,527,024)	279.67%
			B Type		68	664,588,340	2,944,793,978	(2,280,205,638)	33,542,996	2,978,336,975	(2,313,748,635)	448.15%
			C Type		744	2,355,618,770	424,534,901	1,931,083,869	118,892,413	543,427,314	1,812,191,456	23.07%
			D Type		18	116,740,650	511,462,056	(394,721,406)	5,892,115	517,354,171	(400,613,521)	443.17%
	맞춤형 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일괄・기본	1	21,205,000	25,752,563	(4,547,563)	1,070,255	26,822,819	(5,617,819)	126.49%
				실시・대안	2	178,037,000	47,213,033	130,823,967	8,985,855	56,198,887	121,838,113	31.57%

			관급자재 검토대행		3	3,243,000	17,168,375	(13,925,375)	163,680	17,332,056	(14,089,056)	534.45%
			설계공모		5	80,818,000	55,797,220	25,020,780	4,079,033	59,876,253	20,941,747	74.09%
		기획· 설계 관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49	6,609,337,000	4,021,691,956	2,587,645,044	333,585,398	4,355,277,354	2,254,059,646	65.90%
			일괄·기술제안		2	1,280,813,000	124,470,722	1,156,342,278	64,644,988	189,115,711	1,091,697,289	14.77%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1	334,179,000	51,505,126	282,673,874	16,866,629	68,371,755	265,807,245	20.46%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5	881,171,000	4,240,588,743	(3,359,417,743)	44,474,321	4,285,063,065	(3,403,892,065)	486.29%
	기타 시설 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 (일반)	계획	12	64,363,420	358,351,480	(293,988,060)	3,248,540	361,600,020	(297,236,600)	561.81%
				기본(중간)	19	323,967,550	485,660,558	(161,693,008)	16,351,238	502,011,796	(178,044,246)	154.96%
				실시	57	839,883,360	879,375,670	(39,492,310)	42,390,458	921,766,128	(81,882,768)	109.75%
			설계적정성 검토 (VE 병행)	계획	4	24,614,570	172,987,722	(148,373,152)	1,242,343	174,230,064	(149,615,494)	707.83%
				기본(중간)	10	458,159,450	322,103,138	136,056,312	23,124,150	345,227,288	112,932,162	75.35%
				실시	3	62,928,480	139,096,956	(76,168,476)	3,176,116	142,273,072	(79,344,592)	226.09%
		공사원가검토	국가, 기타기관		42	400,019,090	93,413,370	306,605,720	20,189,699	113,603,069	286,416,021	28.40%
			지방자치단체		87	320,314,330	193,251,998	127,062,332	16,166,854	209,418,851	110,895,479	65.38%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 기타기관		117	2,602,881,150	138,916,598	2,463,964,552	131,372,200	270,288,798	2,332,592,352	10.38%
			지방자치단체		9	230,899,640	9,748,533	221,151,107	11,653,930	21,402,463	209,497,177	9.27%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509	663,684,530	2,473,690,302	(1,810,005,772)	33,497,379	2,507,187,681	(1,843,503,151)	377.77%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5	234,470,490	6,092,833	228,377,657	11,834,157	17,926,990	216,543,500	7.65%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7	85,848,400	113,677,646	(27,829,246)	4,332,927	118,010,572	(32,162,172)	137.46%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27	248,677,890	32,901,300	215,776,590	12,551,231	45,452,530	203,225,360	18.28%
	시설공사 소계				**6,912**	**37,897,261,490**	**33,437,029,354**	**4,460,232,136**	**1,912,744,508**	**35,349,773,861**	**2,547,487,629**	**93.28%**

2.5. 적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

□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이슈가 되는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함

○ 상기 진행한 조달수수료 관련 운영현황 분석, 실무진 의견수렴, 원가비중 검토(수수료 수익 포함) 등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재 각 사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미세조정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실시

○ 또한, 현재와 같이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용하는 방식 혹은 아니면 단일로 운영하거나 그 외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이 부분은 4장의 수수료 운영기관 사례조사 부분을 인용하면, 대부분 기관들은 정액제나 정률제 중 하나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조달청은 혼용하고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회계기관이나 정부 위탁사업 운영기관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진흥원, 심사원, 평가원과 같이 사업을 제안받아 평가·심사하는 기관이나 R&D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 경우, 두 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비용 대비 일정 비율을 수립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음

  * 조달청과 같이 수수료 방식을 혼용하는 기관 없음

○ 다음으로, 신설된 과나 추가적인 업무에 따른 수수료율을 반영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컨대, 시설공사의 경우, 업무진행 상 설계변경이나 분쟁, 최악의 경우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로 인해 담당자는 기존 업무량에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고 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업무과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업무량 조정에 따른 수수료율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을 수수료로 일정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기

존 수수료율보다 좀 더 상향조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종합하면 [그림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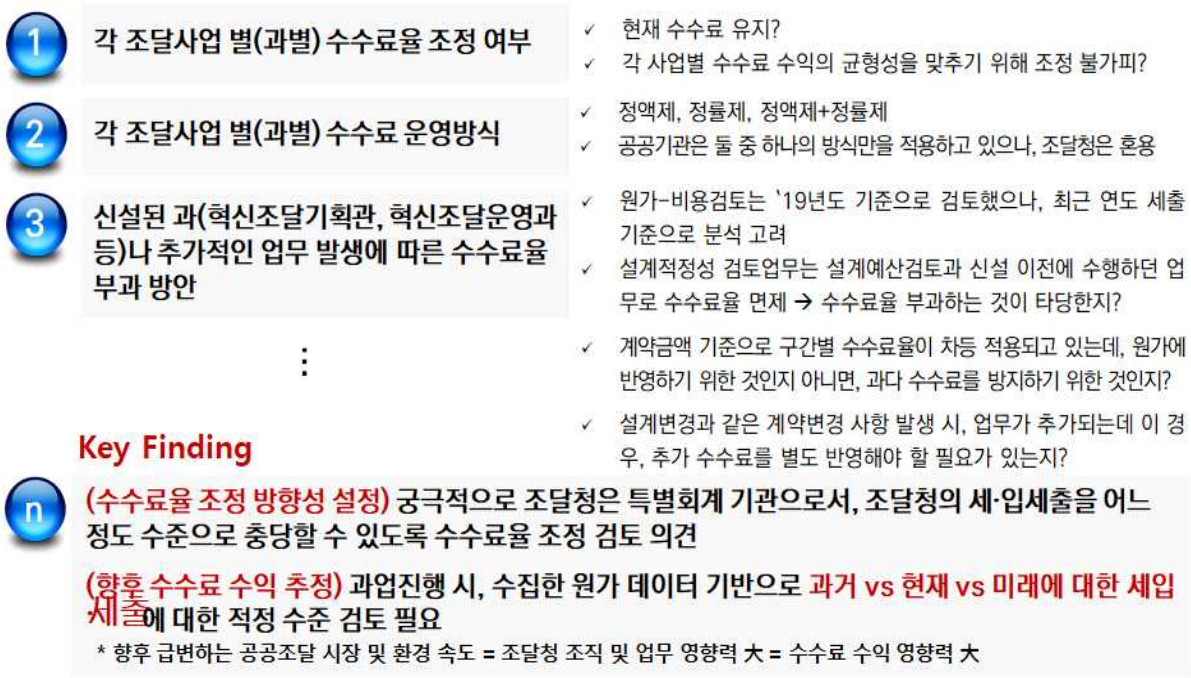

[그림 45] 적정수수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주요 아젠다

□ 실제 배부된 원가와 서비스별 수수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내자 및 외자의 경우 원가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설공사의 경우 서비스별 편차가 크며 원가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수익조정 금액 : 조달청이 제공한 실제 수익자료에서는 내자구매가 약 1,907억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설공사의 경우 약 372억으로 집계되었음 시설공사의 경우 결산보고고서상의 재무제표 금액과 약 362억으로 약 1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 수수료율 시뮬레이션은 크게 ❶1차적으로 외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며, 내자구매의 경우 ❷향후 지방자치를 포함한 자체조달에 대한 압박으로 조달청의 세입 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❸2014년 연구보고서에 비교시 원가 상승률보다 수수료율 증가가 늘어난 만큼 원가비중 규모도 중요하나 반대로 조달청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제안으로 구분함(그림 46 참조)

○ 또한, 시설공사 영역을 일괄적으로 13.5%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앞서 제시한 원가

비중 평균 74% 수준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향 비율 조정방안을 제안함

	0.0%	2.5%	5.0%	7.5%	10.0%	12.5%	13.50%	15.00%	17.00%	20.00%
수수료수익변화	37,897,261,490	38,844,693,027	39,792,124,565	40,739,556,102	41,686,987,639	42,634,419,176	43,013,391,791	43,581,850,714	44,339,795,943	45,476,713,788
증가액	-	947,431,537	1,894,863,075	2,842,294,612	3,789,726,149	4,737,157,686	5,116,130,301	5,684,589,224	6,442,534,453	7,579,452,298
+10억 반영	38,897,261,490	39,844,693,027	40,792,124,565	41,739,556,102	42,686,987,639	43,634,419,176	44,013,391,791	44,581,850,714	45,339,795,943	46,476,713,788
시설공사 비중변화	90.88%	88.72%	86.66%	84.69%	82.81%	81.01%	80.32%	79.29%	77.97%	76.06%
시설공사 원가총액	35,349,773,861									
내자구매 비중변화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외자구매 비중변화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조달사업 평균 비중	77.53%	76.81%	76.12%	75.46%	74.84%	74.24%	74.01%	73.66%	73.22%	72.59%

[그림 46] 조달수수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범위 설정

[표 3-16] 시설공사 부문 수수료 조정 결과

구분					건수	수수료수익	수수료 수익 (13.5% 상향)	순원가(전체비용) 순원가	수익분석3 수익-순원가 차이	기존 원가비중	조정 원가비중
시설 공사	기술 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9	246,143,390	279,372,748	1,011,534,066	-732,161,318	410.95%	362.07%
			PQ		454	1,422,618,920	1,614,672,474	722,854,066	891,818,408	50.81%	44.77%
			비PQ		351	1,361,935,430	1,545,796,713	557,358,911	988,437,802	40.92%	36.06%
		감리・CM 용역	제안		42	474,640,950	538,717,478	531,729,695	6,987,783	112.03%	98.70%
			PQ		311	1,420,706,950	1,612,502,388	446,965,402	1,165,536,986	31.46%	27.72%
			비PQ		105	96,029,180	108,993,119	224,289,795	-115,296,675	233.56%	205.78%
		설계공모	심사포함		124	991,006,456	1,124,792,328	1,030,034,319	94,758,009	103.94%	91.58%
			심사제외		13	107,284,824	121,768,275	172,911,056	-51,142,781	161.17%	142.00%
	공사 계약	국가, 기타기관	A Type		498	1,185,823,100	1,345,909,219	2,372,880,169	-1,026,970,951	200.10%	176.30%
			B Type		170	2,949,457,790	3,347,634,592	2,509,598,355	838,036,237	85.09%	74.97%
			C Type		2,950	7,619,533,910	8,648,170,988	4,056,360,010	4,591,810,978	53.24%	46.90%
			D Type		33	246,293,970	279,543,656	937,831,799	-658,288,143	380.78%	335.49%
		지방자치단체	A Type		46	689,323,510	782,382,184	1,927,850,534	-1,145,468,350	279.67%	246.41%
			B Type		68	664,588,340	754,307,766	2,978,336,975	-2,224,029,209	448.15%	394.84%
			C Type		744	2,355,618,770	2,673,627,304	543,427,314	2,130,199,990	23.07%	20.33%
			D Type		18	116,740,650	132,500,638	517,354,171	-384,853,533	443.17%	390.45%
	맞춤형 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일괄・기본	1	21,205,000	24,067,675	26,822,819	-2,755,144	126.49%	111.45%
				실시・대안	2	178,037,000	202,071,995	56,198,887	145,873,108	31.57%	27.81%
			관급자재 검토대행		3	3,243,000	3,680,805	17,332,056	-13,651,251	534.45%	470.88%
			설계공모		5	80,818,000	91,728,430	59,876,253	31,852,177	74.09%	65.28%
		기획· 설계 관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49	6,609,337,000	7,501,597,495	4,355,277,354	3,146,320,141	65.90%	58.06%
			일괄·기술제안		2	1,280,813,000	1,453,722,755	189,115,711	1,264,607,044	14.77%	13.01%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1	334,179,000	379,293,165	68,371,755	310,921,410	20.46%	18.0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5	881,171,000	1,000,129,085	4,285,063,065	-3,284,933,980	486.29%	428.45%
	기타 시설 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 (일반)	계획	12	64,363,420	73,052,482	361,600,020	-288,547,538	561.81%	494.99%
				기본(중간)	19	323,967,550	367,703,169	502,011,796	-134,308,627	154.96%	136.53%
				실시	57	839,883,360	953,267,614	921,766,128	31,501,485	109.75%	96.70%
			설계적정성 검토 (VE 병행)	계획	4	24,614,570	27,937,537	174,230,064	-146,292,528	707.83%	623.64%
				기본(중간)	10	458,159,450	520,010,976	345,227,288	174,783,687	75.35%	66.39%
				실시	3	62,928,480	71,423,825	142,273,072	-70,849,247	226.09%	199.20%
		공사원가검토	국가, 기타기관		42	400,019,090	454,021,667	113,603,069	340,418,598	28.40%	25.02%
			지방자치단체		87	320,314,330	363,556,765	209,418,851	154,137,913	65.38%	57.60%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 기타기관		117	2,602,881,150	2,954,270,105	270,288,798	2,683,981,307	10.38%	9.15%
		지방자치단체			9	230,899,640	262,071,091	21,402,463	240,668,629	9.27%	8.17%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509	663,684,530	753,281,942	2,507,187,681	-1,753,905,740	377.77%	332.8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5	234,470,490	266,124,006	17,926,990	248,197,016	7.65%	6.74%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7	85,848,400	97,437,934	118,010,572	-20,572,638	137.46%	121.11%
	소계				**27**	**248,677,890**	**282,249,405**	**45,452,530**	**236,796,875**	**18.28%**	**16.10%**
합계					**6,912**	**37,897,261,490**	**43,013,391,791**	**35,349,773,861**	**7,663,617,930**	**93.28%**	**82.18%**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제도 검토

□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자 및 시설부문 균형점 도출 후, 각 분야별 조달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방안 마련, 조달수수료 운영제도 실효성 검토, 수수료 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그림 47 참조)

[그림 47] 조달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단계적 로드맵 수행 절차 및 방법

□ 2013년도에 본 기관에서 기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 단가계약 건수가 총액계약 건수보다 많았으며,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수수료 요율은 단가계약이 0.54%로 전체 구간은 동일한 수준이며, 현재 0.43%, 0.37%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수료 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48 참조)

○ 총액계약의 경우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구간에서 15,060건(62.58%)으로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같은 구간 수수료 총액은 약 392.6억으로 분석됨

○ 또한, 단가계약의 경우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1,032,695건(84.63%)으로 계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수수료 총액은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서 약 340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상기 분석한 내용과 기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선

방안은 크게 ❶현행 조달수수료 유지, ❷정액제와 정률제를 적용하는 복합방식에서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 ❸단가계약 요율을 조정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구분	총액					단가				
	수수료율	건수	비율	수수료 총액	건당 수수료	수수료율	건수	비율	수수료 총액	건당 수수료
2천만원	210,000	192	0.80%	40,315,800	209,978	0.54	1,032,695	84.63%	22,215,638,950	21,512
5천만원	530,000	823	3.42%	432,788,680	525,867	0.54	113,810	9.33%	19,228,074,880	168,949
1억원	1.07	6,144	25.53%	4,915,239,770	800,006	0.54	44,906	3.68%	16,916,141,020	376,701
10억원	0.76	15,060	62.58%	39,260,325,090	2,606,927	0.54	27,906	2.29%	34,401,165,460	1,232,752
100억원	0.48	1,753	7.28%	24,187,106,200	13,797,551	0.47	883	0.07%	7,721,981,950	8,745,166
100억원 이상	0.38	94	0.39%	13,084,227,490	139,193,909	0.37	6	0.00%	357,687,720	59,614,620
합계		24,066	100.00%	81,920,003,030	3,403,973	-	**1,220,206**	100.00%	**100,840,689,980**	82,642

[그림 48] 수수료 총액 및 내자구매 정액제 또는 정률제 전환 시 건당 수수료 차이 검토

□ 최근 5년간 ('15~ '19년) 총액계약의 건수는 2016년 증가하였다가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가계약 건수는 5년간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액계약은 평균 25,138건, 단가계약은 평균 1,021,585건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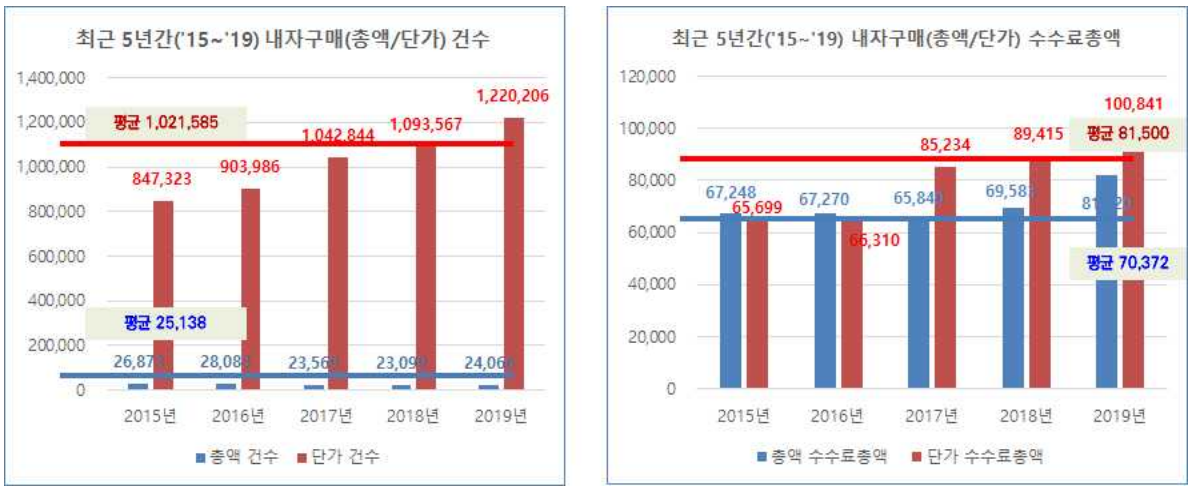

[그림 49] 최근 5년간 내자구매(총액/단가) 건수 및 수수료 총액 분석결과

□ 또한, 최근 5년간 총액계약의 평균 수수료 총액은 70,372백만 원, 단가계약의 평균 수수료 총액은 81,499백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점점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수수료 총액 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49 참조)

□ 내자구매의 경우 향후 계약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겠으나, 규모 상 단가계약이 총액계약보다 약 50배 정도 높을 것으로 분석됨

○ 총액계약에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향후 계약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50 참조)

(단위 : 건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세	추세 기울기	순위
2천만원	192	267	272	281	288	294	300	증가	61	3
5천만원	823	805	591	551	515	483	454	감소	(302)	6
1억원 미만	6,144	6,241	6,191	6,187	6,184	6,181	6,178	감소	(28)	5
10억원 미만	15,060	16,079	15,663	15,842	16,000	16,141	16,269	증가	1,340	1
100억원 미만	1,753	1,954	1,800	1,829	1,854	1,876	1,896	증가	212	2
100억원 이상	94	117	101	104	107	109	112	증가	23	4
소계	24,066	25,463	25,041	25,263	25,450	25,613	25,756	**증가**	1,217	
2천만원	1,032,695	1,081,570	1,075,540	1,102,632	1,126,529	1,147,906	1,167,244	증가	203,762	1
5천만원	113,810	122,184	121,105	124,717	127,904	130,755	133,333	증가	28,554	2
1억원 미만	44,906	50,018	48,561	50,030	51,325	52,484	53,532	증가	11,177	3
10억원 미만	27,906	32,501	30,907	31,917	32,808	33,604	34,325	증가	6,670	4
100억원 미만	883	1,012	991	1,017	1,040	1,060	1,078	증가	60	5
100억원 이상	6	13	9	9	9	10	10	증가	0	6
소계	1,220,206	1,287,298	1,341,166	1,376,429	1,407,534	1,435,358	1,460,527	**증가**	264,083	
합계	1,244,272	1,312,761	1,366,207	1,401,692	1,432,984	1,460,970	1,486,284	**증가**	-	-

[그림 50] 내자구매 수수료 계약구간 별 수요 추정(계약건수)

* 출처 : 데이터 : 조달청 제공(한국조달연구원 정리) / 기간 : 2015년~2019년

* 총액계약 [2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구간의 '15년, '16년 자료는 수요 추정시 제외

□ 내자구매 수수료의 계약구간별로 계약건수의 수요추정을 한 결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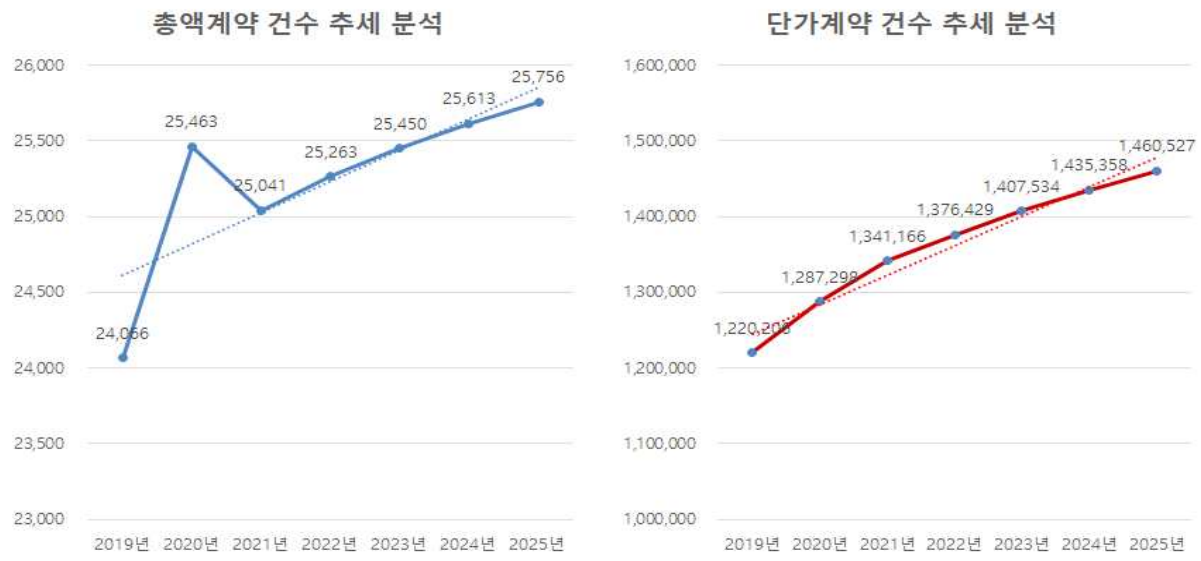

[그림 51] 향후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계약건수 수요 추정 결과

□ 내자구매의 경우 향후 계약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단가계약의 경우 총액계약에 비해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향후 5천만원 이하의 단가계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총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가계약에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구간은 향후 수수료 총액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52 참조)

(단위 :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세	추세 기울기	순위
2천만원	40,315,800	37,163,700	41,448,202	41,889,788	42,279,294	42,627,720	42,942,909	증가	3,306,983	5
5천만원	432,788,680	410,397,550	318,920,413	301,224,021	285,614,697	271,651,681	259,020,597	감소	-132,526,079	6
1억원 미만	4,915,239,770	4,986,045,500	4,924,872,539	4,951,447,230	4,974,887,769	4,995,856,045	5,014,824,158	증가	199,014,556	4
10억원 미만	39,260,325,090	42,406,281,130	40,534,434,195	41,190,793,883	41,769,744,159	42,287,632,829	42,756,120,116	증가	4,915,396,116	1
100억원 미만	24,187,106,200	27,929,710,970	25,122,219,343	25,658,551,013	26,131,629,073	26,554,811,819	26,937,627,177	증가	4,016,521,206	2
100억원 이상	13,084,227,490	14,428,828,300	12,542,923,289	13,010,481,241	13,422,896,583	13,791,814,677	14,125,541,688	증가	3,501,483,381	3
소계	**81,920,003,030**	**90,198,427,150**	**91,110,054,021**	**94,292,499,642**	**96,983,219,076**	**99,314,026,267**	**101,369,943,914**	**증가**	**17,455,125,312**	
2천만원	22,215,638,950	23,349,766,540	23,252,707,754	23,938,080,819	24,542,622,707	25,083,403,853	25,572,599,905	증가	5,132,673,685	2
5천만원	19,228,074,880	20,118,782,850	20,084,401,931	22,042,857,398	22,649,262,640	23,191,710,612	23,682,414,492	증가	4,854,840,862	3
1억원 미만	16,916,141,020	17,760,055,330	17,702,185,339	18,258,414,922	18,749,044,186	19,187,927,018	19,584,944,832	증가	4,165,534,206	4
10억원 미만	34,401,165,460	35,867,033,740	36,038,552,786	37,206,215,827	38,236,167,623	39,157,490,899	39,990,929,180	증가	8,744,483,361	1
100억원 미만	7,721,981,950	9,586,755,370	8,985,015,889	8,324,332,737	8,345,562,909	8,364,553,945	8,381,733,426	증가	1,443,491,169	5
100억원 이상	357,687,720	913,072,790	606,229,132	629,127,637	649,325,549	667,393,197	683,737,373	증가	171,484,053	6
소계	**108,771,021,220**	**107,595,466,620**	**106,669,092,833**	**109,942,282,074**	**112,829,439,600**	**115,412,090,013**	**117,748,381,494**	**증가**	**24,512,507,336**	
합계	**182,760,693,010**	**197,793,893,770**	**194,124,531,929**	**198,628,730,294**	**202,601,714,821**	**206,155,670,584**	**209,370,614,633**	**증가**		

[그림 52] 내자구매 수수료 계약구간 별 수요 추정(계약건수)

* 출처 : 데이터 : 조달청 제공(한국조달연구원 정리) / 기간 : 2015년~2019년

* 총액계약 [2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 구간의 '15년, '16년 자료는 수요 추정시 제외

□ 마찬가지로, 내자구매 수수료의 계약구간별로 수수료 총액의 수요추정을 분석한 결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단가계약의 경우 상승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그림 53 참조)

[그림 53] 향후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수수료 총액 수요 추정 결과

3.1. (방안1) 내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액제 전환

□ 조달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내자구매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방안은 크게 ❶현행 수수료율 체계 유지, ❷현재 정액제와 정률제의 복합방식을 정액제로 일괄 전환,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3.1.1. 조달수수료율 현행 유지

□ 현재 조달청에서는 내자구매 분야 계약건수가 수십만 건 늘어남(자연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변화(증원)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실무 담당자 1인 당 맡아서 진행하는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담당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자구매 부문의 원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정부 조직법 상 행안부 및 기재부와의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

□ 더욱이, 지방자체단체에서 `19년에 지불한 조달수수료가 약 1,000억원(`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조달분권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그림 54 참조)

○ 이에, 조달수수료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1,000억 원으로 가정하여 조달서비스별로 분배해볼 때, 내자구매 수수료 수익은 단가 사업 부문에서 1,000억 원 손실이 예상되며, 내자구매의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58.05%대에서 128.18%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현행 내자구매 수수료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담당자 업무과다(인력 증원 한계), 지자체 분권화,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및 신설 등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이 예상되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원, 건)

구분		건수	수수료수익 (A)	비중	지방자치 분배수익 (B)	A-B ©	보정 원가	원가비중
내자구매	총액계약	24,066	81,920,003,030	0.00%	0	81,920,003,030	69,674,676,282	85.05%
	단가계약	1,220,206	100,840,689,980	100.00%	100,000,000,000	840,689,980	36,409,310,960	4330.88%
	소계	1,244,272	182,760,693,010	0.00%	0	82,760,693,010	106,083,987,242	128.18%
외자구매	외자계약	1,319	5,577,561,220	0.00%	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기술용역	1,409	6,120,366,100	0.00%	0	6,120,366,100	4,697,677,310	76.75%
	공사계약	4,529	15,827,380,040	0.00%	0	15,827,380,040	15,843,639,326	100.10%
	맞춤형서비스	68	9,388,803,000	0.00%	0	9,388,803,000	9,058,057,900	96.48%
	기타시설업무	779	6,560,712,350	0.00%	0	6,560,712,350	5,750,399,325	87.65%
	소계	6,785	37,897,261,490	0.00%	0	37,897,261,490	35,349,773,861	93.28%
합계		1,252,376	226,235,515,720	100.00%	0	226,235,515,720	181,517,656,206	80.23%

[그림 54] 지자체분권화 등 지출비용 발생 시, 원가비중 변동율 검토 결과

* 출처 : 조달청 제공(한국조달연구원 정리) / 기간 : 2019년

3.1.2. 현행 정액제+정률제 방식을 정액제로 일괄 전환

□ 지난 5년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건당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5]부터 [그림 57]까지로 나타낼 수 있음

○ 분석방법은 첫째,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현행 수수료율 210,000원과 지난 5년간 건당 평균 203,452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현행 수수료율 530,000원과 지난 5년간 건당 평균 497,716원의 차이 비율만큼 모든 구간에 평균 보정하여 정액금액 제시 건당 수수료×4.85%(보정) 후 단위를 절삭함

○ 둘째, 수수료를 별도 보정하지 않고 5년간 건당 평균 수수료 값에 단위를 절삭함

□ 상기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토대로, 지난 5년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건당 수수료를 검토함

○ 그 결과, 기존 원가비중이 58.05%에서 59.25%로 1.49%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의 경우에는 동일한 원가비중에서 62.17%로 4.1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정액제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첫 번째 방안보다는 두 번째 원가비중인 62.17%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원)

총액	수수료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19년 평균(A)
2천만원	210,000	198,121	194,507	202,144	212,510	209,978	139,190	**203,452**
5천만원	530,000	497,009	486,120	491,770	487,815	525,867	509,811	**497,716**
1억원 미만	1.07	744,230	732,077	751,337	766,326	800,006	798,918	**758,795**
10억원 미만	0.76	2,452,939	2,403,499	2,428,403	2,463,052	2,606,927	2,637,371	**2,470,964**
100억원 미만	0.48	12,873,947	12,912,794	13,053,334	13,109,216	13,797,551	14,293,608	**13,149,368**
100억원 이상	0.38	121,361,682	92,721,209	94,458,908	114,697,776	139,193,909	123,323,319	**112,486,697**
단가	**수수료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19년 평균(A)**
2천만원	0.54	**20,065**	**19,598**	**21,089**	**20,134**	**21,512**	**21,589**	**20,480**
5천만원	0.54	**160,462**	**153,969**	**161,611**	**152,861**	**168,949**	**164,660**	**159,570**
1억원 미만	0.54	**359,883**	**345,509**	**361,117**	**339,218**	**376,701**	**355,073**	**356,486**
10억원 미만	0.54	**1,177,932**	**1,126,613**	**1,177,926**	**1,136,055**	**1,232,752**	**1,103,567**	**1,170,256**
100억원 미만	0.47	**10,328,092**	**9,130,256**	**9,248,820**	**9,661,326**	**8,745,166**	**9,473,078**	**9,422,732**
100억원 이상	0.37	**60,271,685**	**49,911,529**	**64,935,263**	**76,731,506**	**59,614,620**	**70,236,368**	**62,292,920**

[그림 55]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

* 출처 : 조달청 제공(한국조달연구원 정리) / 기간 : 2015년 ~ 2019년

2019년	수수료율	조달수수료 총액	2019년 건당 수수료	조정원가	15-19년 평균(A)	조정 1단계 (B)(A*4.55%)	조정 2단계	건수	조정수수료 총액 1	(기존 - 변경) 수수료 총액	원가비중(전)	원가비중(후)
2천만원	210,000	40,315,800	209,978		203,452	213,324	210,000	192	40,320,000	-4,200		
5천만원	530,000	432,788,680	525,867		497,716	521,868	520,000	823	427,960,000	4,828,680		
1억원 미만	1.07	4,915,239,770	800,006		758,795	795,615	790,000	6,144	4,853,760,000	61,479,770		
10억원 미만	0.76	39,260,325,090	2,606,927		2,470,964	2,590,895	2,590,000	15,060	39,005,400,000	254,925,090		
100억원 미만	0.48	24,187,106,200	13,797,551		13,149,368	13,787,428	13,780,000	1,753	24,156,340,000	30,766,200		
100억원 이상	0.38	13,084,227,490	139,193,909		112,486,697	117,945,001	117,940,000	94	11,086,360,000	1,997,867,490		
소계	-	81,920,003,030	3,403,973	69,674,676,282	129,566,993	135,854,102	135,830,000	24,066	79,570,140,000	2,349,863,030	85.05%	87.56%
2천만원	0.54	22,215,638,950	21,512		20,480	21,474	20,000	1,032,695	20,653,900,000	1,561,738,950		
5천만원	0.54	19,228,074,880	168,949		159,570	167,313	160,000	113,810	18,209,600,000	1,018,474,880		
1억원 미만	0.54	16,916,141,020	376,701		356,486	373,784	370,000	44,906	16,615,220,000	300,921,020		
10억원 미만	0.54	34,401,165,460	1,232,752		1,170,256	1,227,041	1,220,000	27,906	34,045,320,000	355,845,460		
100억원 미만	0.47	7,721,981,950	8,745,166		9,422,732	9,879,961	9,870,000	883	8,715,210,000	-993,228,050		
100억원 이상	0.37	357,687,720	59,614,620		62,292,920	65,315,622	65,310,000	6	391,860,000	-34,172,280		
소계	-	100,840,689,980	82,642	36,409,310,960	73,422,444	76,985,194	76,950,000	1,220,206	98,631,110,000	2,209,579,980	36.11%	36.91%
합계		182,760,693,010	146,882	106,083,987,242	202,989,436	212,839,296	212,780,000	1,244,272	178,201,250,000	4,559,443,010	58.05%	59.53%

[그림 56]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1안-평균 수수료에 보정값 적용)

2019년	수수료율	조달수수료 총액	2019년 건당 수수료	조정원가	15-19년 평균(A)	조정 1단계 (B)(A*4.55%)	조정 2단계	건수	조정수수료 총액 1	(기존 - 변경) 수수료 총액	원가비중(전)	원가비중(후)
2천만원	210,000	40,315,800	209,978		203,452	X	200,000	192	38,400,000	1,915,800		
5천만원	530,000	432,788,680	525,867		497,716	X	490,000	823	403,270,000	29,518,680		
1억원 미만	1.07	4,915,239,770	800,006		758,795	X	750,000	6,144	4,608,000,000	307,239,770		
10억원 미만	0.76	39,260,325,090	2,606,927		2,470,964	X	2,470,000	15,060	37,198,200,000	2,062,125,090		
100억원 미만	0.48	24,187,106,200	13,797,551		13,149,368	X	13,140,000	1,753	23,034,420,000	1,152,686,200		
100억원 이상	0.38	13,084,227,490	139,193,909		112,486,697	X	112,480,000	94	10,573,120,000	2,511,107,490		
소계	-	81,920,003,030	3,403,973	69,674,676,282	129,566,993	X	129,530,000	24,066	75,855,410,000	6,064,593,030	85.05%	91.85%
2천만원	0.54	22,215,638,950	21,512		20,480	X	20,000	1,032,695	20,653,900,000	1,561,738,950		
5천만원	0.54	19,228,074,880	168,949		159,570	X	150,000	113,810	17,071,500,000	2,156,574,880		
1억원 미만	0.54	16,916,141,020	376,701		356,486	X	350,000	44,906	15,717,100,000	1,199,041,020		
10억원 미만	0.54	34,401,165,460	1,232,752		1,170,256	X	1,170,000	27,906	32,650,020,000	1,751,145,460		
100억원 미만	0.47	7,721,981,950	8,745,166		9,422,732	X	9,420,000	883	8,317,860,000	-595,878,050		
100억원 이상	0.37	357,687,720	59,614,620		62,292,920	X	62,290,000	6	373,740,000	-16,052,280		
소계	-	100,840,689,980	82,642	36,409,310,960	73,422,444	X	73,400,000	1,220,206	94,784,120,000	6,056,569,980	36.11%	38.41%
합계		182,760,693,010	146,882	106,083,987,242		X		1,244,272	170,639,530,000	12,121,163,010	58.05%	62.17%

[그림 57]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2안-평균수수료에 단위절삭)

3.2. (방안2)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률제로 전환

□ 2019년 기준 총액계약의 원가비중은 85.05%이며, 단가계역의 원가비중은 36.11%로 분석됨. 단가계약 요율 체계만 변경하는 방안으로,

○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개 구간의 0.54 요율을 일괄 변경함

- 상기 언급한 방안에서 수수료 차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0.51'과 '0.47'이 적정한 조달수수료 수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음(그림 58, 그림 59 참조)

○ ❶조달수수료율을 0.51로 조정했을 경우, 기존의 원가비중 58.05%에서 59.73%로 1.68% 상승하는 효과 발생

○ ❷조달수수료율을 0.47로 조정했을 경우, 기존의 원가비중 58.05%에서 62.13%로 4.09% 상승하는 효과 발생

□ 상술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달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부과한다면 두 번째 요율인 0.47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구간	수수료율	'19년 조정 수수료총액	2019년 조정원가	기존원가 비중	조정 원가비중
-2천만원까지	0.51	20,981,436,786			
-5천만원까지	0.51	18,159,848,498			
-1억원까지	0.51	15,976,355,408			
-10억원까지	0.51	32,489,989,601			
-100억원까지	0.47	7,721,981,950			
100억원 초과	0.37	357,687,720			
단가 합계	단가 합계	95,687,299,963	36,409,310,960	36.11%	38.05%
총액 합계	총액 합계	81,920,003,030	69,674,676,282	85.05%	85.05%
단가+총액	단가+총액	177,607,302,993	106,083,987,242	58.05%	59.73%

[그림 58]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률제로 적용 시(1안-0.51 적용시)

구간	수수료율	'19년 조정 수수료총액	2019년 조정원가	기존원가 비중	조정 원가비중
-2천만원까지	0.47	19,335,833,901			
-5천만원까지	0.47	16,735,546,655			
-1억원까지	0.47	14,723,307,925			
-10억원까지	0.47	29,941,755,123			
-100억원까지	0.47	7,721,981,950			
100억원 초과	0.37	357,687,720			
단가 합계	단가 합계	88,816,113,273	36,409,310,960	36.11%	40.99%
총액 합계	총액 합계	81,920,003,030	69,674,676,282	85.05%	85.05%
단가+총액	단가+총액	170,736,116,303	106,083,987,242	58.05%	62.13%

[그림 59] 조달수수료율 운영체계를 정액제로 일괄 전환(2안-0.47 적용 시)

□ 한편, 외자구매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의 비중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87.88% 수준으로,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현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3. (방안3)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시설공사 수수료율 상향 조정

□ 시설공사의 적정수수료 시뮬레이션 결과 2019년 기준 수수료 수익에서 13.5%가 증가하여야 전체 조달사업의 수익대비 원가 비중이 적정 비율인 74%로 감소할 수 있음(그림 60부터 그림 64까지 참조)

○ 이에, 시설공사 분야의 수수료율을 13.5% 일괄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원가비중이 90.88%에서 80.3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은 13.5% 수준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0.0%	2.5%	5.0%	7.5%	10.0%	12.5%	13.5%	15.0%	17.0%
수수료수익변화	37,897,261,490	38,844,693,027	39,792,124,565	40,739,556,102	41,686,987,639	42,634,419,176	43,013,391,791	43,581,850,714	44,339,795,943
증가액	-	947,431,537	1,894,863,075	2,842,294,612	3,789,726,149	4,737,157,686	5,116,130,301	5,684,589,224	6,442,534,453
+10억 반영	38,897,261,490	39,844,693,027	40,792,124,565	41,739,556,102	42,686,987,639	43,634,419,176	44,013,391,791	44,581,850,714	45,339,795,943
시설공사 비중변화	90.88%	88.72%	86.66%	84.69%	82.81%	81.01%	80.32%	79.29%	77.97%
시설공사 원가총액	35,349,773,861								
내자구매 비중변화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57.43%
외자구매 비중변화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84.27%
조달사업 평균 비중	77.53%	76.81%	76.12%	75.46%	74.84%	74.24%	74.01%	73.66%	73.22%

[그림 60] 시설공사의 적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간별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개선 요율(13.5%)	건수	현행 수수료 (A)	개선 수수료 (B)	B-A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300	1.534	0	0	0	0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100	1.298	1	7,768,000	8,816,680	1,048,680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900	1.062	6	112,894,390	128,135,133	15,240,743
			30억원초과	0.700	0.826	2	125,481,000	142,420,935	16,939,935
		PQ	1억원까지	1.000	1.180	37	24,379,380	27,670,596	3,291,216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800	0.944	399	1,055,466,470	1,197,954,443	142,487,973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600	0.708	17	174,573,070	198,140,434	23,567,364
			30억원초과	0.400	0.472	1	168,200,000	190,907,000	22,707,000
		비PQ	1억원까지	0.800	0.944	169	80,557,540	91,432,808	10,875,26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708	156	863,629,600	980,219,596	116,589,99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72	19	228,326,740	259,150,850	30,824,110
			30억원초과	0.200	0.236	7	189,421,550	214,993,459	25,571,909
	감리 · CM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200	1.416	3	4,697,200	5,331,322	634,122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00	1.180	20	48,726,640	55,304,736	6,578,09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800	0.944	8	140,333,730	159,278,784	18,945,054
			30억원초과	0.600	0.708	5	280,883,380	318,802,636	37,919,256
		PQ	1억원까지	0.900	1.062	29	10,404,580	11,809,198	1,404,61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00	0.826	233	861,562,840	977,873,823	116,310,983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500	0.590	47	471,502,800	535,155,678	63,652,878
			30억원초과	0.300	0.354	2	77,236,730	87,663,689	10,426,959
		비PQ	1억원까지	0.800	0.944	56	23,297,680	26,442,867	3,145,187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708	49	72,731,500	82,550,253	9,818,752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72	0	0	0	0
			30억원초과	0.200	0.236	0	0	0	0
	설계공모	심사포함	1억원까지	1.900	2.242	1	1,970,731	2,236,780	266,049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600	1.888	106	738,332,585	838,007,483	99,674,899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300	1.534	14	185,209,233	210,212,479	25,003,246
			30억원초과	1.000	1.180	1	68,561,311	77,817,088	9,255,777
		심사제외	1억원까지	0.800	0.944	1	206,609	234,501	27,892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708	11	77,405,835	87,855,623	10,449,788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72	2	19,417,097	22,038,405	2,621,308
			30억원초과	0.200	0.236	1	7,187,879	8,158,243	970,364
	기술용역 합계					1,403	6,120,366,100	6,946,615,524	826,249,424

[그림 61]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기술용역_13.5% 상향)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개선 요율(13.5%)	건수	현행 수수료 (A)	개선 수수료 (B)	B-A
국가, 기타기관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400	0.472	466	90,934,530	103,210,692	12,276,162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00	0.354	0	0	0	0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0	0.177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70	0.083	30	905,094,480	1,027,282,235	122,187,755
		500억원 초과	**0.060**	0.071	**2**	189,794,090	215,416,292	25,622,202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350	0.413	15	21,405,300	24,295,016	2,889,716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50	0.295	55	530,456,550	602,068,184	71,611,63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20	0.142	56	1,083,861,340	1,230,182,621	146,321,281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60	0.071	42	1,072,259,540	1,217,014,578	144,755,038
		500억원 초과	**0.050**	0.059	**2**	241,475,060	274,074,193	32,599,133
	C : 비PQ	10억원까지	0.300	0.354	2,051	1,899,931,080	2,156,421,776	256,490,696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00	0.236	723	3,696,617,180	4,195,660,499	499,043,319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00	0.118	111	1,161,369,140	1,318,153,974	156,784,83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50	0.059	65	861,616,510	977,934,739	116,318,229
		500억원 초과	**0.045**	0.053	**0**	0	0	0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200	0.236	14	2,585,970	2,935,076	349,106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118	2	7,418,050	8,419,487	1,001,43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059	3	38,868,000	44,115,180	5,247,18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24	11	143,305,590	162,651,845	19,346,255
		500억원 초과	**0.015**	0.018	**3**	54,116,360	61,422,069	7,305,709
지방자치단체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300	0.354	15	1,692,730	1,921,249	228,519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50	0.177	0	0	0	0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70	0.083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0	0.047	26	476,873,800	541,251,763	64,377,963
		500억원 초과	**0.035**	0.041	**5**	210,756,980	239,209,172	28,452,192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250	0.295	2	3,670,890	4,166,460	495,570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20	0.142	27	158,474,730	179,868,819	21,394,089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60	0.071	23	239,876,160	272,259,442	32,383,28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30	0.035	16	262,566,560	298,013,046	35,446,486
		500억원 초과	0.025	0.030	0	0	0	0
	C : 비PQ	10억원까지	0.200	0.236	270	261,419,140	296,710,724	35,291,584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118	371	1,274,599,900	1,446,670,887	172,070,98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059	65	469,980,520	533,427,890	63,447,37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24	38	349,619,210	396,817,803	47,198,593
		500억원 초과	0.015	0.018	0	0	0	0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100	0.118	0	0	0	0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050	0.059	3	4,571,900	5,189,107	617,20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20	0.024	4	14,914,940	16,928,457	2,013,51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10	0.012	9	53,744,410	60,999,905	7,255,495
		500억원 초과	0.010	0.012	2	43,509,400	49,383,169	5,873,769
공사계약 소계					**4,527**	**15,827,380,040**	**17,964,076,345**	**2,136,696,305**

[그림 62]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공사계약_13.5% 상향)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개선 요율(13.5%)	건수	현행 수수료 (A)	개선 수수료 (B)	B-A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역)	일괄 · 기술제안	일괄 · 기본	100억원까지	0.056	0.066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9	0.058	1	21,205,000	24,067,675	2,862,675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1	0.048	0	0	0	0
				1,000억원초과	0.037	0.044	0	0	0	0
			실시 · 대안	100억원까지	0.037	0.044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32	0.038	0	0	0	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8	0.033	1	22,458,000	25,489,830	3,031,830
				1,000억원초과	0.025	0.030	1	155,579,000	176,582,165	21,003,165
		관급자재 검토대행		100억원까지	0.004	0.005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03	0.004	3	3,243,000	3,680,805	437,805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03	0.004	0	0	0	0
				1,000억원초과	0.002	0.002	0	0	0	0
		설계공모		100억원까지	0.084	0.099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73	0.086	5	80,818,000	91,728,430	10,910,43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62	0.073	0	0	0	0
				1,000억원초과	0.056	0.066	0	0	0	0
	기획· 설계 관리 (사업예산역)	일반공사		100억원까지	0.462	0.545	6	108,906,000	123,608,310	14,702,31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42	0.496	39	4,867,965,000	5,525,140,275	657,175,275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336	0.396	3	1,632,466,000	1,852,848,910	220,382,910
				1,000억원초과	0.302	0.356	0	0	0	0
		일괄·기술제안		100억원까지	0.396	0.467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36	0.425	0	0	0	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288	0.340	1	332,142,000	376,981,170	44,839,170
				1,000억원초과	0.259	0.306	1	948,671,000	1,076,741,585	128,070,585
	시공관리 (사업예산역)	건설사업관리		100억원까지	0.846	0.998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736	0.868	0	0	0	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626	0.739	1	334,179,000	379,293,165	45,114,165
				1,000억원초과	0.562	0.663	0	0	0	0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원까지	0.677	0.799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598	0.706	5	881,171,000	1,000,129,085	118,958,085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501	0.591	0	0	0	0
				1,000억원초과	0.45	0.531	0	0	0	0
맞춤형서비스 소계							**67**	**9,388,803,000**	**10,656,291,405**	**1,267,488,405**

[그림 63]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맞춤형서비스_13.5% 상향)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개선 요율	건수	현행 수수료 (A)	개선 수수료 (B)	B-A
기타시설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계획	100억원까지	0.029	0.034	2	2,835,620	3,218,429	382,809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31	10	61,527,800	69,834,053	8,306,25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25	0	0	0	0
				1,000억원초과	0.019	0.022	0	0	0	0
			기본(중간)	100억원까지	0.058	0.068	5	13,854,900	15,725,312	1,870,41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53	0.063	13	194,365,510	220,604,854	26,239,344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2	0.050	0	0	0	0
				1,000억원초과	0.038	0.045	1	115,747,140	131,373,004	15,625,864
			실시	100억원까지	0.058	0.068	10	40,545,400	46,019,029	5,473,629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53	0.063	43	571,990,220	649,208,900	77,218,68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2	0.050	3	90,539,460	102,762,287	12,222,827
				1,000억원초과	0.038	0.045	1	136,808,280	155,277,398	18,469,118
		설계적정성 검토(VE 병행)	계획	100억원까지	0.029	0.034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31	4	24,614,570	27,937,537	3,322,967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25	0	0	0	0
				1,000억원초과	0.019	0.022	0	0	0	0
			기본(중간)	100억원까지	0.102	0.120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81	0.096	7	149,099,920	169,228,409	20,128,489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65	0.077	2	95,518,750	108,413,781	12,895,031
				1,000억원초과	0.058	0.068	1	213,540,780	242,368,785	28,828,005
			실시	100억원까지	0.102	0.120	0	0	0	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81	0.096	3	62,928,480	71,423,825	8,495,345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65	0.077	0	0	0	0
				1,000억원초과	0.058	0.068	0	0	0	0
	공사원가검토	국가, 기타기관		100억원까지	0.04	0.047	15	17,703,230	20,093,166	2,389,936
				100억원초과	0.04	0.047	27	382,315,860	433,928,501	51,612,641
		지방자치단체		100억원까지	0.04	0.047	34	23,202,690	26,335,053	3,132,363
				100억원초과	0.02	0.024	53	297,111,640	337,221,711	40,110,071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 기타기관		100억원까지	0.04	0.047	35	60,757,680	68,959,967	8,202,287
				100억원초과	0.04	0.047	82	2,542,123,470	2,885,310,138	343,186,668
		지방자치단체		100억원까지	0.04	0.047	4	2,499,590	2,837,035	337,445
				100억원초과	0.02	0.024	5	228,400,050	259,234,057	30,834,007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0.118	509	663,684,530	753,281,942	89,597,412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0.059	5	234,470,490	266,124,006	31,653,516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	0.236	7	85,848,400	97,437,934	11,589,534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05	0.059	27	248,677,890	282,249,405	33,571,515
	기타시설업무 소계						908	6,560,712,350	7,446,408,517	885,696,167

[그림 64]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 개선방안(기타시설업무_13.5% 상향)

3.4. 조달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수수료 수익 변화 검토 종합

□ 앞서 분석한 내자·시설 사업간 균형점 도출 외에 향후 안정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첫째, 추가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유형별로 수수료율이 세분화, 다양화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본 과업에서는 공사금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된 수수료 부과항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추가 실시하여 적용 타당성을 확보함

○ 둘째, 내자구매 요율 변화에 따른 시설공사 분야의 수수료율 적정균형점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셋째, 내자구매 부문에서 감면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벤치마킹 가능한 '마일리지 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원가비중의 변화를 검토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적정 요율을 함께 제시함

3.4.1. 시설공사 유형별 통합화 및 수수료 요율 부과

□ 기술용역과 공사계약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수수료 요율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음

* 다만, 시설공사 유형별 통합화 제안은 실제 실무자 간의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 조정·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진에서 시설분야의 공개된 업무분장 내용과 요율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검증은 금번 용역이 아닌 후속연구 진행 필요

○ 기술용역 분야의 경우 1)세부 사업인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을 '설계 등 용역'의 수수료 [요율로 통일]하며, 2)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의 [평균 요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공사계약의 경우 수수료 부과 체계 통합과 관련하여 업무 속성과 난이도에 따라 A Type의 요율을 B Type의 요율과 같게 하여 하향조정하며, D Type의 요율을 C Type의 요율과 같게 하여 상향조정함.

□ 위에서 제시한 기술용역 분야와 공사계약 분야의 2가지 개선방안 조합에 앞서 분석한 적정 증가 요율인 13.5%까지 일괄 상승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더하여 총 4개의 개선방안 제시(표 3-23 참조)

[표 3-17] 시설공사 분야 유형별 통합 수수료 요율 부과(4가지 시뮬레이션)

Case	분석 내용
1	① 기술용역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모두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 ② 공사계약 :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2	① 기술용역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평균 요율로 통합** ② 공사계약 :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3	① 기술용역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모두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 ② 공사계약 :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③ 요율 통합 후 시설공사 분야 일괄 13.5% 증가
4	① 기술용역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평균 요율로 통합 ② 공사계약 :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③ 요율 통합 후 시설공사 분야 일괄 13.5% 증가

(1) Case 1 : 설계 등 용역과 감리 CM 요율 통합화

□ 기술용역 분야에서는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모두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하고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변경된 수수료 수익 및 수익 대비 원가비중은 [표 3-24]와 같음

[표 3-18] Case 1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원가 비중
내자구매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
외자구매	5,577,561,220	4,734,121,242	84.88%	-
시설공사	37,897,261,490	35,349,773,861	93.28%	78.73%
시설공사 변화	**38,312,152,139**	**35,349,773,861**	**92.27%**	**78.40%**

□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1.01%(93.28%→92.27)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34%(78.73%→78.40%)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65 참조)

구분(기술용역)		기존 요율	요율 통합	비고
감리 · CM 용역	제안	1.200	1.300	설계등 용역 '제안'
		1.000	1.100	설계등 용역 '제안'
		0.800	0.900	설계등 용역 '제안'
		0.600	0.700	설계등 용역 '제안'
	PQ	0.900	1.000	설계등 용역 'PQ'
		0.700	0.800	설계등 용역 'PQ'
		0.500	0.600	설계등 용역 'PQ'
		0.300	0.400	설계등 용역 'PQ'

구분(공사계약)		기존 요율	요율 통합	비고
국가, 기타기관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400	0.350	B type으로 통합
		0.300	0.250	B type으로 통합
		0.150	0.120	B type으로 통합
		0.070	0.060	B type으로 통합
		0.060	0.050	B type으로 통합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200	0.300	C type으로 통합
		0.100	0.200	C type으로 통합
		0.050	0.100	C type으로 통합
		0.020	0.050	C type으로 통합
		0.015	0.045	C type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300	0.250	B type으로 통합
		0.150	0.120	B type으로 통합
		0.070	0.060	B type으로 통합
		0.040	0.030	B type으로 통합
		0.035	0.025	B type으로 통합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100	0.200	C type으로 통합
		0.050	0.100	C type으로 통합
		0.020	0.050	C type으로 통합
		0.010	0.020	C type으로 통합
		0.010	0.015	C type으로 통합

[그림 65] Case 1 요율 통합 예시

(2) Case 2 : 설계 등 용역 및 감리·CM 용역 평균요율로 통합

□ 기술용역 분야에서는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평균 요율로 통합하고,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Case 1과 같이할 경우 변경된 수익 및 수익 대비 원가비중은 [표 3-25]와 같음

[표 3-19] Case 2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원가 비중
내자구매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외자구매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37,897,261,490	35,349,773,861	93.28%	78.73%
시설공사 변화	**38,036,854,672**	**35,349,773,861**	**92.94%**	**78.62%**

□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0.34%(93.28%→92.94)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11%(78.73%→78.6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66 참조)

구분(기술용역)		기존 요율	요율 통합	비고
설계 등 용역	제안	1.300	1.250	설계 등 용역과 감리 · CM 용역의 평균 요율로 통합
		1.100	1.050	
		0.900	0.850	
		0.700	0.650	
	PQ	1.000	0.950	
		0.800	0.750	
		0.600	0.550	
		0.400	0.350	
감리 · CM 용역	제안	1.200	1.250	
		1.000	1.050	
		0.800	0.850	
		0.600	0.650	
	PQ	0.900	0.950	
		0.700	0.750	
		0.500	0.550	
		0.300	0.350	

구분(공사계약)		기존 요율	요율 통합	비고
국가, 기타기관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400	0.350	B type으로 통합
		0.300	0.250	B type으로 통합
		0.150	0.120	B type으로 통합
		0.070	0.060	B type으로 통합
		0.060	0.050	B type으로 통합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200	0.300	C type으로 통합
		0.100	0.200	C type으로 통합
		0.050	0.100	C type으로 통합
		0.020	0.050	C type으로 통합
		0.015	0.045	C type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300	0.250	B type으로 통합
		0.150	0.120	B type으로 통합
		0.070	0.060	B type으로 통합
		0.040	0.030	B type으로 통합
		0.035	0.025	B type으로 통합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0.100	0.200	C type으로 통합
		0.050	0.100	C type으로 통합
		0.020	0.050	C type으로 통합
		0.010	0.020	C type으로 통합
		0.010	0.015	C type으로 통합

[그림 66] Case 2 요율 통합 예시

(3) Case 3 : [Case 1] 결과에 시설공사 수수료율 13.5% 상향 조정

□ Case 3은 앞선 Case 1데이터 결과 값에 시설공사 전체 요율을 13.5% 일괄 증가시켰으며, 데이터 값은 [표 3-26]과 같음

[표 3-20] Case 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원가 비중
내자구매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외자구매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37,897,261,490	35,349,773,861	93.28%	78.73%
시설공사 변화	**43,507,231,028**	**35,349,773,861**	**81.25%**	**74.72%**

□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12.03%(93.28%→81.25%)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34%(78.73%→74.7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용역,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맞춤형서비스, 기타시설업무도 수수료율을 13.5% 일괄 상향 조정함

(4) Case 4 : [Case 2] 결과에 시설공사 수수료율 13.5% 상향조정

□ Case 4는 앞선 Case 2데이터 결과 값에 시설공사 전체 요율을 13.5% 일괄 증가시켰으며, 데이터 값은 [표 3-27]과 같으며, case 3 대한 요율통합 예시는 [표 3-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3-21] Case 3 요율 통합 예시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요율 통합	요율 13.5% 일괄 상승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300	1.300	1.476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100	1.100	1.249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900	0.900	1.022
			30억원초과	0.700	0.700	0.795
		PQ	1억원까지	1.000	1.000	1.135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800	0.800	0.908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600	0.600	0.681
			30억원초과	0.400	0.400	0.454
		비PQ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감리·CM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200	1.300	1.476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00	1.100	1.249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800	0.900	1.022
			30억원초과	0.600	0.700	0.795
		PQ	1억원까지	0.900	1.000	1.135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00	0.800	0.908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500	0.600	0.681
			30억원초과	0.300	0.400	0.454
		비PQ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설계 공모	심사포함	1억원까지	1.900	1.900	2.157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600	1.600	1.81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300	1.300	1.476
			30억원초과	1.000	1.000	1.135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요율 통합	요율 13.5% 일괄 상승
		심사제외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기술용역 합계				**0.769**	**0.794**	**0.901**
공사계약	국가, 기타기관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400	0.350	0.39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00	0.250	0.28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0	0.120	0.13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70	0.060	0.068
			500억원 초과	0.060	0.050	0.057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350	0.350	0.39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50	0.250	0.28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20	0.120	0.13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60	0.060	0.068
			500억원 초과	0.050	0.050	0.057
		C : 비PQ	10억원까지	0.300	0.300	0.34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00	0.200	0.22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00	0.100	0.11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50	0.050	0.057
			500억원 초과	0.045	0.045	0.051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200	0.300	0.34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200	0.22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100	0.11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50	0.057
			500억원 초과	0.015	0.045	0.051
	지방자치단체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300	0.250	0.284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50	0.120	0.136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70	0.060	0.068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0	0.030	0.034
			500억원 초과	0.035	0.025	0.028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250	0.250	0.284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20	0.120	0.136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60	0.060	0.068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30	0.030	0.034
			500억원 초과	0.025	0.025	0.028
		C : 비PQ	10억원까지	0.200	0.200	0.22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100	0.11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050	0.05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20	0.023
			500억원 초과	0.015	0.015	0.017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100	0.200	0.22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050	0.100	0.11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20	0.050	0.05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10	0.020	0.023
			500억원 초과	0.010	0.015	0.017
공사계약 소계				0.114	0.120	0.136

[표 3-22] Case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원가 비중
내자구매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외자구매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37,897,261,490	35,349,773,861	93.28%	78.73%
시설공사 변화	**42,377,189,971**	**35,349,773,861**	**83.42%**	**75.45%**

□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9.86%(93.28%→83.42%)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3.29%(78.73%→75.4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용역,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맞춤형서비스, 기타시설업무도 수수료 요율을 모두 13.5% 일괄 조정하였으며, case 4 대한 요율통합 예시는 [표 3-29]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3-23] Case 4 요율 통합 예시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요율 통합	요율 13.5% 일괄 상승
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300	1.250	1.419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100	1.050	1.192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900	0.850	0.965
			30억원초과	0.700	0.650	0.738
		PQ	1억원까지	1.000	0.950	1.07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800	0.750	0.85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600	0.550	0.624
			30억원초과	0.400	0.350	0.397
		비PQ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감리·CM 용역	제안	1억원까지	1.200	1.250	1.419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00	1.050	1.192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800	0.850	0.965
			30억원초과	0.600	0.650	0.738
		PQ	1억원까지	0.900	0.950	1.07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00	0.750	0.85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500	0.550	0.624
			30억원초과	0.300	0.350	0.397
		비PQ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요율 통합	요율 13.5% 일괄 상승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설계 공모	심사포함	1억원까지	1.900	1.900	2.157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600	1.600	1.81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300	1.300	1.476
			30억원초과	1.000	1.000	1.135
		심사제외	1억원까지	0.800	0.800	0.9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600	0.600	0.681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400	0.400	0.454
			30억원초과	0.200	0.200	0.227
기술용역 합계				0.769	0.769	0.873
공사계약	국가, 기타기관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400	0.350	0.39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00	0.250	0.28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0	0.120	0.13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70	0.060	0.068
			500억원 초과	0.060	0.050	0.057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350	0.350	0.39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50	0.250	0.28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20	0.120	0.13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60	0.060	0.068
			500억원 초과	0.050	0.050	0.057
		C : 비PQ	10억원까지	0.300	0.300	0.34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200	0.200	0.22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00	0.100	0.11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50	0.050	0.057
			500억원 초과	0.045	0.045	0.051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200	0.300	0.34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200	0.227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100	0.11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50	0.057
			500억원 초과	0.015	0.045	0.051
	지방자치단체	A : 종심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300	0.250	0.284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50	0.120	0.136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70	0.060	0.068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0	0.030	0.034
			500억원 초과	0.035	0.025	0.028
		B :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까지	0.250	0.250	0.284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20	0.120	0.136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60	0.060	0.068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30	0.030	0.034
			500억원 초과	0.025	0.025	0.028
		C : 비PQ	10억원까지	0.200	0.200	0.22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100	0.100	0.11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50	0.050	0.05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0	0.020	0.023
			500억원 초과	0.015	0.015	0.017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기존 요율	요율 통합	요율 13.5% 일괄 상승
		D :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억원까지	0.100	0.200	0.227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050	0.100	0.114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020	0.050	0.05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10	0.020	0.023
			500억원 초과	0.010	0.015	0.017
공사계약 소계				0.114	0.120	0.136

3.4.2. 내자구매 요율 변화에 따른 시설공사 분야의 균형 요율 분석

□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분야의 영업이익 불균형 해소방안을 위하여 내자구매 요율 체계 변화에 따라 시설공사 분야의 균형 요율을 분석하고자 함

□ 내자구매 요율 체계의 경우 ❶현행 유지, ❷단가, 총액계약의 요율을 정액제(유형1)로 변경 시, ❸단가, 총액계약의 요율을 정액제(유형 2)로 변경 시, ❹10억 원 미만의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요율을 0.54%에서 0.51%로 일괄 하향 조정할 시, ❺10억 원 미만의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요율을 0.54%에서 0.47%로 일괄 하향 조정하는 5가지 방안을 제안함

□ 시설공사의 경우 ❶내자 구매 변경 유무에 따른 전체 조달사업의 적정 원가비중이 74%에 가장 근접한 요율과, [3.4.1 시설공사 분야 유형별 통합 수수료 요율 부과]에서 언급한 ❷Case 1, ❸case 2 방안을 활용함

□ 5가지 내자구매 방안에 대응한 시설공사 분야의 3가지 방안을 각각 매칭시켜 15가지 방안을 도출해 냄

(1) Case 5 : 내자구매 요율 체계 현행 유지 시 개선체계 도출

□ 시설공사 Case 5.1

○ 시설공사 요율 체계 현행 유지 시 내자, 외자, 시설 분야의 전체 원가비중이 74%에 가장 근접할 시 가장 적합한 시설공사 일괄 증가 요율 수치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7.5%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4%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5.2

○ 기술용역 요율 체계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

○ 공사계약 요율 체계: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6.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98%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5.3

○ 기술용역 요율 체계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 요율의 평균값으로 통합

○ 공사계약 요율 체계 :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7%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5%로 낮아짐

[표 3-24] Case 5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수익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	0%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외자	0%	5,577,561,220	4,723,427,045	84.69%	
시설 5.1	**+17.50%**	**44,529,282,251**	**35,349,773,861**	**79.39%**	**74.04%**
시설 5.2	**+16.50%**	**44,633,657,242**	**35,349,773,861**	**79.20%**	**73.98%**
시설 5.3	**+17.00%**	**44,503,119,966**	**35,349,773,861**	**79.43%**	**74.05%**

(2) Case 6 : 내자구매(단가, 총액) 요율의 정액제로 변경시(Alt1)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요율을 정액제[6]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내자구매의 원가 비중은 2.49% 감소함

□ 시설공사 Case 6.1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0.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8%로 낮아짐

6) 정액수수료 = (계약 등급별 건수) * (계약 등급별 건당 평균 수수료)*4.85%(조정계수) 값에서 1만 단위 절삭

□ 시설공사 Case 6.2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18.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1%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6.3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19.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9%로 낮아짐

[표 3-25] Case 6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수수료수익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	-2.49%	178,201,250,000	106,083,987,242	59.53%	
외자	0.00%	5,577,561,220	4,723,427,045	84.69%	
시설 6.1	+20.00%	45,666,200,095	35,349,773,861	77.41%	73.88%
시설 6.2	+18.50%	45,783,021,807	35,349,773,861	77.21%	73.81%
시설 6.3	+19.50%	45,644,225,606	35,349,773,861	77.45%	73.89%

(3) Case 7 : 내자구매(단가, 총액) 요율의 정액제로 변경시(Alt2)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요율을 정액제[7]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내자구매의 원가 비중은 6.63% 감소함

□ 시설공사 Case 7.1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4.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5.30%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7.2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3.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5.35%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7.3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3.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5.32%로 낮아짐

7) 정액수수료 = (계약 등급별 건수) * (계약 등급별 건당 평균 수수료) 값에서 1만 단위 절삭

[표 3-26] Case 7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	-6.63%	170,639,530,000	106,083,987,242	62.17%	
외자	0.00%	5,577,561,220	4,723,427,045	84.69%	
시설 7.1	+24.00%	44,718,768,558	35,349,773,861	79.05%	75.30%
시설 7.2	+23.00%	44,633,657,242	35,349,773,861	79.20%	75.35%
시설 7.3	+23.50%	44,693,304,239	35,349,773,861	79.09%	75.32%

(4) Case 8 : 내자구매(단가) 요율 조정시 (Alt1)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단가 계약에서 10억 원 미만의 단가 요율을 0.54%에서 0.51%로 일괄 하향 조정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내자구매의 원가 비중은 2.82% 감소함

□ 시설공사 Case 8.1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0.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5%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8.2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19.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98%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8.3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0.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95%로 낮아짐

[표 3-27] Case 8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	-2.82%	177,607,302,993	106,083,987,242	59.73%	
외자	0.00%	5,577,561,220	4,723,427,045	84.69%	
시설 8.1	+20.00%	45,476,713,788	35,349,773,861	77.73%	74.05%
시설 8.2	+19.00%	45,591,461,046	35,349,773,861	77.54%	73.98%
시설 8.3	+20.00%	45,644,225,606	35,349,773,861	77.45%	73.95%

(5) Case 9 : 내자구매(단가) 요율 조정 시 (Alt2)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단가 계약에서 10억 원 미만의 단가 요율을 0.54%에서 0.47%로 일괄 하향 조정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내자구매의 원가 비중은 6.58% 감소함

□ 시설공사 Case 9.1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4.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96%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9.2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2.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5.00%로 낮아짐

□ 시설공사 Case 9.3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3.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97%로 낮아짐

[표 3-28] Case 9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구분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	-6.58%	170,736,116,303	106,083,987,242	62.13%	
외자	0.00%	5,577,561,220	4,723,427,045	84.69%	
시설 9.1	+24.00%	45,287,227,481	35,349,773,861	78.06%	74.96%
시설 9.2	+22.50%	45,208,339,524	35,349,773,861	78.19%	75.00%
시설 9.3	+23.50%	45,263,857,059	35,349,773,861	78.10%	74.97%

3.5. 조달사업 수수료율 감면제도(적립금) 개선방안

3.5.1. 마일리지 도입에 따른 조달수수료율 균형 검토(시설공사 중심)

□ 마일리지 제도는 내자구매 중 단가계약에 대해서만 시범적용하면서 적립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향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표3-34]는 단가계약 시 수요기관에 반환되는 마일리지를 통하여 감소하는 조달수수료 수익을 반영한 원가비중을 나타낸 것임

[표 3-29] 마일리지 설정비율에 따른 원가비중 변화

구분	단가계약 수수료	총액계약 수수료	내자구매 수수료	내자구매 원가	원가 비중	원가 변화 (차)
-	100,840,689,980	81,920,003,030	182,760,693,010	106,083,987,242	58.05%	0.00%
1.0%	99,832,283,080	81,920,003,030	181,752,286,110	106,083,987,242	58.37%	0.32%
1.5%	99,328,079,630	81,920,003,030	181,248,082,660	106,083,987,242	58.53%	0.48%
2.0%	98,823,876,180	81,920,003,030	180,743,879,210	106,083,987,242	58.69%	0.65%
2.5%	98,319,672,731	81,920,003,030	180,239,675,761	106,083,987,242	58.86%	0.81%
3.0%	97,815,469,281	81,920,003,030	179,735,472,311	106,083,987,242	59.02%	0.98%
3.5%	97,311,265,831	81,920,003,030	179,231,268,861	106,083,987,242	59.19%	1.14%
4.0%	96,807,062,381	81,920,003,030	178,727,065,411	106,083,987,242	59.36%	1.31%
4.5%	96,302,858,931	81,920,003,030	178,222,861,961	106,083,987,242	59.52%	1.48%
5.0%	95,798,655,481	81,920,003,030	177,718,658,511	106,083,987,242	59.69%	1.65%

□ 마일리지 제도도 마찬가지로 시설공사 분야와의 균형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시설공사 3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확인하고 비교·분석함

[표 3-30]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따른 시설공사 수수료 원가비중 균형점 검토 결과

구분(1%)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1.00%	181,752,286,110	106,083,987,242	58%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5%	
시설공사 1	18.50%	44,908,254,866	35,349,773,861	78.72%	73.99%
시설공사 2	17.00%	44,825,218,003	35,349,773,861	78.86%	74.04%
시설공사 3	18.00%	44,883,488,513	35,349,773,861	78.76%	74.00%
구분(1.5%)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1.50%	181,248,082,660	106,083,987,242	58.53%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18.50%	44,908,254,866	35,349,773,861	78.72%	74.04%
시설공사 2	17.50%	45,016,778,764	35,349,773,861	78.53%	73.98%
시설공사 3	18.00%	44,883,488,513	35,241,863,327	78.52%	73.98%
구분(2%)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2.00%	180,743,879,210	106,083,987,242	58.69%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19.00%	45,097,741,173	35,349,773,861	78.38%	73.99%
시설공사 2	17.50%	45,016,778,764	35,349,773,861	78.53%	74.03%
시설공사 3	18.50%	45,073,672,786	35,349,773,861	78.43%	74.00%
구분(2.5%)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2.50%	180,239,675,761	106,083,987,242	58.86%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19.00%	45,097,741,173	35,349,773,861	78.38%	74.04%
시설공사 2	18.00%	45,208,339,524	35,349,773,861	78.19%	73.98%
시설공사 3	18.50%	45,073,672,786	35,349,773,861	78.43%	74.05%
구분(3%)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3.00%	179,735,472,311	106,083,987,242	59.02%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19.50%	45,287,227,481	35,349,773,861	78.06%	73.99%
시설공사 2	18.00%	45,208,339,524	35,349,773,861	78.19%	74.03%
시설공사 3	19.00%	45,263,857,059	35,349,773,861	78.10%	74.00%
구분(3.5%)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3.50%	179,231,268,861	106,083,987,242	59.19%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19.50%	45,287,227,481	35,349,773,861	78.06%	74.04%
시설공사 2	18.50%	45,399,900,285	35,349,773,861	77.86%	73.98%
시설공사 3	19.00%	45,263,857,059	35,349,773,861	78.10%	74.05%
구분(4%)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4.00%	178,727,065,411	106,083,987,242	59.36%	0.00%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0.00%
시설공사 1	20.00%	45,476,713,788	35,349,773,861	77.73%	73.99%
시설공사 2	18.50%	45,399,900,285	35,349,773,861	77.86%	74.03%
시설공사 3	19.50%	45,454,041,333	35,349,773,861	77.77%	74.00%
구분(4.5%)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4.50%	178,222,861,961	106,083,987,242	59.52%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20.00%	45,476,713,788	35,349,773,861	77.73%	74.04%
시설공사 2	19.00%	45,591,461,046	35,349,773,861	77.54%	73.98%

시설공사 3	20.00%	45,644,225,606	35,349,773,861	77.45%	73.95%
구분(5%)	**원가비중 증감률**	**수수료 수익**	**순원가**	**분야별 원가 비중**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
내자구매	5.00%	177,718,658,511	106,083,987,242	59.69%	
외자구매	0.00%	5,577,561,220	4,734,121,242	84.88%	
시설공사 1	20.50%	45,666,200,095	35,349,773,861	77.41%	73.99%
시설공사 2	19.00%	45,591,461,046	35,349,773,861	77.54%	74.04%
시설공사 3	20.00%	45,644,225,606	35,349,773,861	77.45%	74.01%

3.6. 수수료 상한액 도입(내자구매 수수료 상한액 기준)

□ 조달사업 부문의 계약금액 최고구간인 100억~1,000억 원을 실제로 넘어간 경우 규모에 비하여 들어가는 서비스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0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최고구간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수수료의 상한액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조달수수료의 최고 금액구간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시설공사 분야의 사업의 경우 1,000억 원 증가시 수수료가 수직으로 상승하여 한계비용은 낮아지는 것에 반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지적 받아옴

○ 그러므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내자구매의 상한액 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함

□ 평균값 수수료 : 총액과 단가의 최고 구간인 100억 이상 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1건당 평균 수수료 값을 구함

○ 2019년 기준 총액계약의 평균 계약금액은 32,749,108,369원이며, 평균 수수료는 139,193,909원으로 분석됨

○ 단가계약의 평균 계약금액은 15,597,768,072원이며, 평균 수수료는 59,614,620원으로 분석됨

□ 중위값 수수료 : 총액과 단가의 최고 구간인 100억 이상 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1건당 중위 수수료 값을 구함

○ 2019년 기준 총액계약의 중위 계약금액은 18,846,850,000원이며, 평균 수수료는 83,164,900원으로 분석됨

○ 단가계약의 중위 계약금액은 13,085,776,910원이며, 중위 수수료는 49,965,800원으로 분석됨(그림 67, 68 참조)

총액	건수	계약금액 총액	수수료	평균계약금액	평균값 수수료	중위 계약금액	중위값 수수료	최소값 수수료	최대값 수수료
2015년	69	2,011,042,338,150	8,373,956,050	29,145,541,133	121,361,682	16,400,000,000	77,587,780	31,270,220	1,159,669,360
2016년	68	1,483,208,309,810	6,305,042,190	21,811,886,909	92,721,209	17,150,304,750	77,241,895	30,085,460	256,701,380
2017년	64	1,466,185,295,830	6,045,370,090	22,909,145,247	98,525,002	15,763,996,200	72,134,970	29,782,500	647,814,500
2018년	80	2,114,350,992,920	9,175,822,100	26,429,387,412	114,697,776	17,643,960,000	81,206,630	49,674,140	1,250,254,020
2019년	94	3,078,416,186,700	13,084,227,490	32,749,108,369	139,193,909	18,846,850,000	83,164,900	49,506,400	2,439,812,800
평균	75	2,030,640,624,682	8,596,883,584	26,609,013,814	113,299,916	17,161,022,190	78,267,235	38,063,744	1,150,850,412
단가	건수	계약금액 총액	수수료	평균계약금액	평균값 수수료	중위 계약금액	중위값 수수료	최소값 수수료	최대값 수수료
2015년	6	77,303,411,850	361,630,110	12,883,901,975	60,271,685	11,408,530,435	58,525,755	13,562,290	115,962,780
2016년	7	108,356,878,950	349,380,700	15,479,554,136	49,911,529	12,396,077,480	40,350,930	19,654,420	99,687,040
2017년	7	122,720,032,310	454,546,840	17,531,433,187	64,935,263	17,410,080,000	56,475,670	16,828,330	115,900,700
2018년	5	92,732,214,720	327,137,940	18,546,442,944	65,427,588	13,860,965,500	39,972,570	16,924,440	155,125,390
2019년	6	93,586,608,430	357,687,720	15,597,768,072	59,614,620	13,085,776,910	49,965,800	22,664,480	123,060,380
평균	6	98,939,829,252	370,076,662	16,007,820,063	60,032,137	13,632,286,065	49,058,145	17,926,792	121,947,258

[그림 67] 평균값, 중위값 수수료 시뮬레이션 결과(내자구매 상한액)

2015년	총액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단가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2천만원	70,134,860	70,134,860	70,134,860	14,532,321,280	14,532,321,280	14,532,321,280
5천만원	2,821,023,380	2,821,023,380	2,821,023,380	11,904,640,450	11,904,640,450	11,904,640,450
1억원 미만	4,515,246,270	4,515,246,270	4,515,246,270	10,803,702,130	10,803,702,130	10,803,702,130
10억원 미만	32,452,388,440	32,452,388,440	32,452,388,440	21,445,429,570	21,445,429,570	21,445,429,570
100억원 미만	19,014,820,270	19,014,820,270	19,014,820,270	6,651,290,970	6,651,290,970	6,651,290,970
100억원 이상	8,373,956,050	5,730,936,768	4,114,616,170	361,630,110	305,939,015	302,656,875
합계	67,247,569,270	64,604,549,988	62,988,229,390	65,699,014,510	65,643,323,415	65,640,041,275
2016년	총액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단가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2천만원	70,022,590	70,022,590	70,022,590	15,146,920,690	15,146,920,690	15,146,920,690
5천만원	2,692,621,130	2,692,621,130	2,692,621,130	12,333,854,300	12,333,854,300	12,333,854,300
1억원 미만	4,790,709,910	4,790,709,910	4,790,709,910	10,819,969,750	10,819,969,750	10,819,969,750
10억원 미만	33,771,558,620	33,771,558,620	33,771,558,620	21,396,641,570	21,396,641,570	21,396,641,570
100억원 미만	19,640,359,540	19,640,359,540	19,640,359,540	6,263,355,550	6,263,355,550	6,263,355,550
100억원 이상	6,305,042,190	5,113,483,687	3,411,363,000	349,380,700	277,332,416	248,650,620
합계	67,270,313,980	66,078,755,477	64,376,634,790	66,310,122,560	66,238,074,276	66,209,392,480
2017년	총액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단가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2천만원	33,555,900	33,555,900	33,555,900	18,621,427,160	18,621,427,160	18,621,427,160
5천만원	595,041,480	595,041,480	595,041,480	15,590,269,090	15,590,269,090	15,590,269,090
1억원 미만	4,760,473,780	4,760,473,780	4,760,473,780	13,827,883,090	13,827,883,090	13,827,883,090
10억원 미만	34,682,454,750	34,682,454,750	34,682,454,750	28,508,161,730	28,508,161,730	28,508,161,730
100억원 미만	19,723,587,070	19,723,587,070	19,723,587,070	8,231,449,550	8,231,449,550	8,231,449,550
100억원 이상	6,045,370,090	4,597,141,222	1,698,876,060	454,546,840	383,657,529	358,278,750
합계	65,840,483,070	64,392,254,202	61,493,989,040	85,233,737,460	85,162,848,149	85,137,469,370
2018년	총액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단가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2천만원	39,526,810	39,526,810	39,526,810	19,492,990,580	19,492,990,580	19,492,990,580
5천만원	447,814,300	447,814,300	447,814,300	16,589,503,010	16,589,503,010	16,589,503,010
1억원 미만	4,567,300,100	4,567,300,100	4,567,300,100	14,856,924,960	14,856,924,960	14,856,924,960
10억원 미만	35,583,707,860	35,583,707,860	35,583,707,860	30,049,163,880	30,049,163,880	30,049,163,880
100억원 미만	19,768,697,750	19,768,697,750	19,768,697,750	8,098,928,270	8,098,928,270	8,098,928,270
100억원 이상	9,175,822,100	6804874773	1023316040	327,137,940	237,440,138	193,491,470
합계	69,582,868,920	67,211,921,593	61,430,362,860	89,414,648,640	89,324,950,838	89,281,002,170
2019년	총액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단가 조달수수료	한화수수료(평균)	한화수수료(중위)
2천만원	40,315,800	40,315,800	40,315,800	22,215,638,950	22,215,638,950	22,215,638,950
5천만원	432,788,680	432,788,680	432,788,680	19,228,074,880	19,228,074,880	19,228,074,880
1억원 미만	4,915,239,770	4,915,239,770	4,915,239,770	16,916,141,020	16,916,141,020	16,916,141,020
10억원 미만	39,260,325,090	39,260,325,090	39,260,325,090	34,401,165,460	34,401,165,460	34,401,165,460
100억원 미만	24,187,106,200	24,187,106,200	24,187,106,200	7,721,981,950	7,721,981,950	7,721,981,950
100억원 이상	13,084,227,490	8555337081	421660170	357,687,720	288,077,790	266,290,000
합계	81,920,003,030	77,391,112,621	69,257,435,710	100,840,689,980	100,771,080,050	100,749,292,260

[그림 68] 내자구매 상한액 조정시 수수료 수입 변화

□ 평균수수료 결과

○ 기존의 내자구매 조정원가는 106,083,987,242원이며, 수수료 총액은 182,760,693,010원임

○ 총액계약 최고구간에는 100억의 330% 이상 금액에 캡을 씌워,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단가계약 최고구간에서는 100억의 135% 이상 금액에 캡을 씌워 그 이상의 계약금액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함 => 내자구매 원가비중 58.05%에서 59.54%로 1.5% 증가 효과

□ 중위값 수수료 결과

○ 총액계약 최고구간에는 100억의 190% 이상 금액에 캡을 씌워,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단가계약 최고구간에서는 100억의 130% 이상 금액에 캡을 씌워 그 이상의 계약금액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함 => 내자구매 원가비중 58.05%에서 62.40%로 4.35% 증가 효과

[표 3-36] 내자구매 수수료 상한액 시행에 따른 원가 비중 변화

구분		2019년 조정원가	2019년 수수료총액	2019년 수수료 조정	기존 원가 비중	조정 원가 비중
평균 수수료	총액	69,674,676,282	81,920,003,030	77,391,112,621	85.05%	90.03%
	단가	36,409,310,960	100,840,689,980	100,771,080,050	36.11%	36.13%
합계		**106,083,987,242**	**182,760,693,010**	**178,162,192,671**	**58.05%**	**59.54%**
중위 수수료	총액	69,674,676,282	81,920,003,030	69,257,435,710	85.05%	100.60%
	단가	36,409,310,960	100,840,689,980	100,749,292,260	36.11%	36.14%
합계		**106,083,987,242**	**182,760,693,010**	**170,006,727,970**	**58.05%**	**62.40%**

□ 의료 부문과 같은 타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운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초과징수를 하여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또한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책정할 경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커 보임.

□ 내자구매의 경우 최고구간의 계약건수가 100건 내 · 외정도가 있으나, 기술용역, 공사계약, 맞춤형서비스, 기타시설업무의 경우 10건 또는 없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음

IV

국내·외 타 기관 수수료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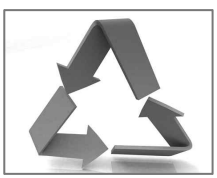

1. 국내 타 기관별 수수료 운영 사례

□ 국내 수수료 운영 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서비스의 이용자(일반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공공요금과 같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 등에 관한 운영현황을 검토함

○ R&D 연구예산을 정부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예산을 각 사업수행자에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은 사업수행자를 선정·평가·관리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연구예산에 포함하여 정부로부터 수령함.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각 사업별 연구예산 대비 관리비용(수수료)의 운영현황을 검토함

○ 정부 특별회계 기관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됨

- 이는 사업성의 정도 및 근거법률에 따라 분류되고 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조달청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기업특별회계에 속함

  * 참고로 조달청 외에 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은 정보통신, 철도, 양곡, 우체국예금사업 등이 있으며, 특허청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특별회계 방식으로,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수입원 없이 모든 비용을 100%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비해 조달청은 관공서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함

- 조달특별회계 결산은 수수료 등의 별도 수입이 발생하므로 일반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결산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실시하는 기업회계결산도 함께하고 있음

-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 등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별 수익·비용 및 손익 등을 산출하고, 결산 결과에 따라 사업별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등의 사항도 검토하고 있음

○ 수수료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유사하게 인건비 등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비용을 제외한 남는 이익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1.1.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서비스 및 주식 등의 상장서비스, 증권시장 관련 정보제공서비스 등 코스피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거래서비스 및 상장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의 약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표 4-1 참조)

* 거래서비스 :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을 개설, 운영하고 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중계

* 상장서비스 : 기업(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KRX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상장서비스를 제공

[표 4-1] 한국거래소 업무절차에 따른 세부내용

세부절차		주요업무
선행절차	지정감사인 감사	중선위가 지정하나 회계감사인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사전준비	대표주관회사계약체결	대표주관회사 선임 및 계약 체결
	정관정비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한 표준정관 참고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선택 및 계약체결
	우리사주 조합결성	
	유가증권시장본부 예비접촉	상장요건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
상장예비심사	상장심사신청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상장심사	계량적, 비계량적 요건심사
	유가증권시장상장위원회 심의	상장 적격성 심의
	상장심사결과 통보	상장신청인과 금융위에 통보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금융위원회에 제출(수리 후 15일 경과되면 효력 발생)
	수요예측 및 발생가격 결정	수요예측 후, 인수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가격 결정
	청약배정 및 납입	납입 후 등기
	증권발생실적 보고	증권발행 실적을 금융위에 보고
상장	상장신청	납입일까지 상장신청서 제출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거래소는 거래서비스에 대하여 거래시점에 서비스의 사용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거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 부과

○ 금융투자회사는 증권투자자들로부터 징수한 증권거래수수료 일부를 한국거래소에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지불

○ 거래수수료는 자본시장법 4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내부의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이는 환매조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결재금액구간별 금액으로 구분의 일정률로 결정하고 있음.

○ 또한, 요율은 각 거래시장 및 거래대상에 따라 상이함. 현재 수수료 체계에 거래건당 기본요금 또는 거래금액에 따른 체감률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상장심사 수수료의 경우 심사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증권의 상장 시 부과하는 상장수수료와 상장이후 매년 부과하는 부과금의 경우 기준시가 또는 평균시가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부과하되 증권가격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체감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함

○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심사수수료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장수수료는 기준 시가총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이상까지로 차이가 크고 금액규모가 클수록 초과금액 10억원 당 금액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표 4-2 참조)

[표 4-2] 한국거래소 상장액에 따른 수수료율 기준

상장할 금액구분 (기준시가총액 기준)	수수료율
500억원 이하	1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5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5,000원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875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0,000원
2,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1,475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5,000원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	2,825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000원
2조원 초과 5조원 이하	8,075만원+2조원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5,000원
5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15,575만원+5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5,000원
10조원 초과	23,075만원+10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000원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016년도 상장심사수수료 인용

* 환매조건부채권 Repo (repurchase paper) 란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 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함.

□ (수수료 운영 시 문제점) 거래수수료는 증권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거래수수료도 함께 올라가는 수수료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거래수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원가(영업비용)는 거래금액과는 무관하게 발생함

○ 따라서, 거래수수료 수준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증권 거래금액이 증가할 때 관련 원가(비용)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증가

○ 수수료 수준(수수료율)이 고정된 경우, 관련 증권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증권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증권거래소의 수수료 수익도 불안정하게 됨.

- 이러한 수수료 수익의 불안정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상장수수료 또한 증권금액에 따른 체감률 및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장되는 증권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로 징수하고 있어, 발생비용 보다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거래수수료의 금액이 변동됨

○ 상장증권금액에 연동한 상장수수료 체계는 한국거래소의 발생원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의 상황(호·불황)에 따라 전체 수수료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 결과적으로,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예탁 및 결제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보다 증권시장의 상황(거래금액)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증권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준(수수료율)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발생원가는 증가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게 됨

1.2.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한 전력거래시장으로 전력 판매자(발전소)와 수요자(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및 전력시장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한 전력은 공급자인 발전소와 수요자 간에 실시간 전력수요 및 발전변동비에 따라 결정된 전력거래가격에 의해 정산(전력시장 운영)

□ 이는 「전기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서비스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와 주주(회원)들로 부터의 회원회비를 통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표 4-3 참조)

[표 4-3] 한국전력거래소 수행사업에 따른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수행사업	ㅇ 전력시장운영 - 전력거래관련 입찰, 계량, 정산, 청구, 지불 등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 전력시장운영 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개정 ㅇ 전력계통운영 - 장·단기 송전망 안정성 평가 및 전력계통 운영계획 수립 - 전력설비고장 대비 운영대책 수립 등 ㅇ 실시간 계통운영 - 실시간 전력수급 균형 및 전기품질 유지 - 24시간 전력계통 감시제어 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지원 등 - 장·단기 전력수급 계획 수립운영 - 전력수요예측 모형 개발 및 운영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

ㅇ 또한,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식에 포함되는 연간 운영비와 전력거래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여기서 전기거래량을 2배수로 나누는 이유는 동일한 전력거래수수료를 전력거래의 공급자(발전사)와 수요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동시에 징수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전기거래수수료 산정 시, 연간 운영비용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등 과 전력거래소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5.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전문개정 2009. 11. 2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의 공급자(발전사)와 수요자(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동일하게 전력거래량 및 전력시장운영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정액제 방식으로 전력거래수수료(0.086원/KWh)를 징수하고 있음

○ 전력거래 수수료 이외로 한국전력거래소의 주주에 해당하는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회원회비도 함께 수령하고 있음

○ 전력거래수수료는 금액이 고정된 정액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전력거래량(전력수요)이 증가함에 따라 총전력거래 수수료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수료 운영 시 문제점)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산정기준은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5대 공공요금에 대한 요금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경우에는 Ⅰ총칙부터 Ⅷ 보칙까지 8개 파트로 구분하여 공공요금 산정방식 제시하고 있음

* 가령,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개별 요금산정기준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전력거래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로 전력시장 운영 시 소요비용(영업비용)과 원리금상환액의 수준을 전력거래수수료로 산정한다는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비용의 세부항목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산정 및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미흡함(표 4-4 참조)

[표 4-4] 한국전력거래소 수수료 산정기준 vs. 공공요금 산정기준

구분	전력거래수수료 산정기준	공공요금 산정기준
산정대상	전력거래수수료	5대 공공요금(전기, 천연가스, 수돗물, 철도운임, 고속도로 통행료)
근거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훈령(137호)
산정기준	- 1항 : 전력거래수수료의 수준: KPX연간운영비÷(전력거래량X2)	Ⅰ. 총칙 Ⅱ. 서비스 분류 Ⅲ. 총괄원가(요금수준)산정 Ⅳ. 회계분리 Ⅴ. 특수관계자거래 Ⅵ. 요금체계

	- 2항 : 연간운영비, 전력거래량의구성 ▸ 총 5줄로 설명	Ⅶ. 요금검증 Ⅷ. 보칙 ▸ 총 17p.에 대하여 설명, ▸ Ⅷ. 보칙에서 개별 공공요금에 대한 별도의 세부 산정기준을 작성하도록 규정
*출처 :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2013) 보고서 원용		

1.3.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근거로 인천에 위치한 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1999년에 설립되고 2001년에 본격적으로 개항하여 공항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음(표 4-5 참조)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기본으로 다양한 항공서비스, 여객들의 공항이용을 지원하는 여객서비스, 공항내 상업시설에 대한 공간임대 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 정부의 수수료 규제대상으로는 항공서비스와 여객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이며, `12년도 기준으로 약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인천국제공항공사 근거법률 및 주요 수행사업

구분	운항서비스[1]	여객서비스[2]	상업서비스[3]	기타서비스
근거법률	**항공법 제86조,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국토부)**		-	-
수행사업	**항공사에 활주로 및 관련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여객을 대상으로 공항이용 서비스 제공**	공항 내 상업시설임대	임대, 유틸리티사업, 해외사업 등
`12년 기준 수익	**303,068백만원 (19%)**	**275,439백만원 (17%)**	809,820백만원 (51%)	193,374백만원 (12%)

1」 운항서비스 :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 별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 등 시설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항공기 이착륙, 정류 및 계류, 수화물처리, 항공안전, 항공기상정보, 여객체크인 카운터 사용서비스 등을 포함

2」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공항의 여객시설 및 출입국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공항 내 상업시설을 위해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로, 공항내 면세점, 식당,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임대료는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수수료 운영 특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항수수료는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수해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정액제 방식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표 4-6 참조)

○ 수수료 항목은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탑승교사용료, 계류장사용료, 제빙장수문관리비, 항행안전시설사용료, 항공기상정보료, 공용체크인카운터 사용료로 구분됨

○ 다만, `13년에 수행된 연구보고서 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항수수료의 각 유형별로 수수료 개정연도가 서로 다른 특정을 보이고 있음

- 예컨대, 착륙료와 조명료는 2006년도 개정하였고, 정류료는 2004년,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는 2005년 등 개정연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검토됨

□ 이는, 수수료를 운영하면서 항목 별로 부분개정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 기관과 같이 수수료 개정 시 전체를 일괄적(일률적)으로 개정하는 것과는 달리 좀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6]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수료 운영체계

종류(개정연도)	수수료 기준(체계)	수수료
착륙료 (2006)	• 당해 항공기 감항증명서에 표기된 최대이륙 중량(단위는 톤,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상)	• 100톤까지 : 톤당 9,000원 • 100톤초과~200톤까지 : 900,000원 +100톤 초과 톤당 8,800원 • 200톤 초과 : 1,780,000원+200톤 초과 톤당 8,600원 • **최소요금 : 150,000원**
조명료 (2006)	• 이·착륙시 조명을 제공받는 항공기 운항편당 균일 요금 • 조명 제공여부는 관제탑에서 결정 혹은 조종사의 요청에 의함 • 항공등화시설 중 진입등 또는 활주로등의 점등을 기준으로 부과	• 편당 124,336원 • 이·착륙시 각각 부과
정류료 (2004)	• 최대이륙중량(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상)을 기준으로 30분 단위 부과(15분 미만은 30분 요금의 50%) • 주기 후 3시간 이내 면제 • 주기시간은 주기장 진·출입 시간으로 계산	• 100톤까지 : 톤당 118원/30분마다 • 100톤 초과 200톤 까지 : (11,800원 +100톤 초과 톤당 100원)/30분마다 • 200톤 초과 : (21,800원+200톤 초과 톤당 80원)/30분 마다

수하물처리시설 사용료 (2005)	• 통과여객이 아닌 항공기의 총 출발여객수 • 여객터미널 내 부대시설인 수하물 검색을 위한 X-RAY, 저울 등의 사용료 포함	• 출발여객 1인당 1,895원
탑승교사용료 (2004)	• 도착 및 출발시 각각 부과 -부대장비(유틸리티) • 사용료는 사용량을 계량하여 별도 청구	• 편당 64,433원
계류장사용료 (2001)	• 차량(동력)이나 장비(비동력)의 공부상 중량 • 1톤 미만은 100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되, 100킬로그램 미만은 100킬로그램으로 간주	• 차량 (동력) -등 록 시 : 1일 톤당 450원 -비등록시 : 1회 출입시 톤당 450원 • 장비 (비동력) -등 록 시 : 1일 톤당 560원 -비등록시 : 1회 출입시 톤당 560원
제빙장수문관리비 (2001)	• 동절기 제빙장액 보관수문을 개폐하는 작업 유지관리에 따른 요금 • 투입인력 및 투입장비에 따라 요금부과	• 제빙계류장 수문관리에 투입된 총비용에서 항공기 사용횟수에 따른 비율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010)	• 항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의 이용료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 별표에서 정한 요금 (서울지방항공청 징수)
항공기상정보료 (2010)	•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사용료	• 기상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금 (항공기상청 징수)
공용체크인카운터사용료 (2001)	• 30분 단위로 사용금액 계산	• 공용체크인카운터 종류에 따라 -벨 트 : 30분당 1,800원 -무벨트 : 30분당 1,300원

□ 또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여객공항 이용료는 국제선 및 국내선에 따라 차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출입국관리 업무에 따른 발생원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제선의 경우에도 출발여객과 환승여객에 대하여 수수료를 각기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납부금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국고(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음(표 4-7 참조)

○ 여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

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수료 징수대상을 수요기관 뿐만 아니라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수수료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표 4-7]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대상 수수료 운영체계

구분(개정연도)	수수료 기준(체계)	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2002)	•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 • 통과여객은 면제	• 국제선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vat 포함) -환승여객 1인당 10,000원(vat 포함) • 국내선 : 1인당 5,000원(vat 포함)
출국납부금	•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성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서 정한 요금(국고납부)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	•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2에서 정한 요금(국고납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수료는 운영·여객 수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도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상업부문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별도로 없어, 매출액 급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수수료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익잉여금 등에 관한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부문)별로 명확한 회계분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작성된 재무정보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1.4.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석유관리원은 1983년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최초 설립되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LPG 품질검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품질보증, 연구용역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표 4-8 참조)

[표 4-8]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 대상 수수료 운영체계

구분	석유 및 LPG 품질검사사업		기타사업
근거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	-
수행사업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용제, 중유, 윤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품질검사	품질보증사업, 연구용역, 의뢰시험 등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검사제품의 ℓ또는 kg당 일정금액을 품질검사 수수료로 정하고 있음(표 4-9 참조)

○ 석유류 검사 수수료는 2009년 개정된 금액이며, 액화석유가스검사 수수료는 2002년 고시부터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시점인 2013년까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9]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류 검사 수수료 운영체계

구분		수수료(검사량당 수수료 징수)
석유류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
	윤활유	• 1리터(그리스는 킬로그램) 당 3.33원
액화석유가스	국내판매물량기준	• 1킬로그램당 0.027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2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265호

○ 품질검사수수료는 산업부 고시를 준용하여, 검사물량(ℓ, kg)에 따라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및 윤활유를 제외하고는 유종별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류대 관련 수수료는 저장용 유류 0.27%,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리터당 단가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항공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은 2002년 수수료를 고시한 시점부터 선행연구가 수행된 2013년까지의 약 11년 동안 수수료 개정이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1.5.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가스안전기술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표 4-10 참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은 검사서비스, 기술컨설팅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교육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년 기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매출액의 41%(정부보조금 제외 시 53%)가 검사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손실보전을 위하여 28,612백만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음

□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4-10] 한국가스안전공사 근거법률 및 주요 수행 사업

구분	검사서비스	기술컨설팅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교육서비스
근거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 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행 사업	가스시설에 대한 완성, 정기, 중간검사, 시공감리, 정밀안전검진 및 진단, 안전성 평가, 제품검사, 기술검토 등	가스시설에 대한 인증심사, 시험 용역, 시험인증, 안전진단 등	가스안전관련 연구용역	안전관리자 및 사용자 등에 대 한 특별교육, 양성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시설, 가스용품 등에 대하여 검사 건당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공사는 매년 수수료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발생원가를 재산정하지 않고 전기 수수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음

□ 검사수수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담당자가 전년도금액에 물가와 원가보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 금액을 제시하면 주무부처에서 검토 후 수수료를 결정함

○ 신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가에 대한 재검증을 통한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종류 및 시설종류(용량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수료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액화가스의 제조(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수수료 예시는 [표 4-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타 기관에 비하여 수수료 개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4-11]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건당 수수료 운영 체계

액화가스의 제조 (충전·저장) 시설	검사 건당 수수료	
	완성검사	정기검사
제조(충전.저장)능력 5톤이하	14만6천원	11만5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9만9천원	14만1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24만9천원	16만5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36만6천원	23만7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50만4천원	31만5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84만9천원	56만7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121만4천원	76만7천원
1천톤초과	추가 500톤마다 14만1천원을 가산함. 다만, 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 500톤마다 12만1천원을 가산함. 다만, 18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 수행된 연구에서 검사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그림 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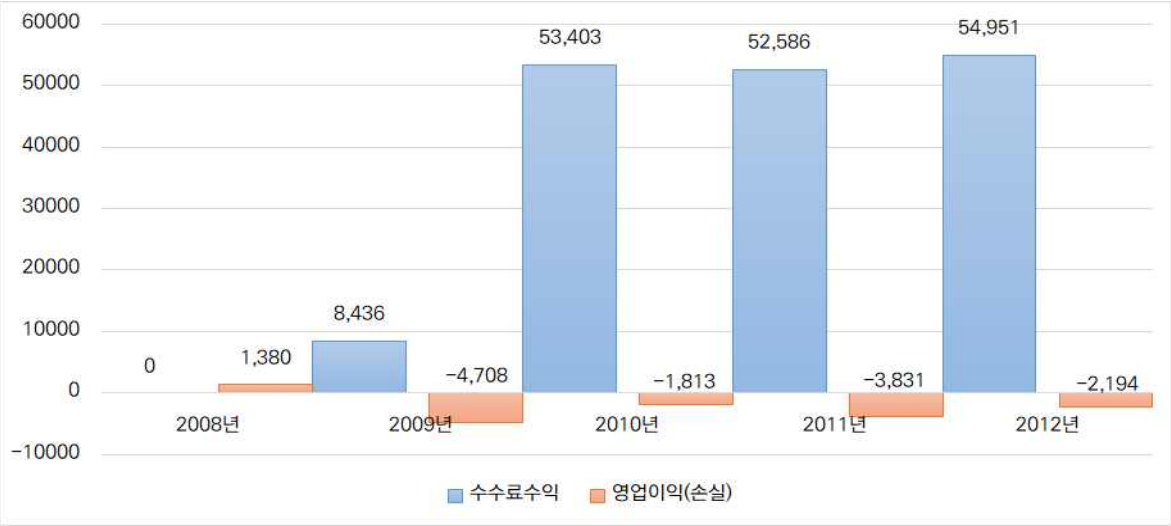

[그림 69]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서비스 수익(손실) 추세 (단위 : 백만원)

○ 주요 원인으로는, 매년 개정하는 검사수수료의 수준이 공급서비스 대비 발생하는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다만, 보다 정확한 수수료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서비스)량을 산정하고 명확한 회계분리에 따른 원가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미함

1.6.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의 가치강화 · 가치확산 · 가치혁신 · 가치공유를 통해 전기안전망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설립됨

○ 전기안전공사는 최상의 전기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책임감,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혁신지행의 조직문화 구현 등의 혁신성, 마지막으로 소통, 존중과 포용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음

○ 또한, 공사계획신고수리,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점검,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자가용)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대행, 자가용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사용전점검,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진단, 전기 안심건물(아파트) 인증제도 등을 핵심 사업으로 운영 중임(표 4-12 참조)

□ 이들은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운영 중임

[표 4-12]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검사서비스
사용전검사	•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유지/운영 상태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점검 (다중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PC방, 병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증축 또는 개축 및 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 수수료
안전진단	• 고객의 요청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공하고,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기설비 개/보수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기안전 관리대행	•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사용 중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6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월정수수료**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는 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검사 등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단, 공사계획신고, 사용전점검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업무이며,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는 ❶사용전검사, ❷정기검사, ❸전기안전점검, ❹안전진단, ❺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로 구분됨(표 4-12 참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및 점검사업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 수행된 연구와 비교검토한 결과 `21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정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표 4-13 참조)

○ 다만, 타 기관들과는 달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수료를 산정기준에 대한 항목별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13]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산정 근거

항 목	수수료 산정 근거 항목
가. 인건비	• 검사·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나. 재료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다. 감가상각비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라. 경상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마.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및 점검사업에 대한 수수료는 세부 업무(서비스) 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표 4-14 참조)

○ 공사의 법정 검사사업, 자가용사업과 일반용사업은 구간(용량) 별 기본료와 단가(정액제)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정밀진단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단가 및 각 계약체결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세부 수수료 별 개정은 2006년 이후, 2011년도, 그리고 최근 2021년 확인한 결과 수수료 기준과 금액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수수료 개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 4-14]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수료 산정 기준

구 분		기본료(원)	kW당 요금(원)		비 고
정기검사 수수료	저 압	94,000		391	ㅇ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수용설비 용량이 200,000kW를 초과 시 200,000kW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kW까지	297,000		591	
	고압 300kW초과	516,000	1,000kW미만	308	
	고압 1,000kW이상	691,000	5,000kW까지	133	
			5,001~10,000kW까지	47	
			10,001~100,000kW까지	22	
			100,000kW초과	7	
사용전검사 수수료	저 압	94,000		391	ㅇ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 합산 적용 ㅇ수용설비 용량이 200,000kW를 초과 시 200,000kW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kW까지	298,000		660	
	고압 300kW초과	559,000	1,000kW미만	315	
	고압 1,000kW이상	678,000	1,000kW까지	268	
			1,001~100,000kW까지	152	
			100,000kW초과	32	

*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2021), 전기안전여기로 수수료 안내 참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수료 수익은 기 수행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08년부터 `12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심)'을 주 업무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업무(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9), 「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지침」(제205호)을 준용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유통정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의 생산·수입 ·

공급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수집 · 조사 · 가공 및 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 2016)

□ (수수료 운영 특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으로 구성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이 공공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 또는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❶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는 상기 언급한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 제137호)에서 적정원가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원가는 조달청과 동일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산으로 산정함(표 4-15 참조)

[표 4-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 산정 기준(근거)

구 분	수 수 료[1] 산 정 기 준
인 건 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20호봉 월 기본급[2]÷월 근무시간×처리시간(업무량)
경 비	▪ 감가상각비[3]+시스템운영비[4]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5%

1」: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 신청 건(품목) 당 산정
- 건당 수수료 = 각 품목 건당 인건비+각 품목 건당 경비+각 품목 일반관리비
2」기본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기본급 의미
3」감가상각비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의약품 유통정보와 관련된 장비의 감가상각비 산출
4」시스템운영비 : 개발비에 유지보수 요율(10%)을 적용하여 연간 시스템 운영비 산정

□ (수수료 감액 조건) 건강보험심평가원의 수수료는 하기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약사법 시행령」)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 약사법령,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에 자료 또는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심사평가원이 업무협력을 위하여 MOU 등을 체결한 외국정부 또는 가입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과의 공동연구기관(개인을 포함)에서 의뢰한 연구에 따른 용역수행자가 관련 계약에 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에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자사의 공급내역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 1회 청구 시 징수대상 수수료 총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
-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또한, 하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 감액

-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

·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

·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❷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신청 수수료는 전자화된 파일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의미

- 공공데이터(데이터셋, Open API 등), 의료데이터(보건의료빅데이터, 원격통계시스템), 의료통계정보(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이 해당됨

□ 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35조(비용부담)의 내용을 기본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규정 제222호(민원처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수수료 운영 특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는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큰 차이는 없으나, 인건비를 일당(월근무)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분석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 센터의 총 좌석수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음 (표 4-16 참조)

[표 4-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신청' 수수료 산정 기준(근거)

구 분	수 수 료[1] 산 정 기 준
인 건 비 (일 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20호봉 월 기본급[2]÷월 근무일수
경 비	▪ 감가상각비[3]+일당시스템운영비[4]+분석SW 비용일당시스템운영비[5]
일 반 관 리 비	▪ (인건비+경비)×5%
좌 석 수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총 좌석 수

1」: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 신청 건(품목) 당 산정
- 일당 수수료(항목별 일당 기준)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좌석 수
2」기본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기본급 의미
3」감가상각비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의약품 유통정보와 관련된 장비의 감가상각비 산출
4」시스템운영비 : 개발비에 유지보수 요율(10%)을 적용하여 연간 시스템 운영비 산정
5」분석SW 비용 : 통계분석 SW의 연간 라이센스 유지비율(30%) 적용

□ (수수료 감액 및 감면 조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는 달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는 감액과 감면 조건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 (수수료 50% 감액 조건) ❶정보공유 등이 관한 MOU 체결기관, ❷「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❸「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❹「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❺「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학술단체(학회) 및 의약단체(협회), ❻보건의료 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수수료 감면 조건) ❶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각 과제별에 한함), ❷「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 병원(해당 과제에 한함), ❸심사평가원 공모전에서 선발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 ❹기관·법인·단체, ❺1년 이내 설립된 신생 창업기업이 해당됨

1.8. 식약청

□ 식약청은 검사수수료는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등의 재료비 등 직접 경비, 인건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원가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식약처가 제시한 원가산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개별 검사기관의 원가를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사기관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인건비, 분석장비 구매·유지비용 등 검사에 필요한 원가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가 상이함

- 식약처가 고시하는 검사수수료에는 검사원의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약 등 재료비 및 분석장비 구매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약처와 민간 검사기관의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함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재료비 및 인건비의 인상, 새로운 분석장비의 구매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기관은 식약처에 변경하고자하는 이유와 해당 수수료의 원가와 관련된 원가산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수수료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함

□ 이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규칙 2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첨부서류 중. 다.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시험·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별표6]을 준용하여 운영 중임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업무(행정) 서비스는 약 270여개로, 이 중 수수료를 받는 업무(서비스)로는 면허, 허가, 승인, 지정, 증명, 신고, 등록, 교부, 검사 등 약 45건(16.8%)에 달함

○ 마찬가지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업무(행정) 서비스는 약 206종으로, 이 중 수수료를 받는 업무(서비스)로는 특허, 허가, 증명, 등록, 승인, 인정, 인증, 검정, 검사, 지정, 증명 등 약 107건(51.9%)에 달함

□ (수수료 운영 특징)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 관련 수수료는 「약사법」제8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ㅗ고시 제2016-129호)를 준용하여, 의약품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제로 징수하고 있음(표 4-17 참조)

[표 4-17] 식약처 의약품 허가 관련 수수료 운영 체계

종목	전자민원	방문우편 민원
3.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신청	6,177,850원	6,828,150원
가. 신약	3,398,150원	3,755,850원
(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1,699,070원)	(1,877,920원)
나. 희귀의약품	2,007,350원	2,218,650원

□ (수수료 인상) 2008년 이후 물가 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었던 의약품 허가 수수료 금액 상향 조정 위해 2016년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 업무 관련 적정 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인상(2016년 개정)

○ 신약의 변경된 수수료는 변경전 414만원이었고, 연구결과를 통해 산정된 적정 수수료는 733만원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682만 8,150원으로 책정 및 반영됨

□ 원가산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항목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됨(그림 68 참조)

○ (노무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 직접노무비: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원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에 지급되는 급료

○ 간접노무비: 직접 검사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감독자 또는 기타 근로자 등의 노동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

- [직접노무비 = 시험검사시간×시간당 노임단가]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 (재료비)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비(시약, 초자 등)로서 당해 시험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

- [재료비 = 재료 소요량×단위당 가격]

○ (경비)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구분되며, 직접경비는 분석장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간접경비는 노무비에 일정한 배부계수를 곱하여 산출함

- 직접경비 :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 간접경비 : [간접경비 = 노무비×배수계] ※ 배수계수 = 당해경비발생액 / 당해 노무비발생액

○ (일반관리비) 검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 = (시험재료비 + 직·간접노무비 + 직·간접경비)×일반관리비율(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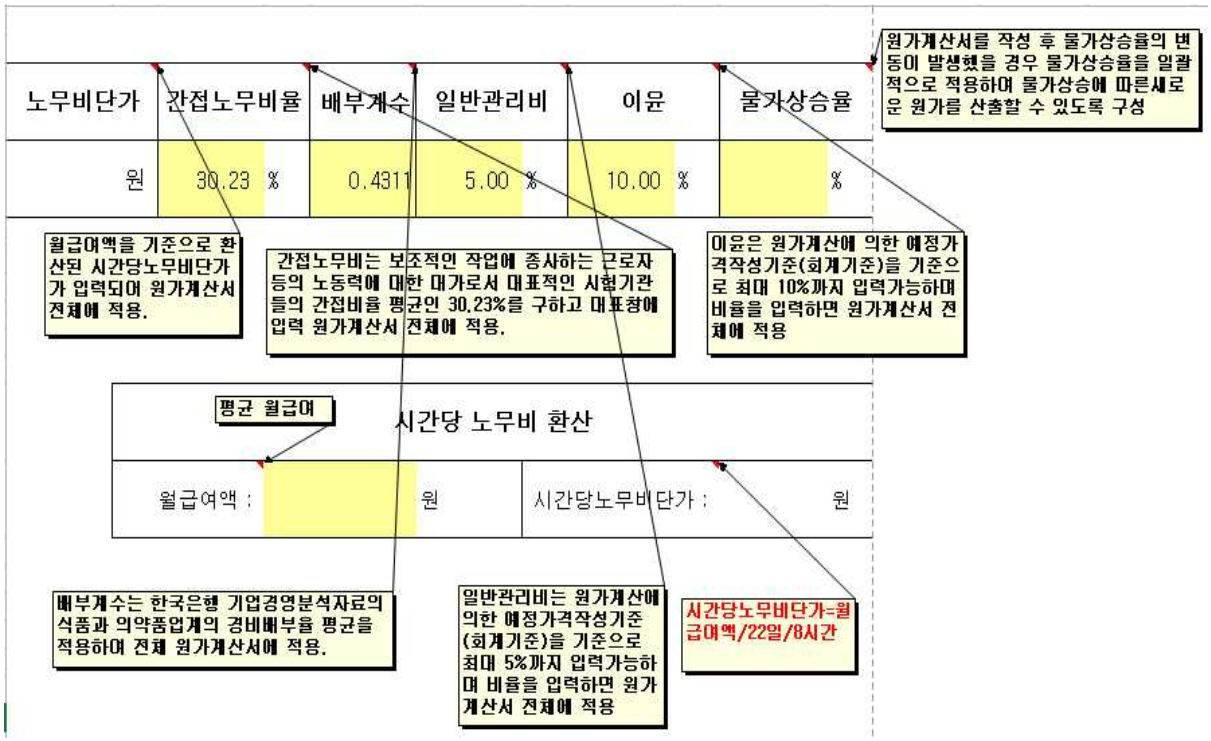

[그림 70] 식약처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출 프로그램

1.9. 특허청(특별회계기관)

□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출원관련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 교부신청료·납부요령,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등록 및 출원료 등의 면제·감면에 대한 분야별 수수료 운영 중

○ 각 분야별 수수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4-18 참조)

[표 4-18] 특허청 수수료 운영 체계

수수료 유형	주요특징	수수료 징수형태
출원관련 수수료	• 기본수수료에 가산료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운영 • 신청료, 추가료, 심사청구료, 재심사청구료, 변경출원, 분할출원, 이중출원, 실용신안 기술평가, 보정료, 기타 수수료 등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 운영	정액제
특허(등록) 수수료	•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기타등록료로 구성하여 운영	정액제
심판관련 청구료	• 심판청구료, 기타청구료	정액제
각종 서류의 등·초본발급신청료	• 각종 서류의 등·초본 발급신청료 등	정액제
PCT 국제출원 수수료	• 국제출원 수수료, PCT 국제출원료,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가산료 등 운영	정액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 등	• 매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해외로 출원을 진행할 경우 각 국가별 정하고 있는 수수료 적용	정액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출원수수료, 국제등록 갱신료, 국제등록 변경신청 등 운영	정액제
출연료 등의 감면 안내	•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면제 대상은 100%, 85%, 70%, 50%, 30% 4년~존속기간(4~9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운영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으로 감면조건 및 증명서류 명시	정액제
납부방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1.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교통기술발전·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진흥원의 수행사업은 국토교통 R&D,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물류신기술, 녹색인증, 교통카드인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의 사업총 73개 사업(603,063억원)을 관계법령에 의해 수행함(표 4-19 참조)

[표 4-1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법령 및 내용

구분	관계법령
국토교통 R&D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건설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통 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물류 신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지정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사목 ·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47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543호)
그 밖에 녹색인증, 교통카드인증, 국토교통기술사업화, 기술거래, 기술평가 등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2021년 현재 기준)

□ (수수료 운영 특징) 진흥원의 핵심 업무인 국토교통 R&D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및 수수료율 운영현황은 [표 4-20]부터 [표 4-22]로 나타낼 수 있음

[표 4-2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관련 수수료율 운영체계

구분	수수료율
건설기술혁신사업	4.00%
플랜트기술고도화사업	4.00%
첨단도시개발사업	4.00%
R&D 정책인프라사업	4.00%
지역기술혁신사업	4.00%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4.00%
고통체계효율화사업	4.00%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4.01%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4.01%
항공선진화사업	3.99%

*출처 : 수수료율은 2013년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 기준임

[표 4-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및 신제품 수수료 운영 체계

구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서류・면접 심사	100만원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100만원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년 현재 기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제10조의 3관련) [별표 3]**

[표 4-2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관련 수수료 관련 법령

구분	수수료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2021년 현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선정・평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 R&D, 해양경찰 R&D, 사업공고 및 평가,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관계 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주요 사업인 R&D 예산 및 관리수수료를 `13년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운영, 평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 수익으로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4-23 참조)

○ 해수부에서 승인받는 관리수수료 또한 각 사업별이 아닌 수수료 총액에 대해서 승인받고 있으며, 각 연구사업 별 관리수수료는 승인받는 수수료 총액을 각 사업에 다시 배부하고 있음

○ 사업별 연구예산 및 관리수수료에 따라, R&D 전체 예산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각 사업관리 수수료 수익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음

* `12년도, `13년도 사업별 연구예산 및 관리수수료 기준, 수수료율은 4.09%, 3.87% 반영

[표 4-2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총 예산 대비 R&D 순 사업비 수수료율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총예산	R&D 순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1]
2009	168,899	161,798	7,101	4.39%
2010	167,049	159,812	7,237	4.53%
2011	185,102	176,827	8,275	4.68%
2012	202,026	194,080	7,946	4.09%
2013	236,166	227,361	8,805	3.87%

1」 **수수료율 환산** : (관리수수료÷R&D 순사업비)x100%

□ 상기 데이터는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연구를 수행한 `13년도에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최근 시점에 어느 정도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총예산 대비 R&D 순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관리수수료(평균 7,872백만원)나 수수료율(평균 4.31%)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음

○ 이는 결국,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수수료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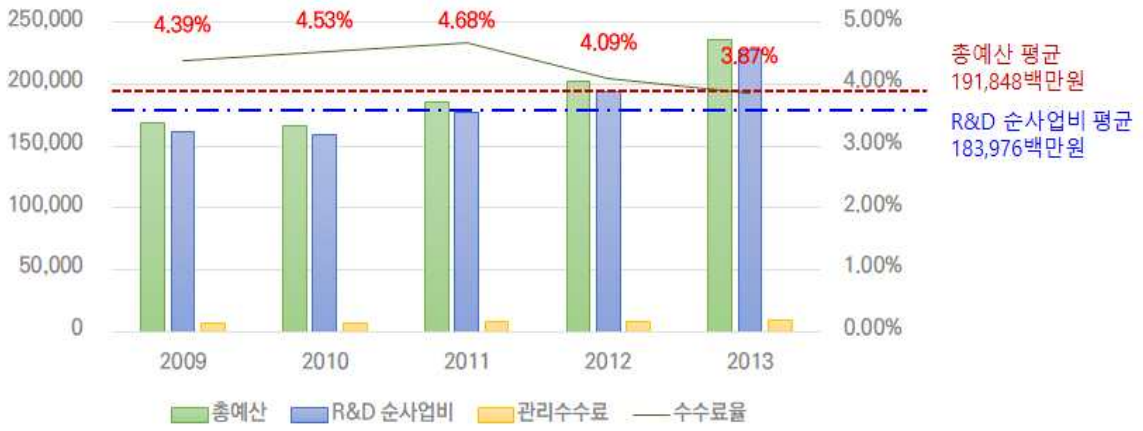

[그림 7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년간 수수료율 변동 현황

□ 또한, `12년 기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R&D 예산 및 관리수수료 현황은 [표 4-24]와 같음

○ 다만, 적정수수료율에 대한 여부는 각 기관별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업무량을 산정하고 원가도 함께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표 4-24]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단위 : 백만원)

연구사업	총예산	R&D 순수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해양에너지 및 자원이용기술개발	38,250	36,483	1,767	4.84%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34,420	33,655	765	2.27%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31,050	29,615	1,435	4.85%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25,898	24,668	1,230	4.99%
해양환경기술개발	23,880	22,777	1,103	4.84%
대형해양과학조사선건조	17,960	17,726	234	1.32%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10,203	9,732	471	4.84%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6,000	5,723	277	4.84%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5,100	4,864	236	4.85%
지역R&D역량강화	4,200	4,006	194	4.84%
첨단물류기술개발	2,430	2,318	112	4.83%
국제공동연구	1,595	1,521	74	4.87%
해양연구기획	1,040	992	48	4.84%
합계	**202,026**	**194,080**	**7,946**	**4.09%**

□ 상기 표를 보면, 진흥원에서는 각 연구사업 별 관리수수료는 승인받은 수수료 총액을 각 사업에 배부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12년 기준으로 사업별 연구예산 및 관리수수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R&D 예산의 일정률(4.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각 사업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 진흥원의 관리 수수료율은 주무부처나 해당기관에서 수수료율을 특별히 규정한 비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의 5% 범위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설정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리수수료율은 최소 1.32%에서 4.99%까지 다양한 범주로 설정하여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각 R&D 예산 사업별로 업무(평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원가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1.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9년 5월에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기술화사업, 국제협력, 규제혁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산업전문 인력양성 등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종합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임

□ 진흥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을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중기부 R&D 규정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부속요령」을 준용하고 있음(그림 70 참조)

[그림 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규정체계 및 내용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대행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 관련 정책연구의 업무와 기술센터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은 정부대행 업무로부터 발생하고, 기관의 정부대행 업무는 산업기술, 산업혁신 등에 대한 수탁용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정부대행사업의 일부로, R&D 예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예산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무부처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진흥원은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수료율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최근 연구사업 별 수수료율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13년도 기수행된 공공기관 수수료 운영 체계 분석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음

○ 또한, R&D 예산관리 내역은 기관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12년도 연구수행사업들 중에서 평가 관리비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계상된 것만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검토하였기에, 실제 '13년부터 최근까지 R&D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나 예산내역 체계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표 4-2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단위 : 백만원)

연구사업	총예산	R&D 순수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67,382	63,624	3,758	5.9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57,961	56,570	1,391	2.46%
성장동력기반구축사업	44,871	43,942	930	2.12%
지역혁신센터(RIC)사업	21,703	21,215	488	2.30%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11,881	11,650	231	1.98%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사업	11,327	11,100	227	2.05%
탄소밸리구축사업	11,068	10,850	218	2.01%
기술확산지원사업	10,675	9,600	1,075	11.19%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사업	10,427	10,030	397	3.96%
초광역연계3D융합사업	8,910	8,600	310	3.60%
로봇산업클러스터사업	8,111	7,872	239	3.03%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7,371	7,213	158	2.19%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	6,755	6,600	155	2.36%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5,799	5,622	177	3.14%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및성과확산사업	2,986	2,900	86	2.9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1,957	1,905	52	2.72%
수출전략형FGCV연구개발사업	1,484	1,425	59	4.11%
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	25	25	0.33	1.38%
합계	290,693	280,743	9,951.33	3.5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타 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수수료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비율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의 5% 내외(19개 사업, 평균 3.32%)에서 관리수수료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수료율은 최소 1%대에서 최대 11%까지 수수료율의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각 사업별 예산에 따른 평가나 관리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음

1.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09년 2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설립된 기관으로, 미래가차와 국민의 행복을 선도하는 산업기술 R&D 혁신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래 신시장에 대응하는 R&D 중심으로 업역을 확장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비스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행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성과확산으로 R&D 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을 위해 산업기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파트너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 의거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및 관리 등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 한 층 강화함(표 4-26 참조)

[표 4-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수행 근거법률

구분	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녹색인증평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기술성 평가
근거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4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수행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 평가 및 관리업무 수행	녹색인증제 인증 평가업무 및 인증범위 개정 실무작업 수행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해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평가 업무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수익 창출원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표 4-27 참조)

○ 이는 R&D 예산 전부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외부로 집행되는 R&D 예산은 제

외하고 관리 수수료 성격을 가진 기획이나 평가관리비를 관리원의 매출로 보고 있으며 즉, R&D 예산에 대해서는 순액으로 인식함

[표 4-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단위 : 백만원)

연구사업	총예산	R&D 순수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32,500	223,530	8,970	4.01%
부품소재기술개발	156,523	152,583	3,940	2.58%
SW컴퓨팅산업원천	141,265	138,890	2,375	1.71%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	132,699	130,595	2,104	1.61%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19,350	117,915	1,435	1.22%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원천	107,450	103,974	3,476	3.34%
산업고도화기술개발	90,793	88,793	2,000	2.25%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	87,350	83,571	3,779	4.52%
제조기반산업원천	86,090	82,719	3,371	4.08%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	85,076	82,576	2,500	3.03%
산업소재산업원천	73,290	69,950	3,340	4.77%
로봇산업원천	68,478	65,900	2,578	3.91%
구매조건부기술개발	64,500	63,270	1,230	1.9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개발지원	58,433	57,709	724	1.25%
세계선점핵심소재개발	57,378	56,303	1,075	1.91%
정보통신미디어산업원천	41,322	40,835	487	1.19%
지식서비스/usn 산업원천	37,946	35,974	1,972	5.48%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원천	35,024	34,615	409	1.18%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	31,700	30,870	830	2.69%
…	…	…	…	..
합계	1,707,167	1,660,572	46,595	2.78%

주) `12년에 편성된 R&D 예산사업 67건 중 상위 19개 사업대상으로 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관리수수료는 평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실경비를 산정하여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예산별 수수료율의 차이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러한 이유는 산정된 경비를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주무부처는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평가원에서 제시한 R&D 예산목록과 예산금액 관리수수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각 프로젝트 별로 실제 예상되는 관리수수료에 해당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액으로 승인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1.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에너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임

○ 특히,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에너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사업은 「에너지법」제11조, 제14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의2, 제20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등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은 R&D 예산을 토대로 사업기획, 평가·관리, 정부수탁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표 4-28 참조)

* 평가·관리 업무(서비스)는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너지인력양성,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에너지인력양성,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방폐관리기술개발, 원천기술혁신, 에너지전문인력양성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평가원 매출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평가원의 평가·관리 업무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승인받은 R&D 예산 전체로 인식하지 않고, 외부로 집행된 순금액을 제외한 R&D 예산에서 평가·관리비를 매출로 인정하고 있음

[표 4-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사업 별 수수료 운영 체계

(단위 : 백만원)

연구사업	총예산	R&D 순수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에너지자원융합원천	214,225	208,050	6,175	2.97%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185,348	179,848	5,500	3.06%
원자력융합원천	92,445	89,845	2,600	2.89%
전력산업융합원천	67,386	64,286	3,100	4.82%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42,000	40,965	1,035	2.53%
에너지인력양성	26,378	25,848	530	2.05%
IGCC실증플랜트	23,000	22,700	300	1.32%
글로벌전문기술	19,005	18,511	494	2.67%
원전기술혁신	16,000	15,600	400	2.56%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15,667	15,537	130	0.84%
에너지인력양성	15,371	15,037	334	2.22%
에너지국제공동연구	12,760	12,450	310	2.49%
방폐관리기술	12,370	12,170	200	1.64%
에너지국제공동연구	8,099	7,800	299	3.83%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2,306	2,192	114	5.20%
에너지전문인력양성	1,547	1,497	50	3.34%
합 계	**753,907**	**732,336**	**21,571**	**2.95%**

○ 평가원의 수수료율은 R&D 수행하고 있는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 사업 예산에서 5%이내 정도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수수료율을 결정하여 관리수수료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로 관리수수료를 검토 승인 받고 그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형태임

- '13년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원에서 제출한 R&D예산 목록을 검토한 결과 연구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세부 단위(프로젝트) 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정률제로 정해서 관리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1.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09년 8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합 · 설립함

□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 사업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음

□ (수수료 운영 특징)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부출연사업을 비롯해, 누리꿈스퀘어와 인증평가서비스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정부출연사업은 다른 R&D 예산관리 기

관과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을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 예산만을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집행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한 별도의 평가·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음

1.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09년 9월 설립되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의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임

□ 현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요사업내역 및 각 사업의 수행근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및 제8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준용하고 있음

○ R&D 예산관리 사업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녹색인증은 녹색인증제 신청자에게 평가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수수료 운영 특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R&D 예산액과 관리수수료를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음(표 4-29 참조)

○ 관리수수료는 `13년 당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과 `12년에 각각 관리에 대한 수수료율은 일부 조정되기도 했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최대 1%에서 4% 수준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연도별로 4개년 간 R&D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관리수수료율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원은 각 단위사업에 대하여 관리비용 예산에 따라 정액을 관리수수료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2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총사업 대비 R&D 사업 수수료율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예산	R&D 순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2009(기관설립)	27,612	26,009	1,603	6.16%
2010	109,183	104,977	4,206	4.01%
2011	137,903	134,586	3,317	2,46%
2012	154,134	150,119	4,015	2,67%

○ '11년 대비 '12년도 관리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관리수수 금액이나 수수료율 변동에는 신설된 연구사업 중,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표 4-30, 그림 71 참조)

* GoldenSeed 프로젝트는 예산대비 수수료율이 35.42%이나, 이는 '12년에 시작된 10년 동안의장기 프로젝트로써 초기 기획단계의 비용 발생 때문으로 검토됨

[표 4-3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 별 수수료 수익 증감율

(단위 : 백만원)

연구사업	2011년		2012년		수수료증감 (11년 대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생명산업기술개발	894	1.74%	595	1.15%	△0.59%
식품기술개발	632	2.91%	785	2.79%	△0.12%
첨단생산기술개발	597	3.52%	600	3.08%	△0.44%
수출전략기술개발	594	3.52%	570	3.09%	△0.43%
수산실용화기술개발	254	0.00%	360	3.12%	3.12%
기술사업화지원	226	2.61%	0	0.00%	△2.61%
한식세계화	120	2.39%	135	3.09%	0.7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	120	3.09%	신설
융복합연구센터지원	-	3.09%	0	0.00%	△3.09%
GoldenSeed프로젝트	-	-	850	54.84%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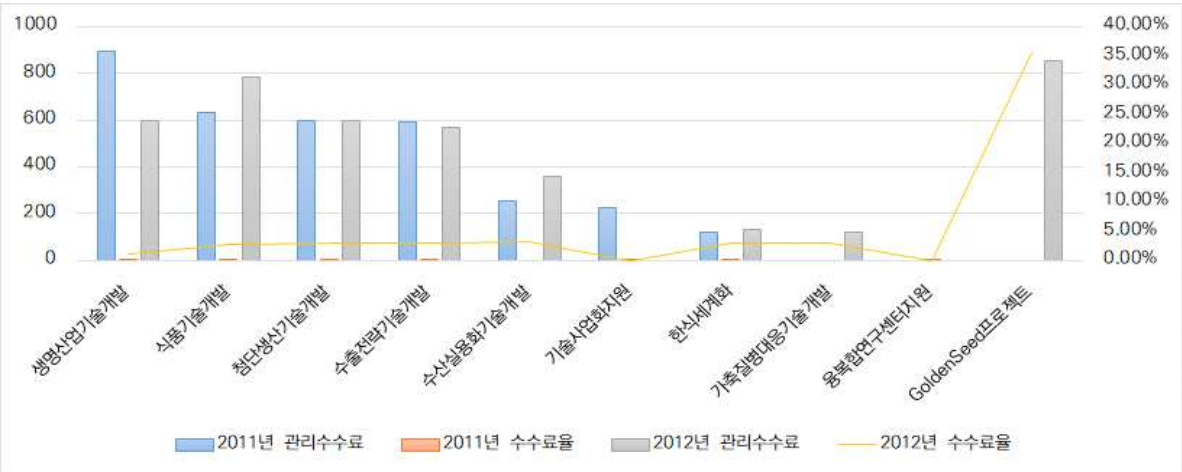

[그림 7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예산에 따른 관리수수료율 변동

○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별로 R&D 예산 대비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1.17.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소, CCS)

□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기관은 `19년도부터 기술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정액제 형태로 책정하여 운영 중임

○ 영세한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때,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납은 평가시작 시점에 40% 기준에서 첫 번째 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50%, FAD 발표 전에 나머지 10% 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전약 혹은 환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4-31, 표 4-32 참조)

* STA가 신속한 심사로 전환되었을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고 있으며, NICE 판단 결과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 실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 환급

[표 4-31]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대상물품 별 수수료 운영 체계

대상물품(Product)	수수료(£)	환산(KOR)
Single Technology Appraisals(STA)	126,000	170,212,140원
Fast Track Appraisals(FTA)	88,000	118,878,320원
Cancer Drug Fund reviews(CDF-R)	88,000	118,878,320원
Rapid Review(PR)	88,000	118,878,320원
Multiple Technology Appraisals(MTA) - Standard	188,000	253,967,320원
Multiple Technology Appraisals(MTA) - Complex	251,000	339,073,390원

[표 4-32]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영세기업 대상물품 별 수수료 운영 체계

영세기업 대상물품(Product)	수수료(£)	환산(KOR)
Single Technology Appraisals(STA)	31,500	42,541,695원
Fast Track Appraisals(FTA)	22,000	29,711,660원
Cancer Drug Fund reviews(CDF-R)	22,000	29,711,660원
Rapid Review(PR)	22,000	29,711,660원

○ 의약품 관련하여, 주요 국가별로 운영 중인 수수료는 유형별로 금액의 차이는 1억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나, 모든 국가가 대부분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음

2.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

2.1.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

□ (수수료 감면 제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으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동일한 감면률이 적용(국토매일, 2021.1 기사 참조)

○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만 적용되며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가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

□ (운영취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함

□ (운영절차) 수수료 감면 계획을 위해 사전에 국토부 장관 승인과정을 거쳤으며,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임

2.2. 행정안전부

□ (수수료 감면제도)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검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7월부터 2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결정(정책브리핑, 2010.6 기사 참조)

○ 정부민원포털 'G4C'(8월부터 '민원24'로 명칭 변경 예정)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47종에 달함

○ 수수료 면제 민원은 학사증명(7종), 고용·노동(6종), 검찰사건기록(8종), 산림관리(1종) 등 4개 분야이며, 300원에서 최고 3만 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특히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1만 원 이상 고액 사무는 5종이 해당됨

□ (운영취지) 취업준비생과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성적 · 졸업증명 발급, 직업소개사업 관련 사무가 면제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

2.3. 에너지 공단

□ (수수료 감면제도) 산업부와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이투뉴스, 2020.5 기사 참조)

○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천㎡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 중소 · 중견기업 건축주다. 신청 시 인증수수료의 30%를 감면

○ 공단과 산업부, 국토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하는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할 시,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의 최대 100%까지 감면

○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전인 오는 2024년까지 인증 신청 건에 한해 적용되는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취득 등급에 따라 납부한 인증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가능

□ (운영취지)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개인 ·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줄 수 제도를 적극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수료 감면제도)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함(`20.6)

* 무선국은 무선으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각종 통신용 기지국, 무전기, 레이다 등)를 말하며,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가사 등 활용목적으로 가열·절단·세척 등에 전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용접·접합·절단기 등)를 말함

○ 과기정통부는 검사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하여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임

- 이에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년도 검사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표 4-33 참조)

* 검사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함

[표 4-33] 과기정통부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검사기관	중앙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
검사대상 (무선국 시설자 기준)	▪ 국가기관 ▪ 방송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지자체·공공기관 ▪ 항공·선박사 및 개인 소유자 등(감면 대상)
수수료	▪ **국고귀속**	▪ **검사업무 등 운영경비에서 충당**

○ 약 2.7만개의 무선국이 '20년에 한해 검사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7.4억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파진흥원은 검사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표 4-34 참조)

[표 4-34] 과기정통부 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대상 주요 분야

구 분	주요 사용 분야
선 박 국	소규모 어업용, 낚시용, 여객 및 화물 운송용 등
항공기국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전파응용설비	천막·비닐·박스 제조업, 용접업, 냉동식품업, 산업 부품제조업 등
기 타	건설·토목 등 공사현장(덤프트럭·포크레인·레미콘·크레인), 소규모 영업장(자동차학원·버스·택시, 가스·주유·다방·마트), 마을회관 안내방송, 아마추어무선, 전파실험 등

2.5. 특허청

□ (수수료 감면제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70% 감면,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등록료 50% 감면해주고 있음(표 4-35 참조)

○ (기타감면) 특허청은 상술한 수수료 감면제도 외에도 기타 감면제도를 운영 중임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개인 · 중소기업(70% 감면),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50% 감면)
2.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70% 감면)
3. 단, 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기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

·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 면제

·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만65세 이상인 자 : 85% 감면

· 개인 및 중소기업 :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 : 50% 감면

· 중견기업 : 30% 감면

[표 4-35] 감면대상자 및 수수료

구 분	출원료·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최초 3년 분)	연차등록료 (4년차분 이후)
•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학생, 등록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 군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면제(연간 10건 이하) *특허·실용신안 1출원당 청구항 30개 이하 시 심사청구료 면제 *복수디자인 출원 시 1출원당 디자인 3개 이하 면제	50% 감면 (4년~ 존속기간)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85% 감면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 감면)	
• 개인	70% 감면 (연간 20건 초과시 출원료 30% 감면)	
• 중소기업	70% 감면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를 출원	50% 감면	
• 기술신탁관리기관 은행 (개인·중소기업 등 대상 IP 금융 실행 시)	-	
• 중견기업	30% 감면	30% 감면 (4~9년)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20% 추가감면 (4~6년)

*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kpo/HtmlApp?c=52603&catmenu=m05_02_06_03)

□ (운영취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

○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존재

○ 특허청은 이러한 중견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중견기업에 의한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데, 이들 기업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

2.6. 조달청

□ (수수료 감면제도)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관련하여 수수료를 면제, 감경하는 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운영 중임

○ (면제대상) 조달수수료 면제대상은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국내 전통과 관련된 제품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가 해당됨(학생대상 서비스는 `21.12.31까지 고지 유예)

○ (감경대상) 조달수수료 감경대상은 선급선납을 동시에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감경하고 있는데, 선납비율(감경율)이 30%이상~50%미만은 8%, 50%이상~70%미만은 14%, 70%이상인 경우에는 20%로 정하고 있음

○ (기타항목) 그 밖에 조달수수료 감면이나 할증 항목으로는 리스계약항목,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 대행, 제안서 기술평가 대상 서비스(SW 사업), 장기분할대지급신청 시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운영 중

3. 조달청 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 체계 정립

3.1. 공공기관 수수료 운영사례 분석종합

□ 공공기관 대상 수수료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요 이슈사항은 ❶수수료 산정기준 및 산정 시 업무(서비스) 구분 불명확, ❷원가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 부재, ❸수수료에 관한 재산정 및 개정 등 적정성 검토가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72 참조)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 마련(일관성, 객관성 등 확보)

- 총 수수료 수익은 수수료단가와 공급량으로 결정되므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시 수수료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수익은 수요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음
- 반면,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정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 공급량 증가에 영향을 받아 비용이 탄력적으로 증감할 여지가 낮음
- 따라서,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수료단가는 수요와 발생비용 변동에 따라 재산정 및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수수료 개정기간 정비

- 수요환경(서비스제공량) 및 비용환경(발생원가수준)의 변동에 따른 수수료의 개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 수익과 비용 간의 정합성이 낮아질 우려 존재
- 수수료 산정시기 및 재산정 시기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 산정체계 및 기반 마련

수수료 산정기준 구체화(재점검)

- (목적 및 대상) 수수료 산정대상 제공업무(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비스의 범위 및 영역에 대한 구체화
- (분석기초자료) 서비스 산정대상 사업부문 결산보고서(예산) 등 수수료 산정 및 원가계산의 기초자료 구체화
- (수수료 계산) 각 원가항목별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산전기준(계산방식) 및 체계 정립
- (부과방식) 서비스 수요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 일관성 유지
- (적정성 검증) 해당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증 및 절차 체계화

[그림 74]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

○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제외하고, 일관된(체계적) 수수료 산정기준 산정 결과만을 제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고,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산정기준의 구체성 부족

○ 또한, 상기 검토한 공공기관 모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업무(서비스) 구분 및 회계분리 기준도 미흡한 수준이며, 회계분리를 하고 있더라도 수수료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회계를 구분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수수료의 최종 개정시기 관점에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요환경(공급량)의 변화 혹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과거 수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환경과 비용발생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기관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외부적 요구로 인해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와 수수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조달청의 경우,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경과기간이 최대 11년 이상 지난 기관도 존재하므로, 개정기간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표 4-36, 그림 73 참조)

[표 4-36] 공공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

구분	수수료	수수료 산정기준	수수료 개정 경과기간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상장수수료	없음	1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예탁수수료	없음	3년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있으나, 구체성 부족	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수수료, 여객수수료	없음	12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반입수수료	없음	3년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수수료+의뢰시험료	없음	11년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없음	11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수수료+검증수수료	없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수수료+검증수수료	있으나, 구체성 부족	7년

*출처 :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2013) 보고서 재구성

[그림 75] 조달수수료 개정 연혁

□ 조달청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달수수료 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하면 수수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참고할 만한 세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74 참조)

○ 단순히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결정 및 감면, 조달서비스 영역별 수수료율을 표로만 제시하고 있어,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유사한 수수료 산정기준(매뉴얼) 및 체계 정립 필요

- 특히, 향후 용역분야의 기존 수수료 징수대상을 수요기관에서 참여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한 바 있어, 수수료 산정체계 및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혹은 매 3년 마다 수수료 적정성 검토 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금액구분	총액	단가 (일반,3자,MAS)	비고
2천만원까지	210,000 원(정액)	0.54(정률)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합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2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530,000 원(정액)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초과	0.38	0.37	

✓ 수수료 산정 방식 혼용(정액제+정률제) → 일관성 문제

✓ 수수료율만 제시, 산정기준이나 방법 부재 → 신뢰성 문제

✓ 수수료율 수준 및 체계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 부재 → 수익-원가 정합성 문제

[그림 76]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의 개선 필요성

□ 상기 [그림 75]의 조달수수료 개정연혁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관리를 비롯해서 기술용역, 총사업비 검토, 나라장터 수수료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되었고, 이후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수수료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됨

○ 다만, 개정된 연도를 보면, 정기적 혹은 주기적으로 개정해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조달수수료 관련 개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하는 내용도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수수료 산정체계(기준) 부재나 개정기간의 문제는 공공기관 또는 요금산정기

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산정으로 이어져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야기(그림 77 참조)

○ 수수료 산정에 대한 일관성, 논리적 정합성, 투명성을 저해하며, 이에 따른 수요기관(수수료지급대상, 승인기관 등) 입장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신뢰성 감소

[그림 77] 수수료 산정체계 및 기준 부재에 따른 key issues

□ 따라서, 업무(서비스) 관련 발생원가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일관성)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수수료 산정체계 재점검 및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❶사업의 목적과 대상 명확화, ❷수수료 산정 및 원가계산에 기초가 되는 근거 제시(예컨대, 심평원과 같이 산정근거 및 기준 마련), ❸원가항목별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산정기준 제시, ❹수수료 부과방식 제시, ❺수수료 결정의 적정성 검증 등의 체계 확립

○ 사업의 특성이나 시장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기준과 개정기간[수수료 산정 전·후러 주기적인 검증 필요] 관련 규정 병행 검토

○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 여부 재점검

○ 참고로, 기재부는 2007년 수수료의 협의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시에서 공공수수료의 산정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는 공공기관 수수료의 산정 시, 발생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체계나 기준에 대한 구체성, 사업의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정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해당 시점에서의 수수료율을 검토 및 결과환류

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수수료라는 것은 제공되는 업무(행정) 및 서비스를 통해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상자나 업무(행정)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예. 심평원과 같이 수수료 산정근거 및 기준 마련 要)

□ 한편, 조달청을 비롯해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수수료 징수대상 사업이나 서비스 외에도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수수료 징수대상 업무나 서비스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76 참조)

○ 이로 인해,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수익(수수료 수익 범위)과 서비스 관련 비용(업무나 서비스 활동에 따른 비용(원가)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독점 및 정부위탁사업, 특별회계기관 등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사업범위나 영역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원가비용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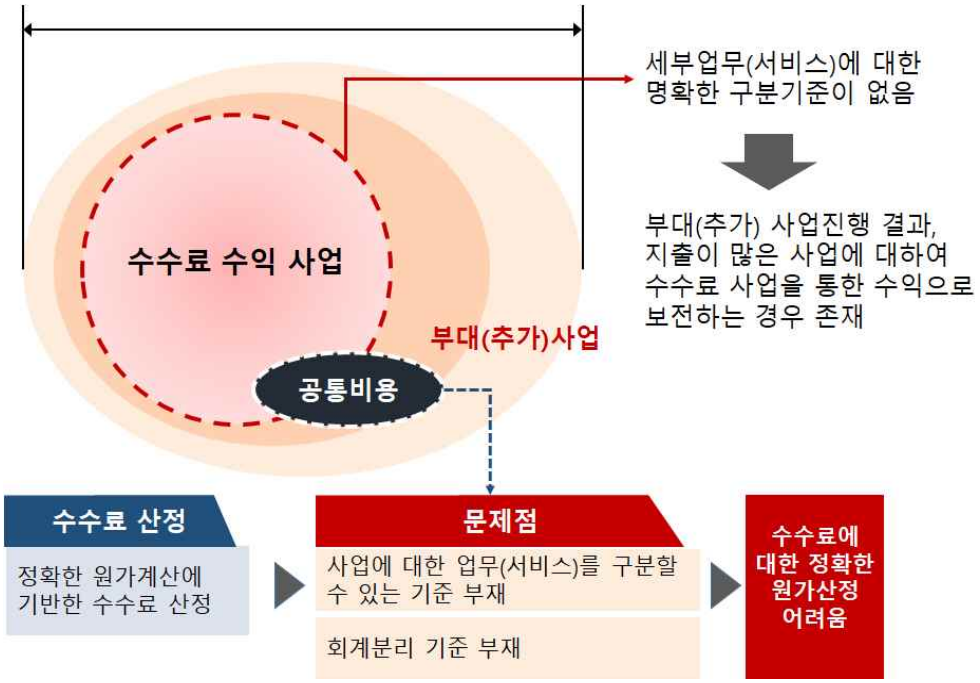

[그림 78] 업무 및 서비스 구분기준의 불명확화로 인한 issues

○ 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기관 별 특정 수행 업무에 대하여 해당 활동이 수수료 사업에 해당되는지 혹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하며, 수수료 수익에 연관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통해 원가를 보전하려는 문제 상존

- 즉, 수수료 관련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서비스) 기준 및 회계분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

□ 마지막으로, 수수료 개정기간 관련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대비 수요환경(서비스 공급량) 및 비용(발생원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적정 수수료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원가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의 수수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관들이 존재

○ 이 중에서 3년 이상 수수료를 개정하지 않은 기관들은 '이용자의 인하요구가 없음', '전력거래량 증가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국민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개정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환경 및 원가에 대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공공수수료 수준이 관련 비용(원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정(예. 인하)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발생원가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초래할 수 있음(그림 7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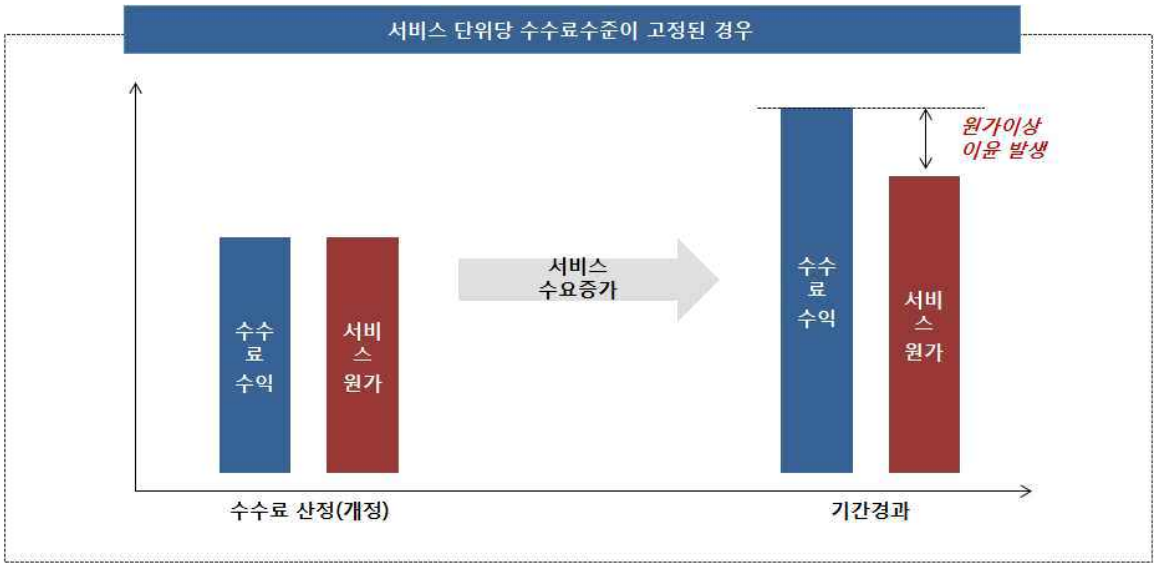

[그림 79] 기존 공공기관 별 수수료 적용상 문제

□ 서비스에 대한 총 수수료수익은 수수료단가×공급량으로 결정되므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단가를 조정(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총 수수료 수익은 수요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 반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의 공급량 증가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음

□ 따라서 업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단가를 수요 및 발생비용 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재산정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 및 검증기간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 이에 조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별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❶합리적이고 일관된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❷업무 및 서비스 구분 및 회계분리 기준 명확화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 ❸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❹산정 이후 사후관리(주기적 혹은 정기적 수수료 재산정하거나 관련법령 및 규제환경 개선 등) 체계 마련을 통한 수수료의 합리성 및 투명성(신뢰성, 왜곡방지 등) 제고 필요(그림 78 참조)

[그림 80]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To-be 모델

3.2. R&D 사업 관련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

□ R&D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별 수수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R&D 예산이 높을수록 관리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리수수료는 대부분 정액제로 운영 중이며, 각 세부단위별로 수수료율로 환산해볼 때 약 5% 내외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의 수준은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반드시 사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R&D 사업의 예산규모가 클수록 연구과제의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한 평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음

□ 한편, 대부분의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해당 사업의 예산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각 단위사업(프로젝트)별로 예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관리·운영 수수료로 보전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표 4-37, 표 4-38 참조)

[표 4-37] R&D 수행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1)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총예산	R&D 순사업비	관리수수료	수수료율 환산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15,685	2,058,448	57,237	2.78%
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53,907	732,336	21,571	2.95%
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12,387	396,510	15,877	4.00%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0,692	280,742	9,950	3.54%
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2,026	194,080	7,946	4.09%
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4,134	150,119	4,015	2.67%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4,243	264,243	-	0.00%
8	한국연구재단	2,838,257	2,797,845	40,412	1.44%
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79,188	272,201	6,987	2.57%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2,266	225,850	6,416	2.84%
11	한국콘텐츠진흥원	64,884	61,228	3,656	5.97%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1,130	41,130	-	0.00%

[표 4-38] R&D 수행기관 별 수수료 운영체계 분석종합(2)

주무부처	기관명	관리수수료 체계(기준)	관리수수료 형태	정산/이월 여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 대하여 주무부처 승인 *승인총액에 대하여 사업별 관리비용을 임의배부	각 사업별 예산액의 일정률*	정산(차기 수수료에 차감)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 대하여 주무부처 승인 *승인총액에 대하여 사업별 관리비용을 임의배부	각 사업별 예산액의 일정률*	정산
농림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각 예산 별로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음	정액제	정산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각 예산 별로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음	정액제	정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액제	정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액제	정산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별도의 관리수수료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예산 없음	N/A	정산
	한국연구재단	각 예산 별로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음	정액제	정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각 예산 별로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음	정액제	정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① 각 사업별로 관리수수료를 승인 Case ② 특정사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사업(수수료)으로 해당 비용보상	정액제	정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예산 별로 평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음	정액제	정산
보건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별도의 관리수수료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는 예산 없음	N/A	정산

* 사업별 예산액의 일정률 : 관리수수료 총액에 대하여는 발생비용을 고려한 정액을 승인

□ 또한, R&D 사업예산은 전부 외부로 집행하고, 평가·관리 업무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신청하여 보전받기도 함(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R&D제작지원)

○ R&D 사업의 예산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운영비를 산정하여 수수료 총액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며, 이 경우 세부 사업별 수수료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부함

○ R&D 예산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경우, 공공기관은 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도 함

□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모두 예산관리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결신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에 반납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수지차보전의 형태로 공공기관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음.

*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은 R&D 예산 관리 수수료 총액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결산 시 발생비용 대비 초과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국토부와 별도 정산을 실시함

- 이를 통해 R&D 예산 관리사업의 총액 측면에서 발생원가에 비하여 과다한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대상인 나머지 기관들도 승인금액과 실제 발생비용의 차이에 대하여 별도 정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정산규정 중, 수수료 초과수익 분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차기 수수료 수익에서 차감하는 등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총액에 대한 과다 수수료 수익을 방지하고 있음

○ 다만, 수수료를 운영하는 특별회계기관의 성격을 가진 조달청이나 공공기관들은 실제 예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정비(인건비, 경비 등)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에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일정률을 적용한 수수료 산정방식인 경우, 발생한 원가와 수수료 수익의 차가 발생할 수 있음(그림 79 참조)

○ 이로 인해, 수수료를 운영하는 기관은 수수료 총액에 대해서만 수수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세부 단위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는 임의적 비율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 시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원가)나

수익 관리가 체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공공기관의 자금 및 정부예산의 비효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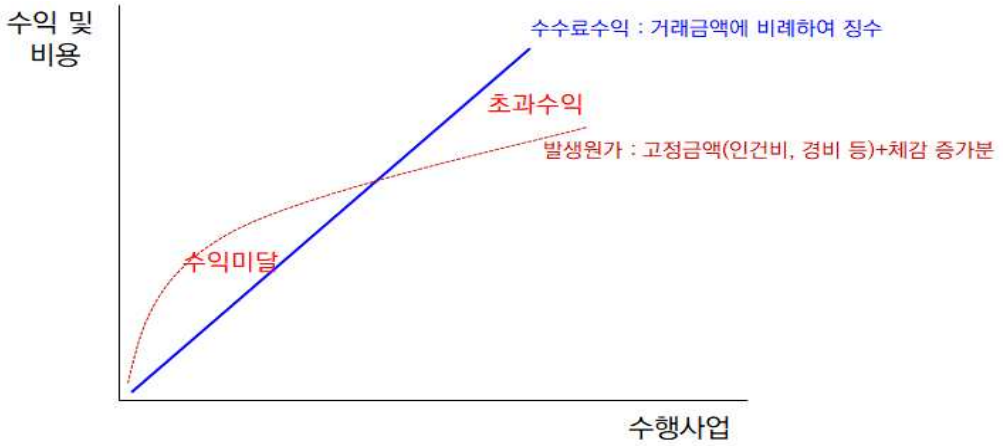

[그림 81] 수행사업에 따른 발생원가 및 수수료 수익 변화

□ 각 기관별 수수료율 운영현황을 보면, 각 수수료율을 매우 다양한 범주로 설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R&D 사업특성이나 연간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달청도 물품, 용역, 공사 세 가지로 구분되나, 공사인 경우는 업무가 물품이나 용역보다 세분화되어 평가 및 심의가 다수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자체가 세분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궁극적으로, 관리수수료 산정에 대한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별 일관된 수수료 산정 기준(체계)을 마련하고, 각 R&D사업 별 명확한 관리 원가계산(추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관리사업 수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수료 산정 이후, 결산 시 실제 발생비용과 수수료 산정 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 사업 혹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에 합리적인 수수료율(금액)을 반영하고 정확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관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수료 적정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중요함

□ 추가적으로 국내·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수수료 운영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표 4-39]와 같이 종합할 수 있음

[표 4-39] 국내·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수수료 운영현황 종합

구 분	국내	미국	영국		캐나다 Standing Offer
			Framework Agreement	DPS	
운영기관	조달청	GSA	CCS 및 각부처(지방포함)	CCS 및 각부처(지방포함)	PSPC 및 각부처
이용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조달대상	물품·서비스	물품·서비스	**물품·서비스·공사**	**물품·서비스·공사**	물품·서비스
가격결정	**협상**	**협상**	**업체간경쟁**	**-**	**업체간경쟁**
조달수수료 납부대상	**수요기관**	**조달업체 (0.75%)**	**조달업체**	**조달업체**	**수요기관 (중앙정부 무료)**
경쟁적 주문 평가방식	종합 평가	최저가 또는 종합평가	최저가 또는 종합평가	최저가 또는 종합평가	최저가격
경쟁적 주문 기준금액	5천만원 (중기제품 1억원)	1.1천만원 ($10,000)	기준금액 없음	기준금액 없음	2.2억원 ($250,000)

* 영국 FA(기본협약)는, "하나 이상의 계약당국과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낙찰될 계약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특히 가격과 (가능한 경우) 예상수량)을 설정하는 협약을 의미함

이는 정부최고조달관(Chief Procurement Officer)을 임명하여 중앙정부 전체에 걸쳐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구매기관인 CCS(Crown Commercial Service)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 FA)을 담당함

□ 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R&D 예산관리 수수료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수령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써 프로젝트 예산별로 예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운영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

○ R&D예산은 전부 외부로 집행하고, 평가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무부처로부터 따로 산정하여 보전 받는 형태(한국콘텐츠진흥원의 R&D제작지원)

□ R&D예산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전체운영비를 산정하여 수수료 총액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형태(세부 사업별 수수료금액의 경우 일정비율로 배부)로 진행되며, R&D 예산관리에 대해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별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하여 해당 비용을 충당함

○ 또한, 검토대상 R&D 예산관리 공공기관 모두 예산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결산 시 실제 발생비용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주무부처에 다시 반납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수지차보전의 형태로 공공기관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음.

3.3. 수수료 감면제도 관련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수수료 수익이 내자사업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타 기관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비춰볼 때, 조달수수료 면제나 감경대상 부문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각 특허청의 경우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게 하기 위해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을 3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감면받을 때 수수료 납부하는 단계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번잡함도 개선해오고 있음

* 참고로, 중견기업이 특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간 4만건 이상임

□ 또한,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나 사용료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가 유일하며, 이를 대상으로 수수료나 사용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사용료나 수수료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누구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함

○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규모나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범주가 넓어 이들도 또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현재 취약계층에 관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감면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유료도로법」, 「주민등록법」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나, 상기 법령이 규정한 제도 대부분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령제정에 관한 일관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음

□ (세부사업별 적정성 및 감면제도 실효성 검토 병행) 금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난 `14년도에 수행한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함

○ 즉, 각 사업(서비스) 영역별 운영 중인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다루기보다는 조달수수료 전반에 관한 적정성(균형점 도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각 사업 별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세밀하게 조정·조율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대상을 최초 선정할 때, 다양한 정책적 지원 목적에 따라 수립·운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간 적용결과에 대한 효과성이나 영향력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지 의문임

○ 따라서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등에 대한 항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항목별 기여도나 적정성 분석도 병행 실시

○ 이는 현재 수준보다 향후 항목 간 운영타당성, 실효성, 영향력 정도를 재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감면제도(면제대상 확대, 감경대상을 확대하거나 구간 조정·조율 등)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3.4. 조달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 체계 정립

□ 조달수수료의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체계 수립 방안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수수료 개선을 위한 업무체계를 토대로, 실제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수수료가 수수료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될 수 있을 정도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❶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❷원가검토 및 업무량 산정기준 마련, ❸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현실화를 위한 주기적인 개정 추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의 세부 내용은 수수료 개정의 필요성을 정립하기 위

해 개정연혁, 개정기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으로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이를 토대로,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측정방안도 병행 검토한 후, 종합적인 성과측정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수수료 산정절차 구체화 및 정착화 실현

□ 이와 더불어, 수수료 검증을 위해, 원가검토 및 업무량 산정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 있음

○ 특히, 원가검토를 위해 현재 결산보고서 외에도 수수료율을 검토할 수 있는 원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수수료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달청 내 실무담당자 별 업무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마지막으로, 상기 2단계에서 수립된 수수료 산정 기본원칙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실제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차기 수수료율 산정 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립 필요

[표 4-40] 조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개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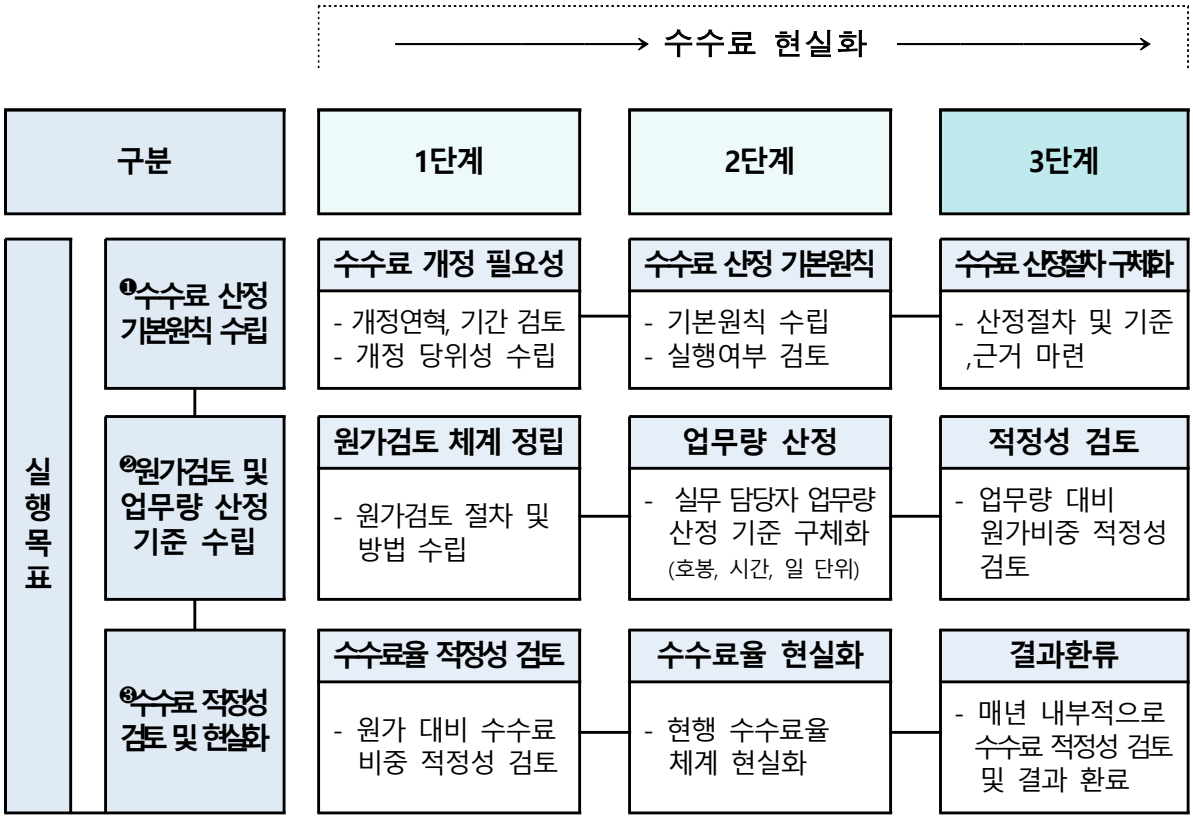

V

결 론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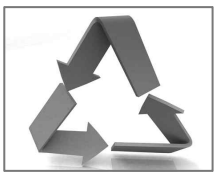

1.1. 결 론

□ 조달청은 국내 조달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혁신조달', '녹색성장', '국가 경제성장 견인' 등을 위한 디지털 우선 공공조달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혁신조달 분야의 디지털 전환, 정부수출 지원정책,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개발, 정부 신산업 육성 및 협력적 기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속도를 내고 있음

□ 상술한 바와 같이, 조달분야의 사업과 서비스가 고도화 및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조달 분권화 추진 등으로 인하여 조달청 내에서의 세출 변동은 불가피한 시점임

○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운영해오던 조달수수료의 체계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조달규모의 확대로 조달수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과 향후 조달사업의 규모와 환경의 급변화, 신사업 수요 확대 등 사업의 증대와 더불어 지자체 조달분권화, 서울청 이전 신축공사 등 불안정한 요소가 공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달사업(수수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따라서, 본 과업은 급변하는 조달정책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정당성 확보, 복잡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간소화, 조달수수료 운영방식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한 합리적인 조달 수수료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본 과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음

(1) 조달수수료 관련 조달정책 환경분석

□ (조달청 수수료)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자체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정부기업특별회계기관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을 위해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이 물품·용역 계약 및 공급, 공사계약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음

○ 이렇게 징수한 조달수수료의 수입으로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에 충당하고, 지출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회전자금 확충, 일반회계 전출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조달사업 실적 및 수수료 증감률) 조달수수료 수입 비중은 대부분 시설분야나 외자분야 보다는 내자사업 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의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전체 사업규모가 정체되어 있는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수수료 수입이 감소 추세이며, SOC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됨에 따른 발주물량 정체(감소)와 내자구매와 달리 총액계약 중심의 조달서비스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수입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적정 조달수수료 산정 및 부과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간 조달사업(사업실적, 수수료) 별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함

□ 조달사업 별 실적 증감률

○ (내자구매) `16년 기준으로 67.71%에서 `20년에는 70.57%로 2.86% 증가함

○ (외자구매) `16년 기준으로 0.87%에서 `20년에는 0.96%로 0.09% 증가함

○ (시설사업) `16년 기준으로 30.17%에서 `20년에는 27.32%로 2.85% 감소함

* (조달계약업무) 내자사업>공사계약>시설용역>외자사업>비축사업 순으로 증가

* (조달지원사업) 총사업비검토>설계적정성검토>원가검토>맞춤형서비스 순으로 증가

□ 조달사업 별 수수료 수익 증감률

○ (내자구매) '15년 기준으로 1,346억원(76.13%)에서 '19년에는 1,730억원(79.14%)으로 약 400억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외자구매) `15년 기준으로 2.38%에서 `19년에는 1,78%로 소폭 하락함

○ (시설사업) '15년 기준으로 332억원(18.78%)에서 '19년에는 362억원(16.56%)으로 수수료 수익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이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실적이나 규모와 수수료가 정비례하기 때문이며 특히, 2010년 이후 물품, 용역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국가 SOC 예산규모 중,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규모차이로 인하여 시설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등락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다만, 최근 3개년정도 맞춤형서비스의 규모나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도부터 수수료 수익부분에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조달계약사업 사업 수익 추이

○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의 증감률과 향후 3년간 사업수익 구조의 변화, 수수료 수입 구조의 변동률을 검토함

○ 그 결과,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이후 3년간 분석결과도 내자구매는 3.52%, 외자구매는 3.98%, 공사계약은 2.47%, 비축사업은 5.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달지원사업 사업 수익 추이

○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와 총사업비검토 부문은 등락폭이 약간 존재하거나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원가검토와 설계적정성검토는 크게 증가함

○ 먼저, 맞춤형서비스는 `16년부터 정체되어 왔으며, 향후 3년간 실적규모도 약 14% 정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맞춤형서비스는 `16~`20년까지 사업규모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3개년을 예측한 것으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맞춤형서비스의 발주규모(건수 및 금액)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업실적과 수수료 수익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반해, 나머지 총사업비검토, 원가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는 13.5%, 2.9%, 5.4%씩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수수료 수익 증감률) 조달계약사업과 조달지원사업의 수수료 수익 증감률은 조달계약사업과 지원사업의 증감률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동일한 방식으로 수수료 수익을 분석 및 예측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달계약사업과 조달지원사업 분석결과와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적정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가정 설정

□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 조달수수료의 운영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20년도 기준으로 제시된 조달 수수료율의 평균을 검토함

○ `20년도 기준 조달수수료율의 평균은 약 0.32% 수준이며, 총사업비검토(기타시설업무), 맞춤형서비스,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공사계약 수수료율은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먼저, 내자구매, 외자구매, 기술용역은 과거 5개년 평균이나 현재의 수수료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반면, 시설분야의 공사계약,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업무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과거 5년간 조달계약사업이나 조달지원사업의 평균치와 비교

○ 이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균형관점에서 바라볼 때, 현재 조달수수료율의 운영체계나 수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적정 수수료율의 균형점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수료 수익 비중 검토) 지난 5년간 세출내역 기준으로, 원가 대비 세출총계에서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1% 수준으로 분석됨

○ 또한, 세출총계 손익계정 대비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수준으로, 세출 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인건비는 수수료 수입 대비 평균 약 38% 정도 차이가발생함

○ 이는 세출 손익계정에서 수수료 수익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수료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계정총합이나 손익계정 등 세출 대비 수수료 수입비중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수행된 수수료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평균치보다 각각 10% 정도 높아졌고, 인건비 또한 약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수료 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수수료 조정 가정 설정) 합리적인 조달수수료율 산정을 위하여 수수료율 ❶상향 조정, ❷하향조정, ❸현행유지 세 가지 방안을 설정한 후 진행함

○ (상향조정) 현재 비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율 상향 조정 : 신규 수입창출 방안

○ (하향조정) 현재 비중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율 하향 조정 : 요율 간 체계 조정

○ (현행유지)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 : 현행 체계 유지

(3) 조달수수료 적정성 검토를 위한 원가분석 및 시뮬레이션

□ 수수료 부과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익-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수수료 조정 방향을 설정함

○ 원가-비용분석은 수익변화분석, 원가변화분석, 원가비용분석 등 3단계를 다시 4개의 모듈로 구성하고, 각 프로세스별 분석절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함

○ 이를 위해, 조달청 각 과별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조직체계, 업무프로세스, 단위별 업무식별, 업무량 산정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 최근 고시된 조달수수료 개정고시(안)을 토대로 조달수수료 차등부과 현황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되 특히, 시설분야의 조달수수료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수수료 조정 방향성 검토) 지난 3년간 조달서비스별 수익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자구매가 평균 8.72%로 가장 높음

* 내자구매에 대한 수익 증감율이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로는 비축물자가 7.6%이며, 나머지 시설공사와 외자구매 분야가 각각 2.8%와 2.2%임

○ 지난 3년간 원가변화를 분석한 결과, `15년도 이후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자구매와 비축물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5개년과 3개년의 평균 증감율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개년보다는 3개년이 6.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달서비스 별 원가변화는 5개년과 3개년 모두 분석한 결과, `17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음

□ 한편,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은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자 및 외자구매는 시설공사와는 달리 감소 추세가 좀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됨

○ 내자구매 원가비중은 5개년 평균 59.33%, 3개년 평균 58.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 원가비중이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3년간 103.43%로 나타남

○ 외자구매의 경우 5개년 평균 65.99%, 3개년 평균 58.7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자 및 외자 구매의 경우 원가의 비중이 평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시설공사의 경우 약 2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시설공사는 타 분야와 달리 원가비중이 2배로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달서비스 별 원가비중 분석결과) 인건비의 원가비중은 내자 및 외자구매는 32~36%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는 과거 `09~13년에 집계된 42%에서 최근 59%로 약 17% 증가함

○ 경비의 원가비중은 내자 및 외자구매는 26~29.7%이며, 시설공사는 `09~13년 집계된 41%에서 최근 48%로 약 7% 증가함

○ 원가비중을 서비스별, 인건비, 경비로 종합해서 살펴보면, 내자 및 외자구매와는 달리, 시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은 수준이므로, 이 역시 적정 수수료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달수수료 조정 방향 설정) 상기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적정수수료는 수익 대비 원가비중을 약 74%(73.6%) 수준으로 설정하여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정안을 검토함

* 최근 3개년 평균 원가비중을 기준으로, 내자 및 외자구매 그리고 시설공사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 조정범위(비중)는 74% 수준으로 가정

□ 내자구매는 `19년을 기준으로 수익대비 원가비중은 약 15%정도 낮은 수준으로, 투입되는 원가대비 수익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외자구매의 경우도 내자구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공사는 수익대비 원가 비중이 103.43%로, 적정수준 대비 29.43%나 높아,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검토됨

□ (원가배부 실시) 조달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조달청 결산보고서에 제시된 단위 프로그램 비용과 공통비용을 비용배부 기준을 토대로 2차례 배부하여 조달서비스 별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함

○ 원가산정 배부기준은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은 담당하는 해당국에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해당국과 공통으로, 조달행정지원의 나머지 단위사업과 회계기금간 거래는 공통으로 분류함

□ (원가배부 결과) 각 사업분야별 적정조달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시뮬레이션 이전 최종 사업부문을 내자구매 약 958억, 외자구매 약 926억, 시설공사 약 363억, 비축사업 약 599억의 수준으로 배부함

○ 여기서, 수익자료는 조달청 내부 조달회계팀에게 최근 5개년 서비스 별 데이터를 수령한 `19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원가자료는 `19년 조달청 결산보고서를 활용해 원가배부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함

* 주요가정 (1) : 원가의 비중은 조달사업 전체 74%(90%까지 시뮬레이션)를 기준으로 수수료 증액 시나리오 구성

* 주요가정 (2) : 원가 배부는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기준하며, 결산보고서와의 차이를 비율로 보정

* 분석시사점 : 서비스 별 수익대비 원가비중을 분석하여 수수료 조정 필요 서비스 식별 및 합리적인 조정 방안 제시

□ (적정수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몇 가지 이슈가 되는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함

○ 시뮬레이션은 크게 ❶1차적으로 외자는 현행유지하며, 내자구매의 경우 ❷향후 지방자치를 포함한 자체조달에 대한 압박으로 조달청의 세입 규모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❸2014년 연구보고서에 비교 시 원가 상승률보다 수수료율 증가가 늘어난 만큼 원가비중 규모도 중요하나, 반대로 조달청 실무자의 업무가 가중

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로 구분하여 제안함

○ 또한, 시설공사 영역을 일괄적으로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앞서 제시한 원가 비중이 평균 74% 수준에 달하는 수수료 상향조정 방안을 제안함

(4)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안

□ 조달수수료 운영체계 개선방안은 크게 ❶현행 조달수수료 유지, ❷정액제와 정률제를 적용하는 복합방식에서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 ❸단가계약 요율을 조정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 **(방안1) 내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액제로 전환**

○ 내자구매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방안은 크게 ❶현행 수수료율 체계 유지, ❷현재 정액제와 정률제의 복합방식을 정액제로 일괄 전환, 두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 (현행유지) 현재 조달청에서는 내자구매 분야 계약건수가 수십만 건 늘어남(자연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변화(증원)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실무 담당자 1인 당 맡아서 진행하는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담당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자구매 부문의 원가를 조정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체단체에서 `19년에 지불한 조달수수료가 약 1,000억원(`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조달 분권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이에, 현행 내자구매 수수료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담당자 업무과다(인력 증원 한계), 지자체 분권화,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및 신설 등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이 예상되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정액제 일괄 전환)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토대로, 지난 5년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건당 수수료를 검토함

○ 분석방법은 첫째,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현행 수수료율 210,000원과 지난 5년

간 건당 평균 203,452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현행 수수료율 530,000원과 지난 5년간 건당 평균 497,716원의 차이 비율만큼 모든 구간에 평균 보정하여 정액금액 제시 건당 수수료×4.85%(보정) 후 단위를 절삭함

○ 둘째, 수수료를 별도 보정하지 않고 5년간 건당 평균 수수료 값에 단위를 절삭함

○ 분석결과, 기존 원가비중이 58.05%에서 59.25%로 1.49%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의 경우에는 동일한 원가비중에서 62.17%로 4.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액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원가비중인 62.17%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방안2)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정률제로 전환

□ 2019년 기준 총액계약의 원가비중은 85.05%이며, 단가계약의 원가비중은 36.11%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단가계약 요율 체계만 변경하는 방안임

□ 분석방법은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개 구간의 0.54 요율을 일괄 변경함

- 상기 언급한 방안에서 수수료 차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0.51’과 ‘0.47이 적정한 조달수수료 수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으며,

○ ❶조달수수료율을 0.51로 조정했을 경우, 기존의 원가비중 58.05%에서 59.73%로 1.68% 상승하는 효과 발생

○ ❷조달수수료율을 0.47로 조정했을 경우, 기존의 원가비중 58.05%에서 62.13%로 4.09% 상승하는 효과 발생

□ 상술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달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여 부과한다면 두 번째 요율인 0.47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외자구매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의 비중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87.88% 수준으로,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74%)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현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방안3) 내·외자구매 수수료율 현행 유지+시설공사 수수료율 상향 조정

□ 시설공사의 적정수수료 시뮬레이션 결과, `19년 기준 수수료 수익에서 13.5% 증가시켜야, 전체 조달사업의 수익대비 원가 비중이 적정 비율인 74%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이에, 시설공사 분야의 수수료율을 13.5% 일괄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원가비중이 90.88%에서 80.3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공사의 적정 수수료율은 13.5% 수준으로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방안4) 시설공사 분야 유형별 통합 수수료 요율 부과

(1) Case 1

□ (분석조건) 기술용역 분야에서는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모두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하고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변경된 수수료 수익 및 수익대비 원가비중을 검토함

□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10.1%(93.28%→92.27) 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34%(78.73%→78.40%)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2) Case 2

□ (분석조건) 기술용역 분야에서는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평균 요율로 통합하고,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Case 1과 같이할 경우 변경된 수익 및 수익 대비 원가비중을 검토함

□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0.34%(93.28%→92.94)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11%(78.73%→78.6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3) Case 3

□ (분석조건) Case 3은 앞선 Case 1데이터 결과 값에 시설공사 전체 요율을

13.5% 일괄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함

□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12.03%(93.28%→81.25%) 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0.34%(78.73%→74.72%)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용역,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맞춤형서비스, 기타시설업무도 수수료율을 13.5% 일괄 상향 조정함

(4) Case 4

□ (분석조건) Case 4는 앞선 Case 2데이터 결과 값에 시설공사 전체 요율을 13.5% 일괄 증가시킨 경우에 대하여 검토함

□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시설공사의 원가비중은 9.86%(93.28%→83.42%)낮아지고, 전체 조달사업의 수수료 수익 대비 원가 비중은 3.29%(78.73%→75.4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용역,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맞춤형서비스, 기타시설업무도 수수료 요율을 모두 13.5% 일괄 조정

(5) Case 5 : 내자구매 요율 체계 현행 유지 시 개선체계 도출

□ (5.1) 시설공사 요율 체계 현행 유지 시 내자, 외자, 시설 분야의 전체 원가비중이 74%에 가장 근접하는 경우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요율이라 할 수 있겠음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7.5%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4%로 낮아짐

□ (5.2) 기술용역 요율 체계 :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의 요율을 [설계 등 용역] 요율로 통합

○ 공사계약 요율 체계: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조정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6.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98%로 낮아짐

□ (5.3) 기술용역 요율 체계는 [설계 등 용역]과 [감리·CM 용역] 요율의 평균값으

로 통합하고, 공사계약 요율 체계를 A type을 B type으로 하향조정, D type을 C type으로 상향 조정

□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비중이 17%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5%로 낮아짐

(6) Case 6 : 내자구매(단가, 총액) 요율의 정액제로 변경시(Alt1)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요율을 정액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원가 비중이 2.66% 증가함

□ (6.1)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20.0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8%로 낮아짐

□ (6.2)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18.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1%로 낮아짐

□ (6.3) (분석결과) 시설공사의 수수료 수익이 19.50% 증가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89%로 낮아짐

(7) Case 7 : 내자구매(단가, 총액) 요율의 정액제로 변경시(Alt2)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요율을 정액제로 변경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원가 비중이 6.63% 증가함

○ (7.1)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3.5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4%로 낮아짐

○ (7.2)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2.0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4%로 낮아짐

○ (7.3)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3.0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2%로 낮아짐

(8) Case 8 : 내자구매(단가) 요율 조정시 (Alt1)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단가 계약에서 10억 원 미만의 단가 요율을 0.54%에서 0.51%로 일괄 하향 조정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원가 비중이 2.82% 증가함

○ (8.1)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1.0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0%로 낮아짐

○ (8.2)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19.5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1%로 낮아짐

○ (8.3)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0.5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3.98%로 낮아짐

(9) Case 9 : 내자구매(단가) 요율 조정 시 (Alt2) 개선체계 도출

□ 내자구매 단가 계약에서 10억 원 미만의 단가 요율을 0.54%에서 0.47%로 일괄 하향 조정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며 원가 비중이 6.58% 증가함

□ (9.1)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3.5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2%로 낮아짐

□ (9.2)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2.0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2%로 낮아짐

□ (9.3) 시설공사의 원가 비중이 23.00% 감소하며, 조달사업 전체 원가 비중은 74.00%로 낮아짐

(5) 조달사업 수수료율 감면제도 개선방안

□ 마일리지 제도는 내자구매 중 단가계약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설공사 분야와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검토함

□ 마일리지 제도 적용구간을 최초 1%를 시작으로 이후 0.5% 구간으로 설정하여 최대 5%까지 제공하는 방안으로 원가비중의 변화를 검토함

□ (분석결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가비중의 변화는 내자구매는 최소 56%에서 최대 5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외자구매 역시 77% 내외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시설공사를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86~88% 비중으로 나타남

○ 변경된 조달사업 전체 원가비중에서는 시설공사는 약 73~74% 수준까지로 나타

나, 본 과업에서 최초 설정한 적정 수준의 원가비중인 74%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다만,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적립금 형태로 운영하되, 내자구매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전 사업 분야로 적용 확대할 필요 있음

1.2. 제언사항

(1) 수수료 운영기관 사례분석을 통한 수수료 산정체계 정립

□ 공공기관 대상 수수료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요 이슈사항은 ❶수수료 산정기준 및 산정 시 업무(서비스) 구분 불명확, ❷원가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 부재, ❸수수료에 관한 재산정 및 개정 등 적정성 검토가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수수료의 최종 개정시기 관점에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요환경(공급량)의 변화 혹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과거 수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요환경과 비용발생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기관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개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외부적 요구로 인해 개정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가와 수수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조달청의 경우,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경과기간이 최대 11년 이상 지난 기관도 존재하므로, 개정기간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2) 수수료 운영 기본원칙 수립

□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❶사업의 목적과 대상 명확화, ❷수수료 산정 및 원가계

산에 기초가 되는 근거 제시(예컨대, 심평원과 같이 산정근거 및 기준 마련), ❸원가항목별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산정기준 제시, ❹수수료 부과방식 제시, ❺수수료 결정의 적정성 검증 등의 체계 확립

○ 사업의 특성이나 시장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기준과 개정기간수수료 산정 전·후러 주기적인 검증 필요 관련 규정 병행 검토

○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 여부 재점검

□ 또한, 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정기적 혹은 지속적으로 해당 시점에서의 수수료율을 검토 및 결과환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수수료 관련 업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서비스) 기준 및 회계분리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

○ 기관에서 행하는 업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기관 별 특정 수행업무에 대하여 해당 활동이 수수료 사업에 해당되는지 혹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하며, 수수료 수익에 연관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통해 원가를 보전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서비스에 대한 총 수수료수익은 수수료단가×공급량으로 결정되므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단가를 조정(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총 수수료 수익은 수요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 반면,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정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의 공급량 증가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지는 않음

□ 따라서 업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단가를 수요 및 발생비용 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재산정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업무(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 및 검증기간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

□ 궁극적으로 조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별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❶합리적이고 일관된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❷업무 및 서비스 구분 및 회계분리 기준 명확화에 따른 정확한 원가계산, ❸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❹산정 이후 사후관리(주기적 혹은 정기적 수수료 재산정하거나 관련법령 및 규제환경 개선 등) 체계 마련을 통한 수수료의 합리성 및 투명성(신뢰성, 왜곡방지 등) 제고 필요

□ 또한,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대상을 최초 선정할 때, 다양한 정책적 지원 목적에 따라 수립·운영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간 적용결과에 대한 효과성이나 영향력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는지 제고 필요

○ 따라서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등에 대한 항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항목별 기여도나 적정성 분석도 병행 실시

(3) 수수료율 혹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방법의 적정성 검토

○ 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은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생산형태에 적합함(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토목건축업, 가구제조업, 서비스업 등)

○ 종합원가계산(process costing)은 원가조사 기간 동안 제조 및 서비스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동일 기간 동안 제조된 제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 및 서비스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 예정원가계산(사전원가계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하기 이전에 앞으로 소비가 될 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 실제원가계산(사후원가계산)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한 후에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 표준원가계산(standard costing)은 사전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균적인 수량과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발생한 원가와 비교·분석하여 각 원가요인별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 각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원가계산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조달수수료 운영체계에 적합한 방식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4) 조달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 체계 정립

□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수수료 개선을 위한 업무체계를 토대로, 실제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수수료가 수수료를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수한 사례로 벤치마킹될 수 있을 정도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❶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❷원가검토 및 업무량 산정기준 마련, ❸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현실화를 위한 주기적인 개정 추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본원칙의 세부 내용은 수수료 개정의 필요성을 정립하기 위해 개정연혁, 개정기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대내·외적으로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이를 토대로, 수수료 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측정방안도 병행 검토한 후, 종합적인 성과측정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수수료 산정절차 구체화 및 정착화 실현

□ 이와 더불어, 수수료 검증을 위해, 원가검토 및 업무량 산정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구체화하여 마련할 필요 있음

○ 특히, 원가검토를 위해 현재 결산보고서 외에도 수수료율을 검토할 수 있는 원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수수료 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달청 내 실무담당자 별 업무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마지막으로, 상기 2단계에서 수립된 수수료 산정 기본원칙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실제 수수료율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차기 수수료율 산정 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정립 필요

1.3. 연구한계점

□ 본 과업은 현행 조달청의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조달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함

○ 다만, 각 국 이하 과별로 수행하고 있는 세부 업무단위의 수수료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진행한 이후에 전체적인 균형성을 맞추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부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성이 높은 측정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또한, 최초 연구 설계 시 결산보고서의 비용을 토대로 2회 원가배부를 실시하고, 담당자가 제공한 개략적인 업무량을 기반으로 적정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반영하였으나, 내·외부적인 환경요인 특히, 외적인 환경변화가 크게 작동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내부 조직의 구성 변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한편, 시설분야의 합리적인 공사계약 수수료 산정을 위하여 수행업무별 형태 및 계약금액별 구건을 설정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없고, 일정액만큼(7.1억)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공사규모에 따른 금액이 커지면서 업무량도 정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나, 수수료의 상한선이나 금액이 커질수록 원가를 너무 벗어나는 과도한 수수료율이 징수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맞춤형서비스의 경우 최대 금액구간에서 수수료에 대한 상한액(율)을 정하거나 마일리지 제도 등과 같은 할인제도(적립식 등)의 단계적 적용, 1천억원 이상 등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낮춰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다만, 시설공사의 맞춤형 서비스의 공사금액이 클수록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공사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수료 수익 보다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원가를 낮춰야하는 상황이므로 단일업무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정 균형점을 찾는 것이 좀 더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됨

□ 맞춤형 서비스가 시설공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사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음

○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 맞춤형서비스의 건수나 물량이 점차 증가하

는 것으로 파악되어, 수수료율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특성 상, 설계변경이나 시공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지연, 업무과다 등에 대한 수수료율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수료율 적정화하는데 고려할 필요 있음

□ 또한, 금액구간을 현 수준보다 좀 더 세분화하여 진행하여 수수료율을 완화시키거나 일부 낮춘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조달청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전체 조직관점과 수요기관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음

○ 현재 분석된 내용만을 토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향후 시설공사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제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임

○ 아울러, 현재 시설공사의 경우는 타 사업에 비해서 오랜 기간동안 수수료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일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향조정할 경우에 맞춤형 서비스의 과도한 수수료율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시설공사만의 적정균형 수수료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술한 바와 같이, 세부 업무단위별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수수료율의 균형점을 맞추는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 있음

○ 특히,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장기계속계약, 설계변경, 분쟁 등)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가중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수료율에 대한 변화는 `14년부터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증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원가비중을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과다 수수료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특별회계기관으로 운영하는 조달청의 경우, 원가 비중 대비 수수료 수익이 낮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업무량을 기반으로 세부 단위별 원가 대

비 수수료 수익 차를 검토하여 단위사업별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설공사의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본 과업의 규모와 기간 상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시설공사의 전체적인 원가와 수수료 수익의 균형점 관점에서 업무를 포함하여 원가배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정수수료율을 검토하였음

* 시설공사 분야 유형별 통합 수수료 요율 부과방안의 case 4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음

○ 또한, 본 과업이 착수된 시점은 `20년도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으로, `19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설된 단일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결산보고서의 회계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며, 업무량 산정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원가배부 산정기준은 결산보고서 `19년도에 해당하는 업무와 인원으로 해야 하므로,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과업수행 당시, `20년도 회계가 미결산되어 `19년도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

참고문헌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참고문헌

1. 고려대학교(2010),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2. 김병일(2008),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체육부
3. 김병철(2003), 항공기상정보사용료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진흥협회
4. 삼정회계법인(2013),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5. 안옥진(2014),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6. 유관희 외(2008),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원가 배분과 이용료결정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경영학회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2), 교통정보 수수료 산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8.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13), 사회서비스 차세대 바우처 사업위탁운영비 산정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9.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10), 국가자격 응시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10.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11),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의료기기분야 적정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11.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13)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방안 개선 연구, 조달청
12. 한국산업정보연구소(2014),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13. 한국생산성본부(2008), 통계지리정보 유료화 서비스 방안 연구, 통계청
14. 한국생산성본부(2020),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한국전파진흥원(2008), 원가산정을 통한 케이블 이용요금 적정성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16. 한국조달연구원(2014),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요율체계 개선방안, 조달청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9), 고객가치 행정을 위한 수수료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특허청

18.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4호)

19.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6-1609호)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조달청고시(제2020-57호)

21.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07호)

22. 특허료 · 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특허청고시(제2015-22호)

23. 특허료 · 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특허청고시(제2018-20호)

24. 특허료 · 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특허청고시(제2016-16호)

25.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고시(제2021-11호)

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0-3호)

별 첨

공공조달의 규모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연구

별 첨

1. 현재 조달수수료 고시
2. 공공요금 산정기준[시행 2017. 8. 7.] [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2017. 8. 7., 일부개정]
3. 특허청 마일리지 제도

1. 조달청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청 고시 제2020 - 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7일

조달청장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table>
<tr><th>사업</th><th>적용기준</th><th>금 액 구 분</th><th colspan="2">요 율(%)</th><th>비 고</th></tr>
<tr><td rowspan="7">내자
구매</td><td rowspan="7">계약금액
(납품금액)</td><td></td><td>총액</td><td>단가(일반, 3자, MAS)</td><td rowspan="7">(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 장기분할대지급 건은 계약금액의 (연)0.94% 수수료 할증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td></tr>
<tr><td>2천만원까지</td><td>210,000원(정액)</td><td rowspan="4">0.54(정률)</td></tr>
<tr><td>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td><td>530,000원(정액)</td></tr>
<tr><td>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td><td>1.07(정률)</td></tr>
<tr><td>1억원초과
-10억원까지</td><td>0.76</td></tr>
<tr><td>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td><td>0.48</td><td>0.47</td></tr>
<tr><td>100억원초과</td><td>0.38</td><td>0.37</td></tr>
<tr><td rowspan="4">외자
구매</td><td rowspan="4">계약금액</td><td>1백만불까지</td><td colspan="2">1.2</td><td rowspan="4">· 초과분 체감적용</td></tr>
<tr><td>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td><td colspan="2">0.9</td></tr>
<tr><td>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td><td colspan="2">0.7</td></tr>
<tr><td>천만불초과</td><td colspan="2">0.4</td></tr>
<tr><td>기술
용역</td><td>계약금액</td><td></td><td>설계 등 용역</td><td>감리 · CM 용역</td><td>· 초과분 체감적용</td></tr>
</table>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제안 요율 적용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1억원까지	1.3	1.0	0.8	1.2	0.9	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1	0.8	0.6	1.0	0.7	0.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0.9	0.6	0.4	0.8	0.5	0.4	
		30억원초과	0.7	0.4	0.2	0.6	0.3	0.2	
			설계공모						
			심사포함			심사제외			
		1억원까지	1.9			0.8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6			0.6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3			0.4			
		30억원초과	1.0			0.2			
공사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초과분 체감적용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C Type: 비PQ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10억원까지	0.4	0.35	0.3	0.2	0.3	0.25	0.2	0.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	0.25	0.2	0.1	0.15	0.12	0.1	0.05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	0.12	0.1	0.05	0.07	0.06	0.05	0.02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07	0.06	0.05	0.02	0.04	0.03	0.02	0.01
		500억원 초과	0.06	0.05	0.045	0.015	0.035	0.025	0.015	0.01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1. 초과분 체감적용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일괄 · 기본	실시 · 대안					
		100억원까지	0.056	0.037		0.004	0.08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9	0.032		0.003	0.07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1	0.028		0.003	0.062		
		1,000억원초과	0.037	0.025		0.002	0.056		
	기획· 설계 관 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일괄·기술제안			
		100억원까지	0.462			0.39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420			0.36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336			0.288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1,000억원초과	0.302			0.259			적용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 : 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실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대안 : 대안입찰
		100억원까지	0.846			0.67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736			0.598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626			0.501			
		1,000억원초과	0.562			0.450			
기타시설업무	설계적정성 검토 (검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설계적정성 검토(VE병행)			· 초과분 체감적용
			계획	기본 (중간)	실시	계획	기본 (중간)	실시	
		100억원까지	0.029	0.058	0.058	0.029	0.102	0.102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26	0.053	0.053	0.026	0.081	0.081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21	0.042	0.042	0.021	0.065	0.065	
		1,000억원초과	0.019	0.038	0.038	0.019	0.058	0.058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수수료 면제 2. 공사원가검토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요율 적용. 3.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시 검토가격 요청 수수료는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요율 적용
		100억원까지	0.04			0.04			
		100억원초과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05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물자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 단일 요율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조달청	계약 건당	330,000원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검사 대행	직접검사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감면사항 등

구분	내 용
면제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②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21.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 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감경	①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 (20%)
기타	①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② 내자 및 외자 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③ 「제안서 기술평가 대행서비스(수요기관 자체발주 SW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30% 적용
	④ 장기분할대지급 신청 시 계약금액의 2.82%(0.94%×3) 할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원 이하의 조달요청 건 중 장기분할 대지급으로 조달요청(총액)한 경우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 심 의 대 행

<일괄 · 기술제안>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10.3%
공사 발주업무	21.9%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51.1%
실시설계 심의	16.7%
소계	100.0%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23.0%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심의	77.0%
소계	100.0%

◇ 기 획·설 계 관 리

<일반공사>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3.5%
설계 등 용역 발주	3.1%
계획설계 관리업무	7.4%
중간설계 관리업무	25.9%
실시설계 관리업무	41.1%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18.9%
소계	100.0%

<일괄·기술제안>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4.2%
기본계획 수립	8.5%
입찰방법 심의	3.2%
입찰안내서 작성·심의	14.8%
공사 발주업무	9.6%
CM 용역관리	7.7%
기본설계 관리업무	23.0%
실시설계 관리업무	29.0%
소계	100.0%

◇ 시 공 관 리 :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

4. 적용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고시는 개정일 이후 계약(검토) 요청 또는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사계약 및 기타 시설업무의 위탁사업과 외자 제안서평가 조달청 대행은 2020.02.27. 이후 계약(검토)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공요금 산정기준

[시행 2017. 8. 7.] [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2017. 8. 7., 일부개정]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Ⅰ. 총칙

1. 목 적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나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3. 요금산정기간

가. 공공요금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

4. 기초회계자료

가. 공공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의 요금산정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회계분리기준 등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익사업자는 전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관부처장관은 해당 공공요금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서비스 분류

1. 서비스 분류 범위

가. 공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분함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부처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

(1)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다. 나 (2)항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소관부처장관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자의 서비스 분류를 위한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분류 절차

가. 공익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가 제출한 서비스분류요청서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Ⅲ. 총괄원가

1. 적정원가

가. 적정원가의 구성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 기간동안의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나.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1),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

(5) 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소관부처장관은 비목별 적정원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정투자보수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규제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요금기저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하지 않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

분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요금기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적정투자보수율

(1) 적정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한다.

(3) 자기자본 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계수는 소관부처장관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 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5)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6)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타인자본투자보수율 및 자기자본투자보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Ⅳ. 회계분리

1. 공익사업자의 회계분리의무

공익사업자는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제서비스,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해당 서비스별로 직접 귀속·배부하여야 한다.

2. 회계분리의 기본원칙

가. 직접비(자산)의 배부

(1)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사업, 비규제사업 및 비공공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2)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익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통비(자산)의 배부

(1) 공통비(자산)는 판매량, 투입인원, 사용면적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

(2) 단,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다. 자산 등의 귀속, 배부는 법적인 형태 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

라.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한다.

3. 회계분리기준의 작성

가. 공익사업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운영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회계분리운영기준은 소관부처장관이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자산 등의 배부기준에 대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Ⅴ.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의 정의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 공익사업자가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 공익사업자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 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2.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

나. 검토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2) (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② 공시가격 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

③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④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3) (1), (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처장관이 결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다.

라. 소관부처장관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의 제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Ⅵ. 요금체계

1. 공공요금은 규제 서비스의 수요군별 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2. 수요는 과거의 실적, 지역특성 및 사회경제의 동향, 공익사업의 시설, 대체수단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규제서비스의 수요군별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요금, 차등요금 및 누진요금을 인정할 수 있다.

Ⅶ. 요금검증

1. 공익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부처장관은 전항의 요금산정보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범위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익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나. 공익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

다.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라.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마.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바.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사. 요금산정내역서

아.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3. 소관부처장관은 공공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3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조정 협의시 3항의 검증업무와 4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6. 소관부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Ⅷ. 재검토기한

1.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보칙

1. 본 기준에 의하여 각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의 제개정을 위해서 각 소관부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모든 공공요금은 본 기준 및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기준의 공공요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 기준 외에 다른 산정방식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345호, 2017. 8.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특허청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

[시행 2013. 7. 1.] [특허청고시 제2013-15호, 2013. 6. 25., 일부개정]특허청(정보고객정책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7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의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사무는 「특허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수료 마일리지」는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의 일정비율(100분의 10 이하)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 및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하며, 1마일리지는 1원에 상응한다.

②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을 말한다.

제4조(마일리지 부여대상자) 특허료 등 납부 또는 특허행정 기여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당시 이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내외국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징수규칙 제7조제6항에 따른 특허료 등의 사후감면신청의 경우나 부여대상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마일리지 부여기준) ①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 등 금액에 따라 개인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을,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0.5를 마일리지로 부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만, 인지세·등록세·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 특허청 세입이 아닌 수수료는 마일리지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시 공동출원의 경우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부여하고, 지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균분하여 부여한다.

③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특허행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별도의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도개선 제안이 채택된 경우 1인당 1회 10,000마일리지의 범위내에서 소관 과에서 고객협력정책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2011. 3. 25. 삭제>

제6조(마일리지 사용방법) ① 부여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마일리지의 사용은 100마일리지 이상부터 100마일리지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에 따라 특허료 등 납부시 부여된 마일리지 금액만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대상자 또는 사전에 특허청에 포괄위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인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서류제출자만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2011. 3. 25. 삭제>

제7조(수수료 마일리지의 확인 및 사용)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특허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수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이 이의 사용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2009-44호,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1-3호, 2011.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2-37호,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3-15호, 2013. 6.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대상자 및 부여비율

구분	특허료 등 납부				특허행정 기여	
마일리지 부여 대상자	마일리지 부여 대상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비율[1]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납부대상 수수료	근거	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 부여 한도
내.외국 개인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1%**	징수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징수규칙 §7②2 §7②4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1회 1인 10,000 마일리지
소기업 중기업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0.5%**	징수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징수규칙 §7②2 §7②4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1회 1인 10,000 마일리지
공공연구기관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0.5%**	징수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징수규칙 §7②3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1회 1인 10,000 마일리지
전담조직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0.5%**	징수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징수규칙 §7②3 §7②5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1회 1인 10,000 마일리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2]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금액의 0.5%**	출원료 심사청구료	징수규칙 §7②1	제도개선 제안건수 등	1회 1인 10,000 마일리지